

세월호1주기,



# 기업책임법(기업살인법) 제정 미룰 수 없다

- 일시 : 2015. 4. 28(화) 오전 9: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8간담회실

주최

4.16연대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참여연대  
국회의원 서기호 서영교 심상정 은수미 이인영



<토론회>

## 세월호 1주기, 기업책임법 제정 미룰 수 없다 (기업살인법)

**발행**  
기업 책임법(기업살인법)의 도입 취지와 법안 발표  
이호중 / 서경대 법학대학원 교수

**토론**

- 강문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홍여진 / 뉴스타파 기자
- 최정학 / 방송대 법학과
- 윤석기 /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
- 이상원 /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법무부(미정)

**일시** 2015.04.28(화) 오전9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2층 8간담회실

이천 냉동창고  
0명 사망,  
2천만원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

주최 4.16연대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국민대책회의준엄안전위원회 참여연대 국회의원 서기호, 서영교, 심상정, 은수미, 이인영

## 1부

사회     전수경 / 노동건강연대

- 인사말         : 국회의원, 민주노총
- 영상 상영
- 연대메시지 : 외국 노동조합의 연대메세지

## 2부

### 1) 법안 발제

**기업책임법(기업살인법) 도입 취지와 법안 발표**

: 이호중 / 서강대학교 법학대학원

### 2) 토론

- 강문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홍여진 / 뉴스타파 기자
- 최정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대
- 윤석기 /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
- 이상원 /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 목차

### 1. 인사말

### 2. 토론회

기업책임법(기업살인법) 도입 취지와 법안 발표.....	11
이호중 / 서강대 법학대학원	
1) 형법적 관점에서 본 기업책임법(기업살인법) .....	49
최정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대	
2) 실제 사고를 통해본 기업처벌 실태.....	52
홍여진 / 뉴스타파 기자	
3) 노동자가 보는 기업살인법의 필요성.....	66
이상원 /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4) 참사 유족이 보는 기업처벌의 필요성.....	72
윤석기 /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장	

### 3. 참고자료

1) 지난10년 50대살인기업 / 역대 최악의살인기업선정결과.....	73
2) 대형재난사고 처벌결과.....	80
3) 외국의 기업살인법안 - 호주, 캐나다, 영국.....	91
(호주 97쪽, 캐나다 107쪽, 영국 114쪽)	
4) 별지 - 중대재해 처벌결과	

## 인사말

서기호 /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서기호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세월호 참사 등 수많은 공중재해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인재(人災)는 안전을 도외시한 기업의 무리한 영리추구와 탐욕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중요한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304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결정적 원인은 선박의 무리한 수직 증축, 화물 과적과 평형수 조작 등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한 청해진해운의 안전을 도외시한 욕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1심 판결은 청해진해운에 대해 과실로 인한 기름유출에 대한 '벌금 1천만원'뿐이었습니다.

이는 개인책임원칙과 '양심과 정신을 갖지 못한 법인(기업)은 죄를 범하지 못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근거한 우리 현행법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인을 직접적인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도입되고 있고, 독일에서도 이른바 단체형법도입을 위한 논의가 연방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산재사고와 재난사고의 책임자인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나아가 기업에 영업정지 명령까지 할 수 있는 형사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합니다.

현재 기업은 최고 경영자의 판단에 따라 현장의 모든 정책이 진행되는 만큼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음으로써, 재해가 주로 수익 극대화를 위해 위험을 감내하려는 자들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재해 발생시 부담해야 하는 대가가 위험을 감내하고 얻은 수익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기업책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업책임법 제정으로 국민행복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인사말

서영교 / 국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중랑구(갑)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세월호1주기, 기업책임법 제정 미룰 수 없다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발제를 맡아주신 서강대 법학대학원 이호중 교수님과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 전문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직업병과 산재, 사고로 국민과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기업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산업재해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관한 기업 및 사업주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지난 10년간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가 2만2000여명에 달하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사고, 또 작년 4월에는 소중한 304명의 생명을 하늘로 보낸 세월호 참사 등 한국은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안전을 등한시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했을시 현행법으로는 현장책임자가 처벌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는 경영자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묻는 일이 드물며 처벌이 이뤄진다하더라도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안전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대형사고를 부를 수 있음을 알고서도 비용절감을 위해 이윤을 위해 규정을 위반해 왔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산업재해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관한 기업 및 사업주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에 관하여 폭넓은 의견교환과 토론으로 직업병 및 사고로부터 노동자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도출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 또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산업재해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관한 기업 및 사업주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의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 준비를 위해 노력해주신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준엄안전위원회, 참여연대 관계자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인사말

심상정 /국회의원 · 정의당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덕양갑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우선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이하여 오늘 의미 있는 「세월호1주기, 기업책임법(기업살인법) 제정 미룰 수 없다」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애쓰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는 이윤을 추구해왔던 기업의 탐욕과 이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였던 국가 등 한국사회의 총체적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고 그렇게 다짐하였지만 과연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지난 10년여 간 노동단체 등 시민사회는 산재사망에 대해 기업의 중대 범죄로 보고, 이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어야만 기업이 변화할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저 자신도 「기업살인법」에 준하는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바 있지만, 이 법률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월호 참사처럼 선박, 항공 등 운송수단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국민 누구라도 기업의 탐욕으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대형 참사와 떨어질 줄 모르는 산재사망률, 이를 예방하고 낮춰야만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과 사업주의 책임을 매우 엄중하게 물어야 합니다.

생명 존중, 안전 사회로 가는 첫 걸음으로써 「기업책임법(기업살인법)」은 반드시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기업책임법(기업살인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시는데 많은 노력과 정성을 쏟아 부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인사말

은수미 /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은수미입니다.

먼저 이번 기업살인법 관련 토론회를 맞아 산업재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수 많은 노동자들과 그 유가족에 위로의 말씀 올립니다. 19대 국회 초반부터 지금까지 환경노동위원회를 담당하면서 수 많은 산업재해를 직, 간접적으로 접해왔고,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논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작업장 안전문제와 근로자 재해 현실은 피부에 와닿게 개선되지 않았고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간접고용을 통해 위험업무가 외주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하고, 행정관청의 철저한 감시·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중한 목숨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정치인이자 노동전문가로서 무한책임과 아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노동계와 관련 전문가들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원청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 원하청종합 안전대책수립이라는 큰 방향으로 정책과 제도가 바뀌고 있는 점에 위안을 삼아봅니다.

현재 안전기준만이라도 제대로 지켜진다면 산업안전문제가 일부 개선될 텐데 노동자 안전보다는 항상 이윤이 앞서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안전기준을 무시하고 근로자 안전을 내팽개치는 기업에 대해 엄정한 처벌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번 기업살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노력이 소중한 결실로 맺어지길 믿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사말

4.16연대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세월호참사의 아픈 교훈을 기업책임법(기업살인법) 제정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갑시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위험을 양산하고 심지어는 안전산업발전정책을 내놓으며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위협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우리사회는 위험을 양산하는 사회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안전불감증’을 이야기하며 사고와 참사의 고통이 마치 개인의 책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동자와 시민에게는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마저도 기업 이윤에 장애물이 된다고 여기는 사회의 가치를 바꾸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난과 참사의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할 이들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해치는 것이 범죄임을, 살인 행위라는 점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겨서 위험으로 내모는 모든 행위는 살인이라고 말입니다.

지금도 세월호 가족들은 눈물 흘리고 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었는지를 고통스럽게 묻고 있는데, 법은 참으로 차갑기만 합니다. 청해진해운의 최고 임원들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고, 구조와 구난업무를 외주화해버린 해경의 무능은 제대로 처벌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규제완화와 관리감독의 외주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한 정치인들은 법적 처벌은 물론이거니와 정치적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에 돈을 내세우며 ‘살인’ 행위를 하는 것을 강력하게 처벌하자고 이제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세월호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그 아픈 교훈이 기업책임법(기업살인법) 제정 운동으로 더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 인사말

한택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우리 모임이 기업책임법(기업살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공동주최자로 참가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인사에 갈음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기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사회의 혁신을 기업이 선도하고 있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기업에 소속되어 노동을 제공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런 긍정적 역할을 인정함에 있어 인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편 기업은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도 있습니다. 기업 자체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도태될 수 있는 조직이어서 그럴 위험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으로 기업을 통제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향후 국가의 가장 큰 역할은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그 활동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활동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기업이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발생한 큰 재해의 이면에는 언제나 기업의 탐욕과 안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게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합니다. 즉, 재해를 유발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을 행해서 안전보다 이윤을 선택하려는 동기 자체를 근절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중간 관리자 몇 명에 대해 미미한 처벌을 하는 지금 시스템으로는 큰 재해가 또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를 유발한 기업에 대해 책임을 묻는 ‘기업책임법’(기업살인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사가 큰 지금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회와 정부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기업책임법(기업살인법)을 제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임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사말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매년 4월은 노동자에게 참으로 잔인한 달이었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찬란한 봄에 매년 반복되는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해야 하는 잔인한 달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는 2015년 4월은 더욱 참혹합니다.

민주노총은 산재사망 처벌강화를 주요한 요구로 걸고 2012년부터 본격적인 대중투쟁을 전개해 왔습니다. 산재사망 처벌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했고, 법안 발의가 되었으며, 전 조직적으로 교육, 선전, 대 시민 선전을 진행해 왔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공공안전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먼저 나서겠다는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노동계를 중심으로 “기업살인법” 제정 요구를 한지도 10여년이 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그 동안 선언으로 제기되었던 “기업살인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입법안도 준비되고, 본격적인 제정운동을 벌려 나가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수 개월 동안 이 법안 준비를 위해 마음과 지혜를 모아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깊은 동지적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노총은 ‘기업살인법’이 자본의 탐욕을 막고, 정부의 무책임을 막는 주요하고 근본적인 방안이라 확신합니다. 멀고 먼 길 일수도 있으나, 그 길에 민주노총이 노동자, 시민, 그리고 희생자 가족분들과 더불어 끝까지 하겠다는, 그리고, 먼저 나서겠다는 다짐 새롭게 다시 합니다.

“죽은 자를 기억하고 산자를 위해 투쟁하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이제 우리의 4월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기업살인법’을 제정하기 위한 소중한 첫발을 내딛은 4월로 다시 한번 기록될 것입니다.

## 인사말

이상윤 /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기업은 범죄를 저질러도 그 '고의'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갑니다. 처벌받더라도 기업의 딸단 직원 몇 명만 가볍게 처벌받을 뿐 진짜 책임이 있는 기업의 최고경영자나 고위급 임원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기업의 살인행위를 처벌하자는 운동은 그 폭과 깊이 면에서 근본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그에 따라 자연스레 노동자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도 상대적으로 활발해졌습니다. 논의의 확장에 걸맞는 구체적 변화는 부족하지만 이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 탓이 큼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노동 현장의 관련 인식은 비약적으로 높아진 것에 비해, 이러한 인식 전환에 따른 내용적, 질적 변화는 더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질적 발전 방향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욱 큰 변화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운동의 문제의식과 근본 지향이 더 넓고 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이란 무엇인가? 기업의 의무와 책임은 어떻게 규정되며, 탐욕스런 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를 어떤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기업의 범죄 행위는 어떻게 정의되고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가?' 등등의 물음에 대한 해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우선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기업이란 무엇인가?'라는 연관된 질문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라는 '근대적' 과제와 '기업'이라는 '신자유주의적' 과제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과 더불어 실천적 대응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 사익과 이윤만을 추구하는 '괴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향후 더욱 활발한 논의와 운동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 발제

## 기업살인법<sup>1)</sup> 제정의 필요성과 법안의 주요 내용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1) '기업살인법'이라는 용어는 10여년간 노동계에서 사용해오면서 기업에 의한 산재사망이 살인행위와 다를바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법안 발제는 그 역사성 상징성을 그대로 담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식적으로 '기업책임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 발제

## 기업살인법<sup>2)</sup>제정의 필요성과 법안의 주요 내용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2) '기업살인법'이라는 용어는 10여년간 노동계에서 사용해오면서 기업에 의한 산재사망이 살인행위와 다를바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법안 발제는 그 역사성 상징성을 그대로 담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식적으로 '기업책임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 기업살인법 제정의 필요성과 법안의 주요 내용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I. 서론

세월호참사의 본질적인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명제는 “이윤보다 생명·안전!” 일 것이다.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를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기업의 의무는 방기되거나 축소되어 왔고 그 결과 대형 인명피해의 참사가 발생한다는 것을 세월호참사는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노동자·시민에 대한 기업의 안전의무를 강화하고 재해발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 2015년 3월 30일 정부는 안전대책의 종합판에 해당하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를 통해 모든 안전대책들을 망라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 기업의 안전관리의 외주화, 관피아로 상징되는 민관유착의 구조적 병폐 등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문제들은 의도적으로 회피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려는 정책적 방향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정반대로, 정부가 발표한 안전대책들은 기업의 안전투자 활성화라는 정책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동자·시민의 안전을 준수해야 할 기업의 책임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오로지 안전을 기업의 투자대상으로 바라보고 안전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안전대책의 기본방향인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하여 연일 이어지는 대형참사를 보면, 기업이 이윤추구 내지 비용절감의 명목으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데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그럼에도 기업의 안전의무를 강화하고 안전에 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고민이 없음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기업살인법의 문제의식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재해사고가 발생하면 대개 하급직 노동자나 중간관리자를 처벌하는 수준에서 형사처벌이 마무리되어 왔다. 이는 기업에 대하여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압박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되지 못한다. 기업은 처벌받은 노동자 대신에 다른 사람을 채용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산업현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기업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한 안전의무의 준수를 사회적·법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는 재해사고에 대하여 “기업의 경영책임자” 및 “기업 자체”에 대하여 효과적인 형사처벌을 담보하는 것이다.

## II. 기업살인법, 왜 필요한가

### 1. 청해진해운에 대한 처벌을 지켜본 단상

#### 1) 광주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

검찰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한 것과 별개로, 세월호의 과적과 화물고박의 부실에 대하여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김한식 및 임직원 7명(5명 구속)과 화물 하역업체 우련동운 관계자,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등 11명을 선박안전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횡령·배임죄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광주지방법원은 2014년 11월 20일 제1심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였다.<sup>3)</sup> 법원은 피고인들의 무리한 선박 증개축과 화물과적, 부실 고박 등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검찰의 수사 및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김한식은 물류팀으로부터 매일 화물영업실적 및 일일화물매출집계표를 보고받고, 매주 월요일 오전에 피고인 김영봉, 안기현, 남호만, 박희석 등이 참석한 주간회의를 주재하면서 화물 영업실적, 거래처 미수금, 거래처 유치사항 등에 관한 ‘주간실적 및 계획’을 보고받으면서 화물을 많이 실으라며 실적을 독려했다.”<sup>4)</sup>고 한다. 이를 근거로 하여 김한식 대표이사 및 경영진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2014. 4. 15. 세월호에 평형수, 연료유, 청수 등을 복원성기준인 합계 2,546.6톤보다 1,375.8톤이 적은 1,170.8톤만 적재한 반면 화물은 복원성 기준상 적재 최대치인 1,077톤보다 1,065톤이 많은 2,142톤을 적재하면서 관련 규정대로 화물에 대한 고박을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과실을 기초로 하여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김한식 등 청해진해운의 임직원인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형법 제189조 제2항)가 적용되었고, 복원성을 유지하지 않고 운항한 것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 제86조 제1호, 제28조 제1항<sup>5)</sup>도 적용되었다.

3) 광주지방법원 2014.11.20. 선고 2014고합197, 209, 211, 447(병합) 판결.

4) 위 판결문 17면.

5)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제28조(복원성의 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인·해양사고구조·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2) 생각해 볼 점

### (1) 기업의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에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되었다. 기업의 사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사망사고에 대하여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직접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그것도 징역 10년형이 선고된 것을 보면 우리 법체계가 ‘꽤 잘 작동하는 듯한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세월호참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횡령·배임의 범죄사실을 제외하고 보면,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청해진해운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경영진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 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와 선박안전법 위반이 전부이다. 횡령·배임을 제외하면 적용되는 형량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을 것이다.<sup>6)</sup>

무엇보다 기업이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이처럼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처벌된 사례는 사실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대하여 삼풍그룹의 이준 회장 등 최고경영진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된 전례가 있기는 하다. 이 사건에서는 이준 회장 등이 삼풍백화점 붕괴의 원인이 된 옥상 증축공사를 직접적으로 챙겼을 뿐만 아니라, 건물 옥상에 무리하게 에어컨 냉각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건물 5층 천정에 균열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받고 직접 균열보강공사를 지시하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유사하게, 세월호 참사에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이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된 것은 그를 비롯한 경영진들이 매주 주간회의를 통해 실적보고를 받으면서 화물과적을 지시 내지 용인한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해사고에 대하여 기업의 최고 경영자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재해사고에서는 기업의 하위직 직원이나 현장관리책임자 정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우는데 그치는 것이 보통이다. 최근에 발생한 몇몇 재해사건만 보아도 이러한 현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건의 경우 - 기소된 21명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은 리조트 사업본부장

- 대림산업의 여수 산업단지 폭발 사고(6명 사망, 부상 11명)의 경우 - 기소된 사람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은 대림산업 석유사업부 여수공장의 공장장

---

6) 횡령·배임죄를 제외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5년 이하의 금고’가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이 된다. 여기에 선박안전법 위반이 경합범으로 처벌된다고 해도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은 ‘7년 6월 이하의 금고’이다.

■ 현대제철 당진공장 가스 누출 사고(1년 동안 10명 사망)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은 위 공장 생산본부장(부사장직급).

현행 법체계에서 산업재해나 공중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기업의 임직원에게 주로 적용되는 처벌규정은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내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노동자나 중간관리자에게 재해사망사고의 형사책임을 부과하는데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sup>7)</sup> 기업의 최고경영진에게도 재해발생에 관한 '과실'이 입증될 수 있다면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 비록 형량은 낮은 수준이긴 해도 -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가능성일 뿐이다. 현실적으로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거의 재해발생에 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은 것은 기업의 책임분산 조직구조 때문에 안전관리 시스템의 결함 내지 미비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그리고 검찰의 편의적·자의적 기소재량이 결합한 때문이다.

그런데 이는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 오늘날 기업의 위험관리는 점점 더 시스템화되고 각 행위자는 시스템의 한 부문에서 한정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sup>8)</sup> 제임스 리즌은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은 특정한 개인 노동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조직유발사고'로 발생한다고 말한다. 개인유발사고는 개인이 안전을 무시하는 행동(비안전행동)을 통해 발생하며 인과관계도 비교적 단순한 반면에, 조직유발사고는 기업 내 시스템의 다층적인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여기에는 조직 외부에서 행해지는 안전규제 및 감독시스템과의 유기적 연관성도 작동하게 마련이므로 그 원인을 하나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sup>9)</sup> 조직유발사고는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한번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를 야기한다. 이는 주로 원자력,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 해양수송이나 항공, 열차수송 등 복잡하고 고도로 분업화된 기술시스템을 사용하는 분야에서 발생한다. 더구나 이러한 영역에서는 재난사고가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요인이 은폐되거나 평가절하되고 대신에 기업의 이윤논리가 보다 강조되는 조직시스템이 구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 결과 사회 전체적으로 사고의 위험을 한층 증대시키는 상황이 된다.

아래 그림은 제임스 리즌이 제시한 조직유발사고의 발전단계를 보여준다.<sup>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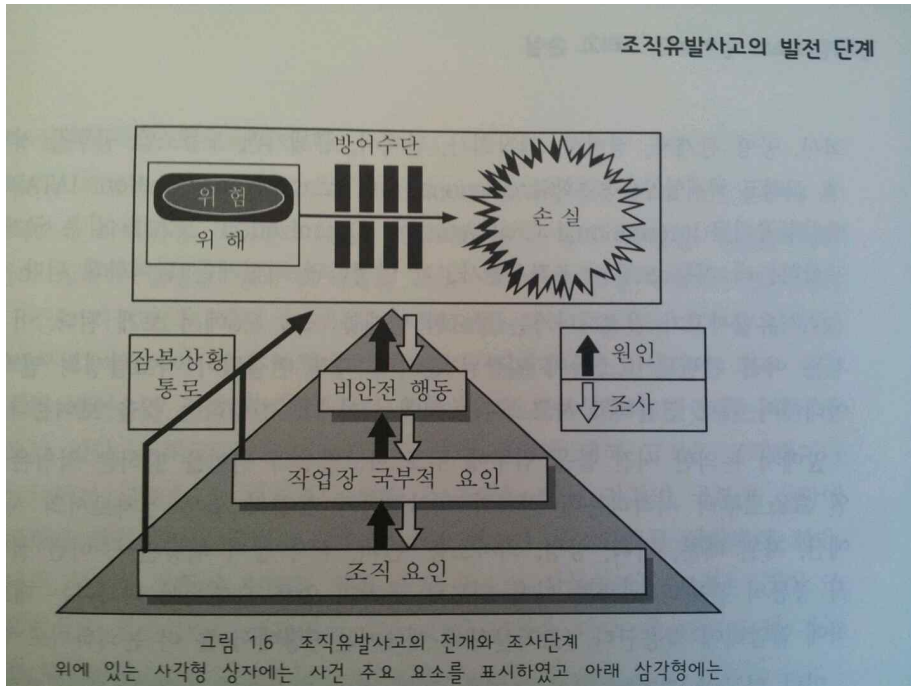
---

7) 산업재해의 경우에도 산재사망사고에 대하여 기업의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책임자 정도가 처벌되는데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강문대, “한국에서 ‘기업살인법’의 논의 과정과 주요 쟁점들”, 민주노총 등 주최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국제 심포지움」, 2014.12.2. 자료집, 140-143면 참조.

8) 제임스 리즌(백주현 옮김), 인제는 이제 그만, GS인터비전, 2014, 20-24면.

9) 제임스 리즌, 앞의 책, 16면.

10) 제임스 리즌, 앞의 책, 21면.



이 그림은 대형재해사고가 단지 개인 행위자의 비안전행동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비안전행동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조직 요인에서부터 시작하여 작업 현장의 여러 가지 조건적 요인을 거쳐서 개인 행위자의 비안전행동으로 연결되어 재해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조직유발사고에서도 직접적인 원인유발 행위자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재해발생의 이러한 특성을 염두에 둔다면,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저지른 하위직 노동자에게만 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데에는 거의 무기력하게 된다. 그러한 안전관리의 시스템을 관할하고 지배하는 것은 기업, 그리고 기업의 경영책임자이다. 오늘날 기업의 안전의무에 있어서 기업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기업의 조직문화가 분업화되어 있을수록, 기업의 안전관리가 시스템화되어 있을수록, 재해사고에 대한 기업의 경영책임자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역설이 발생한다. 대형 재해는 기업의 안전관리 조직 요인에서 비롯되며 그러한 안전관리 조직문화를 책임지는 것은 기업의 경영책임자일텐데, 형법상 재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에는 오히려 기업 경영책임자의 과실을 인정하기가 점

점 더 어려워진다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기업 내의 안전예방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는 최종책임자이기 때문에 재해 발생시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확실하게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을 때 비로소 효과적인 안전조치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현행법체계에서 재해사고 발생시 기업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담보되어 있지도 않다는 문제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 (2) 기업 자체의 형사책임은?

현행 법체계에서는 기업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재해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이에 대하여 - 안전조치 위반 내지 과실이 인정되는 개인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 “기업 자체”를 처벌하기는 불가능하다.

법인의 범죄능력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며<sup>11)</sup> 법인 내지 기업은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에 의하여 처벌될 뿐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사업수행과정에서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로 대형 재해가 발생하였다라고 그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개인 행위자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할 수 있겠지만, 해당 기업에 대하여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다만,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기타 법률에서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처벌이 가능하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청해진해운 대표이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해당 기업인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는 재해로 인한 사망에 관하여 형사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에게 적용된 선박안전법의 경우에도 해당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은 아예 없다.

설사 재해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등 특별법상의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을 테지만, 그 경우에도 기업은 벌금형으로 처벌될 뿐이며, 벌금의 액수 또한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문제이다. 기업이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위험을 감내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로 인하여 얻을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안전을 등한시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문화 내지 조직구조가 일상화되어 있다면 그로 인한 수익이 귀속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 기업으로 하여금 재해의 예방을 위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양벌규정에 의한 낮은 수준의 벌금형으로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

11) 대법원 1984.10.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2010.9.30. 선고 2009도 3876 등.

청해진해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는 청해진해운이 2013.3.15.부터 2014.4.15.까지 최대 화물적재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하여 139회 운항하면서 합계 29억 6,000만원의 초과운임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sup>12)</sup> 이는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운항시 화물과적을 일상적으로 함으로써 승객의 안전을 무시하면서 돈벌이에만 급급하였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행태로 보면, 청해진해운이 2014년 4월 15일 출항한 세월호에서만 화물을 과적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선박의 안전조치를 방기하고 위험을 조장한 것이 청해진해운이라는 기업의 경영전략이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청해진해운이라는 기업에 대하여 재해사고에 관한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 2. 기업처벌에 관한 현행법 규정의 한계

### 1) 현행법 규정

#### (1) 산업재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은 사업주의 의무로 산업재해 예방기준을 준수할 것과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sup>13)</sup> 보다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는 유해위험의 요인, 작업방법, 위험작업장소에 대하여 위험방지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24조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내지 제24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67조 제1호). 그리고 사업주의 그러한 의무위반으로 인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6조의2).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

12) 그러나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에게 대한 광주지방법원의 제1심 재판에서는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적상태에서의 항해횟수 및 초과운임에 관한 사항을 범죄사실로 인정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2014.11.20. 선고 2014고합197, 209, 211, 447(병합) 판결.

13)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6.12.>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3.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인처벌은 - 다른 법률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 소위 ‘양벌 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66조의2, 제67조 등을 위반한 행위가 있으면 법인에 대해서 해당 조문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14)</sup> 양벌규정이 전부 그렇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서도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형만 부과할 수 있으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의 감독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산재사망사고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는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도급사업의 경우 원청사업주에 대해서는 산안법 제66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단순히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sup>15)</sup>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뿐이다.

## (2) 일반 공중재해의 경우

한편, 공중재해로 인하여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가 적용된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개인 행위자의 과실이 있고 그것이 사망이나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될 때 개인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과실의 존재와 입증은 기업의 최고 경영자에게까지 인정될 수 있지만, 대기업처럼 기업의 조직구조가 체계화되어 있다면 재해사고에 대하여 최고 경영진의 과실을 인정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한편, 일반 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

---

14)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도2615 등.

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광진흥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선박법', '선박안전법', '항공보안법', '철도안전법' 등에서 규정한 안전의무위반의 벌칙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조치 위반의 죄는 재해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발생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안전조치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이기 때문에, 대개 형량이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 2) 부실한 처벌

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도 현장소장이나 현장근로자가 처벌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에 대하여까지 형사책임을 묻은 예는 매우 드물다. 설사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몇천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고작 수백에서 수천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것이 전부인 상황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그 벌금액수는 최대 3,000만원에 불과하였고, 대부분의 경우 기업에 대한 벌금은 1,000만원 미만이었다고 한다.<sup>16)</sup>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은 대개 기업의 사업정책에서 연유하는 측면이 강하며, 설사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처벌로 인한 불이익보다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막대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형사처벌 방식으로는 기업의 안전의무이행을 담보하는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 및 경영진에 대한 처벌수위는 매우 낮고 벌금형도 경미한 수준이라 안전의무 소홀로 인한 기업의 막대한 이익을 상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 3) 우리나라의 양벌규정의 한계

우리나라의 양벌규정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종속모델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인 행위자의 범죄행위를 전제로 해서 법인에 대해서는 그 종업원에 대한 감독책임을 묻는다고 본다. 현행법상의 양벌규정은 한결같이 법인이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 그 주요 근거가 된다.

그러나 법인처벌에 대하여 감독책임론을 엄격하게 인정하면 법인의 주의의무 위

---

16) 강문대, “한국에서 기업살인법의 논의과정과 주요 쟁점들”, 민주노총 등 주최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국제심포지움」, 2014.12.2. 자료집, 142면.

반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단순한 입증곤란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내부의 업무지휘 및 감독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 법인 자체가 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는 종업원에 대한 감독부실에 있다고 보는 것인데, 이는 범죄에 관한 “기업 자체의 책임”을 드러내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기도 하다.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위험을 창출하고 그 위험을 지배하는 주체가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라면, 그리고 그 기업의 활동방식이 구성원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기업의 조직문화 등으로 형성된 일정한 규칙이나 관행 등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기업에 대한 처벌은 단순히 그 종업원에 대한 감독상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때에는 특정한 개인의 의사결정상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행동규칙이나 관행 그 자체를 변경시켜야만 재해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재해사고에 대하여 기업을 처벌한다면 그 처벌의 근거는 종업원에 대한 감독을 잘못된 점이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도록끔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기업의 정책, 관행, 행동규칙 등을 비난의 핵심으로 포착해야 한다. 현재의 양벌규정 방식은 이 점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안전의무 소홀 등에 대하여 기업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과한다면, 이는 기업의 의사결정구조 및 문화 자체가 그러한 위험을 방치하거나 위험을 통제하는데 미흡하다는 점을 근거로 기업책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 Ⅲ. 외국의 기업살인법

#### 1. 영국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19세기 중반경부터 소위 “대위책임이론”에 의하여 ‘엄격책임범죄’에 대해서는 개인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었다. 엄격책임범죄(strict liability crime)란 고의 등 주관적 요소 없이 범죄의 객관적 요소가 충족되면 범죄가 성립하는 유형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기업이 행위자에게 대하여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였거나 행위자가 기업의 피고용인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해당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엄격책임범죄는 예외적인 경우에 불과하고, 고의·과실의 주관적 요소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는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서는 대위책임이론이 적용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sup>17)</sup>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영국에서는 “동일성이론(identification

principle)”이 발전하였다. 동일성이론은 기업의 구성원을 ‘두뇌에 해당하는 자’와 ‘수족에 해당하는 자’로 구분한다. ‘두뇌’에 해당하는 자, 특히 기업의 경영진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행위하는 자(directing mind)이므로 이들의 행위는 곧바로 기업의 행위로 간주되어 해당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sup>18)</sup>하다고 본 반면에, 기업의 ‘수족’에 해당하는 구성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동일성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동일성이론의 한계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동일성이론은 기업의 두뇌에 해당하는 자, 즉,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행동한다고 볼 수 있는 경영진의 범죄행위가 있을 때 해당 기업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긴 하였으나, 이는 현실에서 매우 예외적인 상황일 뿐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영국에서는 1992년부터 2005년 사이에 산업재해와 관련되어 기업이 살인죄로 기소된 숫자가 34건이었지만, 그 중에서 단지 6건에 대하여서만 유죄판결이 내려졌으며, 그것도 모두 1인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사건이었고, 대기업에 대하여 살인죄를 이유로 한 유죄판결이 내려진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sup>19)</sup>

무엇보다 규모가 큰 대기업의 경우에 기업의 활동은 분업화되어 있고, 경영진은 주로 거시적인 의사결정에만 관여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체적인 위반행위는 중간간부나 그 아래직급의 직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동일성이론은 이러한 행위자들의 범죄에 대하여 기업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sup>20)</sup>

영국에서 2007년 소위 기업살인법을 제정하게 된 주요 배경이 된 사건 중 하나가 1987년의 Herald of Free Enterprise호 사건이었다. 사건은 이러하다. 1987년 3월 6일 Herald of Free Enterprise호는 출항 당시에 선수문의 개폐를 담당한 보조갑판장(assistant bosun)이 잠이 들어 버렸기 때문에 선수문을 닫지 아니한 채로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항해를 막 시작하여 항구를 벗어나자마자 전복되었고 192명의 승객과 선원 등이 사망하였었다. 선수문이 닫혀 있음을 확

---

17) 김호기, “커먼로 국가의 기업살인죄의 검토 - 기업 고유의 형사책임 인정을 위한 기업 문화론적 접근방법 -”, 「형사법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형사법학회, 2010, 308-309면.

18) Tesco Supermarkets Ltd v. Nattrass [1972] A.C. 153, 170 : “사람은 인식, 의도, 과실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의도를 수행할 수 있는 손도 갖고 있다. 그러나 기업은 이러한 것들 중 어느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하다. 기업은 사람을 통하여서만 행위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기업이 사람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될 때 실제로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 기업을 위하여 행위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기업으로서 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의 행위를 지시하는 그의 마음은 곧 기업의 마음이다. 그는 기업의 대리인이 아니며, 그가 곧 기업이다.”

19) Home Office, Corporate Manslaughter: The Government's Draft Bill for Reform, Cm 6497, 2005, 8 참조.

20) Andrew Ashworth, Principles of Criminal Law, 2009, 149면 이하.

인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일등항해사(chief officer)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졌다. 함교에 있는 선장으로서는 선수문이 올바르게 닫혔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기업을 포함하여 8명이 중과실치사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동일성 이론을 적용하여 기업에 대하여 중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가를 검토하기 위하여서는 기소된 자 중에 기업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가 있어야만 하는데, 기소된 자들 중 적어도 두 명은 위 선박 소유사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고위 경영진에 해당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해 기업을 중과실치사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위 경영진에 해당하는 개인들에 대하여 중과실치사죄의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경영진에게 경솔함(recklessness)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당시 영국 법원에서 경솔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주로 Caldwell 법리<sup>21)</sup>가 적용되었다. 이에 따르면, 경솔함이란,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였을 것, 그리고 행위자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그러한 위험 발생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거나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조치 없이 행위로 나아갔을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준을 Herald of Free Enterprise호 사건에 적용해 보면, 해당 기업에 대해 중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위경영진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선수문을 열어 놓은 채로 항해를 하게 된다면 선박이 전복되어 승객이 사망하게 될 명백하고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어느 정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항해하도록 하였어야 한다. 법원의 재판에서 기업 고위경영진에 대하여 이러한 의미의 '경솔함'이 입증되지 못했고, 결국 선박 소유 회사에 대하여 중과실치사죄의 책임을 물어 처벌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재해사망사고에 대하여 동일성이론을 적용하여 기업을 처벌하려는 시도는 Herald of Free Enterprise호 사건 외에도 Great Western Trains 사건<sup>22)</sup> 등 몇몇 대형 재해사건에서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런 대형 재해사건은 기업의 특정 직원이 자신이 취해야 할 안전의무를 충실하

21) R. v Caldwell (James), [1982] A.C. 341, 352 이하.

22) 1997년 9월 19일 오후 1시경 스완지(Swansea)에서 런던으로 향하던 고속열차가 화물 열차와 충돌하여 7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부당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고속열차의 기관사는 사고 당일 오전 7시에 런던에서 스완지까지 같은 열차로 운행하였으며, 역방향으로 운행하여 오던 중 사고가 난 것이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기관사가 도착에 대비하여 짐을 챙기느라 신호등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열차 신호를 무시하고 운행되었기 때문이었다. 열차는 한 명의 기관사에 의하여 운행되고 있었고, 열차에는 기관사가 신호를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경보장치(A.W.S.)와 자동열차보호장치(A.T.P.)가 설비되어 있으나 양자 모두 작동이 중지된 상태였다고 한다.

게 이행하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넓게 보면 기업의 사업수행에서 필요한 위험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었던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기업처벌의 이론적 근거인 동일성이론은 재해사망사고에 있어서 기업 경영진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기업을 처벌하는 이론이지만, 그것은 기업 내부에 위험관리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었는가 여부를 직접적으로 고려하는 이론은 아니었다.<sup>23)</sup> 동일성이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기업 경영진에 대하여 그러한 재해사망사고의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가(예견가능성) 여부만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동일성이론이 범죄행위에 관한 개인책임의 접근방법에서 출발하여 고위경영진의 형사책임이 인정될 때 기업에게도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식의 이론적 고안물이라는 점에서는 노정된 한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영국에서는 공중재해사건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고위 경영진이 ‘그러한 위험을 직접 인지하였거나 최소한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영국에서는 동일성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험관리 시스템의 실패로 인하여 재해사망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 기업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중과실치사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기 위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확산되었고, 그 결과물로 2007년 소위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이 제정되었다.

영국의 기업살인법 제1조는 기업<sup>24)</sup> 등이 “운영되고 조직되는 방식(the way in which its activities are managed and organised)”의 실패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고, 그러한 운영방식의 실패가 고위경영진에 의한 것으로서 당해 기업이 사망한 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때에 해당 기업을 기인살인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기업 경영진의 조직관리상의 책임 내지 운영실패를 근거로 해당 기업을 처벌하도록 한 점에 있다.

기업처벌의 요건으로서 ‘운영실패’란 기업 내부에 적절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또는 기업이 사업수행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문제삼는다. Herald of Free Enterprise호 사건의 경우를 보면, 선수문을 닫지 않고 출항한 것에 대하여 고위 경영진의 직접적인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기업살인법상의 ‘운영실패’라는 요건에

---

23) 김호기 외,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형사법제 연구(II) - 주요 국가의 기업의 형사처벌 방법에 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120면.

24) 영국의 기업살인법은 기업 등 법인 뿐만 아니라 단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기업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비추어 보면, 해당 기업이 선박 출항시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는가 여부를 검토하여 기업에 대하여 중과실치사죄의 형사책임을 부과할 가능성이 생긴다. 영국의 기업살인법은 특정한 경영자 개인에게 중과실치사죄가 인정되는가 여부와 상관없이, 기업의 경영방식의 실패로 인하여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요건으로 하여 곧바로 기업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이 특징이다.

그런데 영국의 기업살인법의 한계도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기업살인법의 적용범위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업살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경영 실패가 기업의 고위경영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 요건이기 때문에 여전히 동일성이론의 난점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sup>25)</sup> “고위경영진이 아니라 하위경영진의 경영 실패에 의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또는 고위경영진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행위에 의하여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당해 기업이 형사책임으로부터 면책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sup>26)</sup>이라고 한다. 셋째, 기업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벌금형만 가능하다는 점도 한계이다. 법원은 기업에 대하여 벌금형을 부과할 때 시정명령(동법 제9조 제1항)이나 위반사실의 공표(제10조) 등을 명할 수 있으나 기업의 영업정지 등의 제재는 도입되지 않았다.

## 2. 호주

기업의 형사책임을 개인 행위자의 범죄행위와 연동시키지 않고 기업의 독자적인 형사책임을 묻는 가장 혁신적인 입법을 취한 입법례는 호주의 1995년 형법전(Criminal Code Act 1995)이다. 호주의 1995년 형법전은 기업이 살인죄 등 모든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Criminal Code Act 1995 12.1. (1)).

기업처벌의 요건은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객관적 요건에 관해서는, 기업의 구성원이나 대리인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가 범죄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면 곧바로 기업에 대해서도 해당 범죄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12.12.). 그리고 주관적 요건에 관해서는, 고의범죄의 경우에는 기업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범죄행위를 행할 권한을 부여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승인한 때에는 기업에 대해서도 해당 주관적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다(동법 12.3. (1)). 다만, 기업은 고위 경영진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함으로써 형사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25) 이에 대해서는 김호기, 앞의 논문, 318면.

26) 김호기, 앞의 논문, 318면.

호주 입법례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소위 ‘기업문화’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였다는 점에 있다(동법 12.3. (6)). 기업문화란 기업 내에 존재하는 태도, 정책, 규칙, 행동 방침이나 관행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호주 형법전은 기업문화로 인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기업이 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기업문화를 형성·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에 대해서도 고의 등 범죄의 주관적 요소가 충족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기업문화’ 요건은 안전을 무시하거나 안전관리를 등한시하도록 조장·묵인하는 기업 내부 문화가 존재하는 한 그것이 고위경영진의 경영방침에 의한 것이건 아니건 간에 그러한 기업문화의 존재 자체를 근거로 하여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영국 기업살인법에서 고위경영진의 경영실패를 요건으로 하는 것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기초하여 호주 수도 준주에서는 Crimes(Industrial Manslaughter) Amendment Act 2003를 제정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기업 및 기업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하였다.

### 3.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1992년 Westray 광산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하여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을 보다 용이하게 인정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다만, 캐나다에서는 호주의 기업문화론적 접근방법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대신에 영국과는 다르게, 살인범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채택하게 된다.

Bill C-45에 의하여 개정된 캐나다의 형법전은 기업만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모든 단체(organization)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범죄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 형법은 각칙에 규정된 개별적인 범죄의 주체인 ‘사람’에 자연인분만 아니라 단체가 포함된다고 명시함으로써, 모든 범죄에 대하여 기업이나 단체가 범죄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 등 단체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에 관해서는, 호주의 “Criminal Code Act 1995”의 경우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기업문화를 근거로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은 도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동일성이론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IV. 기업살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

### 1. 특별법으로서 기업살인법 제정

“기업살인법”의 문제의식은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대하여 기업 및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자에 대하여 실효적인 처벌을 담보하지 못하는 현행법체계의 결함에서 비롯되었다. 노동건강연대에서 2003년부터 “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이다”라는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기업살인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 영국과 호주, 캐나다의 기업처벌에 관한 법률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기업살인법’은 꽤나 일반화된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하여 재해사고에 대한 기업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 호주 수도 준주의 Crimes(Industrial Manslaughter) Amendment Act 2003
- 영국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 캐나다 Criminal Code 217-1조, 22-1, 22-2조 (2004 Bill C-45)

입법방식을 잠시 검토해 보면, 우선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우선 현행 양벌규정을 보완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살인법에 관한 관심이 촉발된 것은 산업재해의 영역에서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19대 국회에서 기업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3건 발의된 바 있는데, 이 법안은 모두 현행 양벌규정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순번	의원	소속정당	입법안	제출시기
1	심상정	정의당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2013. 6. 26.
2	김선동	통합진보당	기업살인처벌법안	2013. 12. 24.
3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2013. 5. 28.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범죄의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처벌과 관련해서는 현행의 양벌규정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벌금을 가중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동 법안 제6조).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양벌규정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살인처벌법안」도 양벌규정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이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그 액수를 대폭 높이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처벌을 양벌규정에 의존하는 전제에서 단지 그 형량을 강화하는 방향은 몇가지 한계를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첫째는 개별적인 입법에 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위 3개의 입법안은 모두 산업재해의 영역에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산업재해 외에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사망사고에 대하여 기업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다시 필요하게 된다. 둘째, 양벌규정이라는 틀을 유지하는 한 벌금액 상한을 높이는 것 외에

입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셋째, 기업의 면책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나, 개별적인 양벌규정의 개정에서 이것을 담아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렇다면, 보다 전향적으로 기업 및 기업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때 기업처벌의 이론적 근거에 관해서는 ‘위험방치의 조직구조 내지 조직문화’를 근거로 기업의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인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별법 제정의 방향으로 나아가간다면, 기업처벌의 대상범죄를 별도로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 그 대상범죄의 범위에 관해서는 입법정책적 고려, 현실적 필요성 등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세월호참사의 재발방지대책에 있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선은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를 상정한 특별법 제정운동으로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기업살인법의 문제의식을 담아 그 동안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및 법률가들의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이제 기업살인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법안의 명칭은 “**산업재해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관한 기업 및 사업주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하였다.

## 2. 목적 및 적용대상(제1조 및 제2조)

1) 산업재해 및 일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공중재해에 대하여 사업주 내지 경영책임자와 기업 자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기업살인법의 목적인 만큼, 적용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 및 사업장 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철도, 버스 등 차량, 선박과 항공기도 포함하도록 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의 “위험물업소”(위험물제조·취급·저장업소)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적용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사업 및 사업장 + 다중이용시설 + 시설물 + 차량·철도·선박·항공기 + 위험물업소
------------------------------------------------------------------------

2) 특별법안의 적용대상에 특별히 ‘사업’을 명시한 것은 해병대캠프 사고 사례라든가 최근에 발생한 판교 환풍구붕괴사건 등에서 보듯이, 특정한 ‘사업장소’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 참가자나 일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업의 수행’에서 발생하는 재해사망사고에 대하여도 해당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한 기업 및 기업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직접수행사업장 외에 원청사업자의 안전의무와 책임도 함께 규율하도록 범위를 넓혔으며, 그 외에도 다중이

용시설이나 기타 시설물, 차량·철도·선박·항공기 등을 포괄하도록 규정하였다.

3) 이 법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나 이용자 기타 사람의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였다. 사망뿐만 아니라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였다.

그리고,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경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직접 고용된 근로자(실질적 고용관계 기준)의 안전에 대해서만 해당 기업의 안전의무를 인정하고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나 도급용역노동자나 하청근로자가 재해피해를 당한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 내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을 고려하여 이 법안에서는 직접고용노동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나 도급용역노동자나 하청근로자가 재해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외에 불산가스누출사고 등 공장 주변 지역의 주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를 포함하기 위하여 근로자나 이용자 외에도 지역주민의 인명피해에 대해서도 적용되도록 하였다.

### 3. 사업주와 기업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제3조)

1) 기업살인법은 산업재해와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공중재해에 대하여 사업주 내지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강화하고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부과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안전과 관련한 기업의 예방의무는 적용대상별, 항목별(화재관리, 시설물관리 등)로 각각 수많은 개별적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으며 그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또한 각 법률에 산재해 있다.

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의무의 세부적인 사항을 ‘기업살인법’이라는 하나의 법률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그럴 필요도 없어 보인다. 기업살인법의 목적은 사업장이나 시설 등에서 안전관리의 미비로 발생한 재해 사고에 대하여 기업과 기업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므로 안전의무의 기본적인 사항은 개별 법령상의 안전의무에 의하도록 전제하는 입법방식을 채택하였다.<sup>27)</sup>

따라서 이 법은 기업이 준수해야 할 안전의무의 구체적인 사항을 직접적으로 규

---

27) 이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안전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예를 들어, 유해화학물질의 허용기준이라든가 그것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감독시스템의 세부적인 내용)이 타당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각 법령에 산재한 안전의무가 과연 각 관련 산업에서 노동자나 시민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담보할 만한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과학적 검토와 사회적 공론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특별법안은 그러한 안전의무의 세부적인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관한 기업 및 기업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정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안전의무는 각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각 위험 영역에서 관행·정책 등으로 인정되는(혹은 인정되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한다. 이 법안은 그러한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 및 기업 자체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을 강구하는 방식으로 법체계를 구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살인법안은 기업의 안전의무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을 두기로 하였다(제3조 제1항). 이는 기업의 안전의무에 관한 한, 해당 기업 및 기업 경영책임자가 최종적이고 포괄적인 안전의무의 주체임을 보다 분명히 한다는 의미가 있다.

2) 이 법안에서는 사기업뿐만 아니라, 사업수행이나 사업장관리에서 안전의무가 책임이 있는 모든 “주체”를 처벌대상으로 포괄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일반 기업은 물론이고 공기업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더 나아가서 국가 행정기관도 안전의무의 주체로 상정하고 처벌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4. 사업주 내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제4조)

##### 1) 경영책임자의 안전의무위반 요건 강화 및 형량 강화(제4조 제1항 및 제2항)

기업살인법안에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의무 위반 → 사상의 결과 발생 및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여 재해발생에 대하여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제3조에서 기업 경영책임자의 안전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에 상응하여 경영책임자의 안전의무위반을 요건으로 설정하였다.

호주 기업살인법의 경우 ① 사용자가 노동자의 생명, 안전, 건강에 대한 위험을 방지·회피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② 그 위험이 사용자의 작위로부터 발생하거나, 사용자의 관리·통제 하에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사용자의 사업수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로서, ③ 사용자의 부작위가 노동자의 사망(고용 중의 상해로 인하여 나중에 사망한 경우도 포함)의 원인이 되고 ④ 사용자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노동자의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무지하였거나 태만히 한 경우에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만하다.

특히 “시설물, 장비, 차량, 화학물질의 결함이나 그 관리와 운용의 소홀”이 재해의 원인이 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의 안전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다(제4조 제2항). 대형 재해사고는 대부분 그와 같은 원인이 작용하여 대규모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물이나 장비, 화학물질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업 경영책임자에게 안전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는 취지이다. 다만, 이 규정이 형사책임을 의제한다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서의 면책조항을 추

가하는 것으로 하였다.

더불어 경영책임자의 안전의무위반으로 인한 사상 발생에 대하여 현행 업무상과실치사상죄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의 형량은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형량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하였다. 특히 2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없애는 방향으로 하였다.

다만, 경영책임자 이외의 중간간부나 하위직 노동자의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또는 산안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현행법 체계에 따르도록 하고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는 기업살인법안이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2) 지시·방치·묵인·조장의 경우 가중처벌(제4조 제3항)

한편,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위반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면서 방치·묵인·조장한 경우에는 사실상 기업 경영책임자의 안전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단기와 장기의 형을 각각 1/2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 5. 법인의 처벌(제5조)

현행법상 기업은 법인처벌에 관한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처벌되기 때문에 재해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는 경우에 기업 자체에 대한 처벌은 아예 불가능하다. 그리고 양벌규정에 의하여 기업을 처벌할 수 있는 경우에도 양벌규정 방식은 몇가지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기업 경영자나 종업원 등 개인 행위자의 범죄행위를 전제로 해서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소위 종속모델). 둘째, 양벌규정은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를 '종업원에 대한 감독부실'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는 형벌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안전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재해 사고에 대하여 "기업 자체의 책임"을 드러내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셋째, 현행 양벌규정의 방식은 법인에 대하여 오직 벌금형만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양벌규정의 이러한 한계를 뛰어 넘어 산업재해나 공중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러한 사업을 관장하는 기업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을 도모해 보자는 것이 특별법안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이다. 기업의 범죄능력을 정면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법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영국이나 호주의 입법례처럼 기업의 독자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입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기업의 독자적인 형사책임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가능하고,

현재의 양벌규정의 방식을 전제로 해서 기업의 처벌에 있어서 조직문화 등으로 인한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도 가능해 보인다.

## 1) 법인 처벌의 입법방식

법인내지 기업 처벌의 방식은 형법이론상 크게 종속모델과 독립모델로 구분된다.

(1) 종속모델은 기업에 소속된 개인의 위법행위를 전제로 하여 기업을 처벌하는 형식을 말한다. 종속모델에 따를 때, 기업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은 다시 두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기업의 '행위책임'인데, 이는 기업의 대표자 등에 의한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 위법행위를 곧바로 기업의 행위로 귀속되어 기업이 직접 행위책임을 지는 경우를 말한다. 영미법계 국가에서 발전된 대위책임이론이나 동일성이론이 이론적 근거가 된다. 둘째, 그러한 경우 외에 기업의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기업이 부담하는 형사책임은 대개 '감독책임'으로 귀착된다. 감독책임이란, 기업의 구성원이 범죄행위를 하였을 때 상급자의 감독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행위가 법인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양벌규정은 이러한 감독책임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속모델의 대표적인 입법례로는 프랑스 형법을 들 수 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법인은 민사책임만 질뿐이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1994년 형법개정으로 법인처벌 규정을 형법에 도입하였다.

### ■ 프랑스 형법

제121-2조 (법인의 형사책임) ① 국가를 제외한 법인은 제121-4조 내지 제121-7조의 구별에 따라 법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법인을 위하여 행한 범죄에 관하여 형사상 책임이 있다.

②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연합기구는 위탁협약의 대상이 되는 공공서비스 제공의 업무수행 중에 이루어진 범죄에 관하여만 형사상 책임이 있다.

③ 법인의 형사책임은 제121-3조 제4항 규정의 유보 하에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정범 또는 공범이 되는 자연인의 형사책임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프랑스 형법 제121-2조는 법인이 범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자연인에 의해 범해진 범죄가 법인에게 귀속될 수 있는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법인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자연인인 기업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하여 범죄의 성립요건이 갖춰질 것을 요한다. 1994년 입법 당시에는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라는 문구를 통해 형법 각칙에서 법인처벌이 가

능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만 법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2004년 개정으로 위 문구를 삭제하고 지금은 모든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121-2조에 따라 법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형법의 법인처벌 방식은 전형적인 종속모델(그 중에서도 행위책임 방식)이지만, 법인에 대한 형벌로서 벌금형을 가중하도록 하고, 또 벌금형 외에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벌을 도입하였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법인에 대한 형벌은 원칙적으로 벌금형이지만, 벌금형의 최고는 형법전 제131-38조 및 제131-41조에 따라 자연인에게 선고될 수 있는 최고액의 5배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2004년 개정에 의하여, 자연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규정되지 않은 중죄의 경우에 법인에 대하여 선고할 수 있는 벌금최고액을 100만 유로로 정함으로써 처벌의 공백을 없앴다. 그리고 프랑스 형법 제131-39조에 따라 법률이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에 법인에 대하여 선고할 수 있는 다양한 형벌이 규정되어 있다.

#### <법인에 대한 형벌>

1.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하여 법인이 설립되었거나 또는 중죄나 자연인이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구금형에 처하는 경죄에 대하여는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그 설립취지를 일탈한 때에는 법인의 해산
2. 직업 활동 또는 사회활동중 하나 또는 수개에 대한 영구적 또는 5년 이하의 직접 또는 간접적 수행금지
3. 5년 이하의 사법감시
4. 범죄행위에 제공된 기업의 영업소중 하나, 수개 또는 전부에 대한 영구적 또는 5년 이하의 폐쇄
5. 영구적 또는 5년 이하의 공계약 배제
6. 영구적 또는 5년 이하의 기업자금 공모금지
7. 5년 이하의 수표 발행금지 또는 지불카드 사용금지. 다만, 발행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수표 및 지급보증된 수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몰수
9. 언론출판물이나 전자적 방식의 모든 대중매체에 의한 판결의 게시나 공고
10. 범죄를 범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범죄의 대상이 되었던 동물의 몰수
11. 영구적 또는 5년 이하의 동물소지금지

(2) 독립모델이란, 기업의 직원인 개인의 위법행위를 요건으로 함이 없이, 기업의 조직구조상의 결함을 근거로 하여 기업에 독자적인 형사책임을 묻는 형식의 입법 방식을 통칭한다. 위에서 언급한 호주의 1995년 형법전이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

한다.

독립모델은 동일성원리의 한계로 인해 등장하였다. 동일성원리에 따르면 기업 내의 특정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조직구조나 시스템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범죄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기업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문제가 노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독립모델에서는 기업의 위험방지시스템의 결함을 기업처벌의 독자적인 근거로 삼는다. 기업이 안전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한 인적·조직적 측면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해서, 그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상 사고에 대하여 기업에 독자적인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 2) 기업살인법안이 채택한 방식

(1) 기업살인법 초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행 양벌규정 방식을 탈피하여 기업의 형사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가 이루어졌으나, 영국이나 호주의 입법례처럼 기업의 독자적인 형사책임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와 논의가 있었다. 현재 대법원은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이며, 학계에서도 법인의 독자적인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우세하다는 점, 법인 처벌이 모두 양벌규정 방식에 의하고 있는데 재해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에서만 독립모델의 입법방식을 취했을 때 입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마련한 기업살인법안에서는 기업을 완전한 행위주체로 상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기업살인법안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 행위자의 안전의무위반 내지 과실을 전제로 하여 기업을 처벌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점에서는 종속모델의 입장이다. 그러나 법안에서는 아래의 몇가지 점에서 현행 양벌규정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첫째, 우선 기본규정으로서 제5조 제1항에서는 기업의 감독과실책임을 규정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양벌규정방식을 차용하였다.

둘째, 그렇지만, 제5조 제2항에서는 현장에서의 안전의무 위반이 기업 경영진 등 책임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위반행위 권한을 부여하였거나 용인하였던 경우, 또는 기업의 조직문화로 볼 때 안전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기업 내부의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의 책임이 가중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독립모델에서 논의되는 기업의 독자적인 책임을 묻는 입법방식을 도입하였다.

(2) 기업에 대한 형사제재에 있어서는 벌금형을 기본으로 하되, 영업정지, 보호관

찰, 공계약배제, 자금공모금지 등의 제재를 부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위프랑스 입법례 참조). 이는 우리 형법이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벌금형을 무한정 높일 수 없다는 한계를 고려하여 기업 처벌의 예방효과를 담보하기 위함이다.

## 6. 공무원의 책임(제6조)

재해사고는 기업의 안전조치 결함·미흡에서 연유됨과 더불어 기업의 안전의무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는 국가 행정기관 공무원이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고의·과실에 재해발생의 원인의 한 축을 구성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기업의 안전조치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있는 공무원의 경우 대형 재해사고가 발생하여도 거의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업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감독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무원의 감독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도 기업처벌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법안에서는 공무원의 형사책임에 관하여, ①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의 준수여부의 감독책임 또는 인·허가 권한을 지닌 공무원에 대하여 ② 해당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사실이 있고 ③ 그 의무위반이 기업의 안전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였다(제6조 제1항). 그 형량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여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보다 형량을 가중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하위직 공무원에 한정하지 않고 안전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상급 공무원에 대해서도(해당 부처의 장관에 대해서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제6조 제2항).

## 7. 허가취소 등(제7조)

산업재해건 공중재해건 간에, 기업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는 예방효과를 담보하기에 미흡하다.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사회의 재벌의 지배구조 하에서 월급사장만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있으며, 기업에 대한 벌금형도 사업이익이 막대하다면 별다른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취지에서 기업살인법안에서는 기업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경우에, 기업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로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제재가 동시적으로 수반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다만,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행정상의 제재는 각 법률에 산재해 있는 바, 그 소관부처가 각기 상이하고 기본적으로 행정부처의 재량이 인정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기업살인법안에서는 법무부장관이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의 제재를 부과할 것을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우회적이지만, 행정기관의 행정제재의 재량을 원칙적으로 박탈하고 행정제재조치를 취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이다.

## 9. 처벌사실의 공표(제8조)

기업 및 경영책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있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처벌사실을 공표하도록 규정하였다. 입법례로는 영국의 기업살인법과 호주 수도준주의 Crimes(Industrial Manslaughter) Amendment Act 2003에서 법원이 기업에 대한 처벌에서 처벌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영국이나 호주의 입법방식은 법원의 공표명령 방식인데, 우리 특별법안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이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하였다.

## <법안>

### 산업재해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관한 기업 및 사업주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 자료집 인쇄본에 수록된 법안은 일부 편집상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근로자를 포함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산업안전보건범죄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관리의 미비 또는 안전관리 법령의 위반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범죄에 대하여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처벌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안전관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범죄”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 제1항, 제26조,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3항, 제33조 제1항, 제3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다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시설

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시설물

다.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장소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라.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 차량

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

사. 「선박안전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선박

아. 「항공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항공기

3. “위험물업소”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4. “다중이용시설 등”이라 함은 제2호의 다중이용시설 및 제3호의 위험물업소를 말한다.

5.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임대, 용역,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모든 수급인

6.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사업상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한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자

**제3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 ①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한다. 이하 같다), 법인 또는 기관 및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행하는 사업 또는 사업주나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 상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을 예방하거나 회피할 의무가 있다.

② 전항의 의무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와 행한 계약에 상관없이 부담하는 의무이다.

③ 시설이나 설비 등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이나 운영·관리를 위한 계약 등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설비 등의 운영·관리책임을 지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도 제1항의 의무를 지며, 이 경우에 해당시설이나 설비 등을 소유·운영하는 사업주와 법인 또는 기관의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범죄를 저지르거나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사망자가 1명 발생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업장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 내의 시설물, 장비, 차량, 화학물질의 결함이나 그 관리와 운용의 소홀로 인하여 제1항의 사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그러한 사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 또는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위무위반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면서 방치하거나 묵인·조장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형에 단기와 장기를 각각 1/2 가중하여 처벌한다.

**제5조(법인의 처벌)** ① 법인 또는 기관의 사업 및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그 법인 또는 기관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사람의 생명·안전 또는 보전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해당 법인 또는 기관에게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사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 또는 기관의 사업 및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그 법인 또는 기관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사람의 생명·안전 또는 보전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2인 이상의 사망을 야기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연 매출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다.

1.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전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또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였거나 위반행위를 용인한 경우

2. 법인 또는 기관 내부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전에 관한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거나 용인·격려·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전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조직문화를 창설하거나 유지하지 않은 경우

③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 대하여 제4조의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는 제2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1. 5년 이내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
2. 5년 이하의 보호관찰
3.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공계약의 배제
4.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자금의 공모금지

**제6조(공무원의 처벌)** ① 다음 각 호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의 의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의무위반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제4조 내지 제5조의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업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의 준수여부의 감독
  2. 사업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인·허가
- ② 제1항의 공무원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중앙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제7조(허가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허가·면허의 취소, 등록의 말소, 영업정지, 영업소폐쇄나 그 밖의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면허의 취소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의 경우 이 법에 따라 영업을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처벌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8조(처벌사실 등의 공표)** ① 법무부장관은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처벌의 결과 및 제7조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토론

### 형법적 관점에서 본 기업책임법(기업살인법)

-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 실제 사고를 통해본 처벌 실태 '마우나오션리조트 참사'를 중심으로

- 홍여진 (뉴스타파 기자)

### 노동자가 보는 기업살인법의 필요성

- 이상원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참사 유족이 보는 기업처벌의 필요성

- 윤석기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



## 형법적 관점에서 본 기업책임법(기업살인법)

최정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 오늘날 사회생활의 중심은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기업과 같은 조직에 있다. 거의 모든 개인은 조직에 속하여 활동하고, 조직은 나름대로의 작동방식과 문화를 가지고 자기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행위한다. 이러한 현실은 형법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되어서, 이제 문제는 전통적인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조직의 (대규모의) 범죄행위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되었다.

조직범죄 가운데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기업범죄이다. 기업이 현대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정치 등 대부분의 생활영역에서 우리는 기업의 영향력에 종속당하고, 기업은 사회의 구조적 작동방식과 내용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기업은 범죄행위에 관여하게 되고, 그 규모와 강도는 개인의 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러한 기업범죄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형법적 대책이 논의되었고, 우리나라도 이미 많은 양벌규정을 통해 기업을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기업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는 턱없이 부족한데, 그 이유는, 첫째, 많은 양벌규정이 기업에 대한 벌금형을 행위자인 개인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서 그 형량이 너무 낮다는 점이다. (특히, 기업범죄로 인한 막대한 이익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또 한 가지 문제되는 점은, 양벌규정의 구조가 기업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행위자의 범죄행위가 확정되도록 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즉, 개인의 범죄행위와는 별도로 기업만을 처벌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범죄는 그 특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또 특정된 경우에도 그 책임이 가볍게 고려될 수 밖에 없는 때가 많다. 그러므로, 이와는 관계없이 기업의 법적 책임을 무겁게 물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이런 점에서 새로운 법안이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 등의 단체와 그 책임자의 처벌을 무겁게 가중하고 있는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범죄의 범위가 사람의 사상결과가 발생한 안전사고로 한정된 것은 최근의 대형 인명사고로 인한 사회적 충격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우선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지만, 점차 기업범죄의 범위가 넓혀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문제는, 위에서 지적한 두 번째 점, 즉 개인 행위자의 범죄행위와 관계없이 기업과 같은 조직만을 독자적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이른바 ‘독립 모델’의 수용), 이 점에서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양벌규정의 구조를 동일하게 채택함으로써 적잖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물론,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해서 이를 부인하는 입장이 여전히 통설과 판례인 상황에서 기존의 종속모델을 갑자기 뛰어넘는 새로운 법규정을 주장하는데 대한 부담을 고려한 법안의 취지를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이 기업과 그 책임자에 대해 단순히 형량을 강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형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새로운 방식으로 물으려 하는 것이라면 이른바 ‘독립 모델’의 수용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토론자는 법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제5조**

② 제①항의 결과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을 10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2인 이상의 사망을 야기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연 매출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다.

1. 법인의 이사회 등 대표기관 또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행위자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의무를 위반할 권한을 부여하였거나 그러한 위반행위를 용인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도록 지시하거나 용인, 격려하는 법인문화가 존재하는 경우

③ 법인문화란 법인 내부에 일반적으로 또는 법인 내부의 특정부서에 존재하는 정책, 규칙, 행동방침, 관행 등을 말한다.

기업범죄의 처벌을 위해서는 종래 기업에는 없다고 여겨져 왔던 범죄의 주관적 요소를 (즉, 고의 또는 과실)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문제되어 왔고,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종속모델과 관련해서 전통적으로 대위책임이론과 동일성 이론이 주장되어 왔다. 여기에, 최근에는 독립모델에 따른 기업의 책임을 설명하기 위해 총합이

론이나 기업문화론과 같은 새로운 근거가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제5조를 위와 같이 정비한다면 제1항은 전통적인 대위책임을, 제2항의 제1호는 동일성 이론을, 그리고 제2호는 기업문화론을 기반으로 하여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3. 그 밖에 몇 가지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장소가 다중이용시설과 위험물업소로 반드시 제한되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물론, 이 정도의 범위로 제한하여도 대부분의 사고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굳이 장소적 제한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둘째, 기업의 처벌과 관련해서 ‘기업의 해산’은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 범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 성격 또한 아주 좋지 않은 것이라면, 개인에게는 사형에 해당하는 기업해산을 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상습적으로 같은 범죄가 반복되었을 때나 그러한 위험이 있을 때, 기업해산을 명할 수 있다는 제안도 있다.

셋째, 용어의 문제를 몇 군데 지적하고자 한다.

제4조 제2항에서는 “경영책임자”와 “경영 담당자”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다. 후자는 전자보다 더 넓은 범위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기업의 면책범위가 넓어지는 결과가 되는데, 이를 의도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용어를 통일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제5조 제1항은 법인의 처벌에 관한 조항이다. 따라서, 단서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라는 부분은 “법인이 …”로 바꾸는게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

(제5조가 수정되지 않는다면) 제5조 제1항과 제2항은 과실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다. 즉 1항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이고 2항은 “사람의 생명·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이다. 양자의 내용이 다른 것인지 의문이다. 범죄결과가 사람의 사상이므로, 사실상 이 두 과실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용어의 통일을 위해서나 또 이 법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낸다는 점에서도 제1항의 과실을 제2항과 같이 “사람의 생명·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한다. 이런 경우 제3조에서 규정한 의무규정이 종업원 등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하는 추가적인 문언이 필요한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 실제 사고를 통해본 처벌 실태 '마우나오션리조트 참사'를 중심으로

홍여진 / 뉴스타파 기자

### 1. 들어가며

작년 2월 17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의 천정이 붕괴되면서 순식간에 대학 신입생 등을 포함해 10명이 숨지고 194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이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각 단계에서 각자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관련자 13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 가운데 11명은 형량을 감형해달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4월 2일 항소심 재판부는 7명의 형량을 줄여줬다. 대표적으로 1심에서 금고 2년 4월의 유죄를 선고 받은 마우나오션리조트 김 모 본부장의 형량이 1년 6월로 줄었다. 20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마우나오션리조트 참사, 아직도 병상에는 참사의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희생자들이 있지만 관련자들의 책임의 무게는 시간이 흐르며 줄어들었다.

여기서 형벌의 무게를 논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대로 과연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말하고자 한다. 지금 법의 처벌이 참사의 되풀이를 막을 만큼의 수준이 되느냐는 것이다.

마우나오션리조트 참사와 관련한 책임자들을 추려보고 그들이 어떤 책임을 졌는지 취재해 본 결과 법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 외에, 너무나 많은 책임자들이, 그것도 핵심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속속 빠져나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정황은 마우나리조트참사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를 수집하면서 알게 되었다.

<마우나오션리조트 참사 처벌 현황 (공란은 항소하지 않거나 실형의 변화가 없는 사람)>

	직책	죄명	1심 선고	2심 선고
마우나 오션 리조트	사업본부 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설작업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	금고 2년 4월	금고 1년6월
	총 지배인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설작업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시설팀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설작업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	금고 1년 6월	금고 1년 6월
설 계 감리	공사설계 감리자	업무상 과실치사상 (설계·감리 부실)	금고 2년 6월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건축구 조 기 술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 대여 등)	금고 2년 6월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시 공 (원청) S 종합 건설	대표이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받음,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허 위 작성 등)	(무죄)	
	현장소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하도급업체 부실자 재 사용 방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건설업 등록증 대여받음)	징역 2년 4월	징역 1년 6월
시공 (하청) A개발	A개발 대 표	업무상 과실치사상 (지붕에 패널 부적 정 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무등 록 건설업)	징역 1년 6월	
시공 (하청) E강재	회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무등록자에게 재하도급)	금고 3년, 징역 3월	금고 1년 6월
	전무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실 자재 구매 지 시)	금고 2년	금고1년 6월
	영업부 상 무	업무상 과실치사상 (무리한 공기로 계 약 수주, 부실시공 방치)	금고 1년 6월 집행 유예 2년	
	자재부 과 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실 자재 구매 공 급)	금고 10월 집행유예	

	생산부 차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품질관리절차 미이행)	2년 금고 1년 6월	
C강재 재하도 급업자	시공업자	업무상 과실치사상(고강도 무수출 모르타르 미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무등록 시공)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 진짜 핵심은 빗겨간 마우나오션리조트 참사의 형벌

취재과정에서 계속 의문을 가졌던 부분은 코오롱 건설측과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판부도 언급했듯, 이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닌 건축물 인허가, 시공, 관리 등에서 총체적으로 부실이 드러난 인재였다. 바로 그 첫 단추인 건축물 신축 계획과 인허가를 담당했던 코오롱건설측과 담당공무원은 전혀 책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마우나오션리조트는 ‘코오롱’그룹의 계열사다. 그리고 마우나오션리조트 안에 신축된 체육관은 코오롱 그룹차원에서 결정된 건축이었다. 경찰이 코오롱건설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를 통해 코오롱건설 박 모 차장이 그룹 내 회의에 참석해 수시로 체육관 신축에 대해 보고하고 공사기간을 서둘렀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내부 보고자료를 보면 “2000명에 달하는 태권도대회 단체 투숙객을 받기 위해 공사를 서둘렀던 것 같다”고 상부에 전달했다.

이렇게 공사를 서두르다보니 경북도청에서 관광단지조성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 과정을 건너뛰고, 경주시청 담당 공무원을 통해 승인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변조하는 일까지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재판부가 지적한 조립식 건축공법, 즉 PEB공법으로 시공하게 된 시발점도 코오롱건설 측에서 공사기간 단축과 비용대비 효율성이 높은 건축물을 1차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그러한 요구가 있더라도 시공을 맡은 하청업체에서 그러한 요구에 응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하청업체 대표에게 가장 높은 금고 3년 3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원청-하청업체 구조상 하청업체에서 원청이 요구한 것 이상으로

시공한다는 것은 시간, 비용면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갑을관계가 형성돼 있는 원-하청 구조 속에서 원청의 무리한 공기단축 요구를 탓하지 않고 그 요구를 따른 하청업체에 최고 책임을 묻는다는 것도 아이러니 한 일일 것이다.

검찰은 사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마우나오션리조트 안 모 대표와 코오롱건설 박 모 차장에겐 죄를 묻지 않았으나, 단체투숙객 유치를 위해, 더 많은 이윤추구를 위해 그룹차원에서 서둘러 신축한 체육관에 대해 이들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은 뿌리는 덮어두고 표면위에 올라온 잡초만 제거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마우나오션리조트 대표가 만약 단체손님 유치를 미루더라도 건물을 더 튼튼하게 지어야 한다고, 제대로 승인절차를 거쳐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 건물을 무리하게 지었다는 점을 알고 폭설이 왔을 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과연 당시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취재 하는 내내 아쉽고 안타까움을 느꼈던 부분이다.

빠진 핵심책임자는 또 있다. 체육관 신축 관련 서류를 마우나오션리조트 측에서 위변조 할 수 있도록 내준 공무원. 이 공무원은 별건 수사 기소대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경주시청은 이 공무원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징계를 묻지 않은 것과 같은 '불문경고'를 하는 것에 그쳤다. 이 공무원의 직속상관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위조된 서류가 관광과, 건축과를 여러번 거치며 무리 없이 통과됐는데 인허가권을 가진 담당자들 누구도 징계 받지 않았다.

참사 당시 경주시청 최양식 시장은 직접 붕괴된 사고 현장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이며 당장이라도 관련자를 문책할 것처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주시청은 자체조사를 하지 않았다. 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도의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사고과정에 있었는지 그런 정도의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두 검찰수사로 같음하고 그나마도 법적 책임이 있던 공무원 1명도 징계위원회를 통해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징계수위를 낮췄다. 이는 경주시청이 관할 지역에서 벌어진 참사의 책임을 통감한다기 보다 제식구감씨기에 급급했던 것이 아니었는지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던 때는 법적인 처벌과 별개로 시청 내 자체적인 조사가 있

을 것처럼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더니 관심이 줄어들고 동시에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끝낸 공무원 징계. 당시 담당공무원이 마우나오션리조트 측이 서류를 위변조할 수 있도록 공문서를 내주지 않았다면, 그렇더라도 건축과에서 최종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면, 단 1명의 공무원이라도 이 과정의 문제점을 눈치 채고 제동을 걸었다면 2014년 2월 17일 그날의 참사는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너무나 크게 남는다.

### 3. 기업살인법 도입으로 참사 되풀이 막길 바라며

이런 가운데 기업살인법 도입이 추진된다는 소식은 취재기자로서도 참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법안이 도입된다면 참사 예방은 물론 원-하청업체 갑을 관계 구조도 어느 정도 해결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현재는 시공과정에서의 무리한 지시는 물론 참사의 책임까지 원청이 하청에게 떠넘기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마우나오션리조트 참사의 경우에는 사건 초기 이웅렬 코오롱 그룹이 일찍 현장에 달려와 고개를 숙이고,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6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신속히 지불하면서 큰 논란없이 마무리된 사건이다. 그렇게 언론의 관심에서도 사라져 갔다. 그러나 1년 후를 되돌아보니 그때의 반성과 달리 코오롱 측은 아직 치료중인 부상자들의 요구에 대해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부상자들은 언제 코오롱측의 치료 지원이 멈출지 몰라 불안한 상황이다.

코오롱 측의 최근 취재결과 사고 초기 모두 책임지겠다는 태도에서 조금씩 변화가 고 있다. 우선 사망자 보상금에 대해서, 법적처벌 수위에 따라 부담을 분배해야한다며 하청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한 상태다. 법원이 하청업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만큼, 코오롱은 왜 자신들만 부상자 치료를 전담해야하느냐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대기업으로서의 책임있는 모습은 점점 찾기 어렵다. 이 때문에 책임자 처벌과 향후 사상자들에 대한 보상 때문에라도 기업살인법이 도입돼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가려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여기선 마우나오션리조트 사례만 언급했지만, 2013년 1월 발생한 삼성 반도체 공장의 불산 누출사고도 비슷하다. 불산누출을 보고했던 하청업체 직원에게 주말까지만 기다리라며 삼성측에서 재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노동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큰 산재사고가 발생했지만 법원은 법원의 삼성전자와 전무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작업 지시 권한이 있었던 삼성 측의 실무자인 부장과 대리, 사원

등 3명이 벌금 3백만 원에서 7백만 원을 선고 받았을 뿐이다.

당시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했던 하청업체는 일감이 떨어져 사실상 폐업 상태가 됐다. 사고 당시 부상당한 노동자들은 다른 하청업체로 직장을 옮기거나 작업장을 떠났다. 이처럼 산재 사고에서도 피해가 발생하면 원정보다 하청이 더 큰 짐을 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기업살인법의 신속한 도입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기업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해 “죽는 사람만 서러운” 산재사고와 대형참사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기사>>

### 마우나리조트 참사 1년...공무원은 “책임 없음”

2014년 2월 17일 오후 9시 6분 경.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천정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모여있던 520여 명의 대학생 중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다쳤다. 검찰수사 결과 이 사고는 체육관 인허가 과정에서 시공, 안전관리까지 총체적 문제점이 집합된 인재로 드러났다.

당시 이 체육관을 인허가 해준 관할 관청인 경주시청은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다짐했다. 사고발생 1년 후, 과연 이 말은 지켜졌을까. 뉴스타파 취재결과 이 체육관을 허가한 관할 관청 공무원들은 단 1명도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14명의 인명사고를 낸 대형참사에 경주시청은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 “아무것도 몰랐다”는 공무원 정말 책임이 없는걸까.

붕괴된 마우나리조트 체육관은 위변조한 공문서로 탄생했다. 관광단지 특성상 리조트 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려면 경상북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신축을 서둘렀던 리조트측은 경상북도의 승인을 생략했다.

대신 경주시청 문화관광과 공무원으로부터 기존에 승인 받았던 리조트 조성계획서를 건네받아 마치 원래 체육시설이 계획서에 있던 것처럼 위조했다. 이 계획서의 ‘시설지구별 결정조서’에서 공란으로 돼 있던 체육공원 건축 연면적 란에 ‘(변경)1500㎡,증 1500㎡’이란 문구를 기재한 후 다시 끼워 넣은 것이다.

당시 이 공문서를 리조트측에 건네준 담당부서 과장은 “담당 공무원은 리조트 측을 믿고 서류를 건네준 것이고 위조한 것을 몰랐다. 담당과장, 계장들도 위변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리조트측은 위변조한 서류를 바탕으로 경주시청 건축과에 ‘건축허가’신청서를 냈다. 건축과도 리조트측이 제대로 승인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대로 건축허가를 내줬다. 경주시청 건축과 관계자는 “수백장 서류 가운데 한 장이 위변조 돼 끼어 넣어진 것을 공무원이 알 길은 없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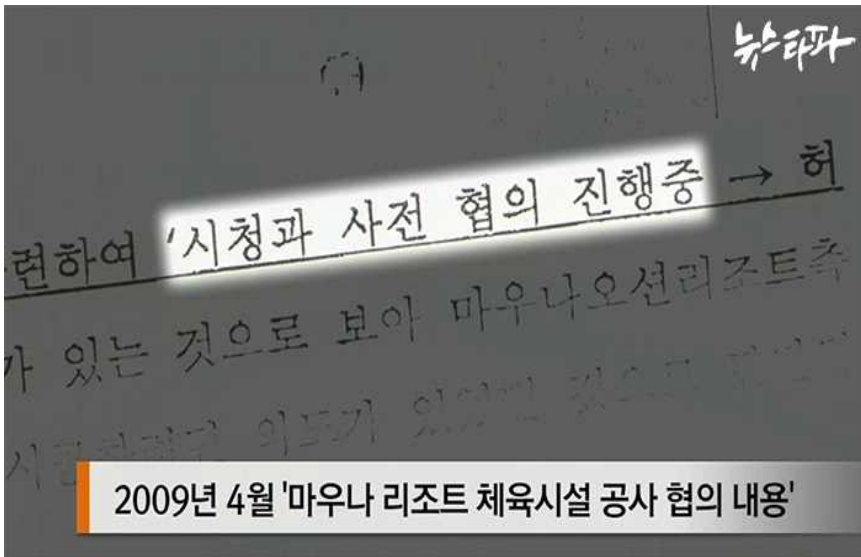
위변조 서류로 건축허가를 받은 리조트 측은 건물도 부실하게 지었지만 건축과는 무난하게 준공허가까지 내줬다. 여기서도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법상 준공 전에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장조사를 감리사 등에 대행하고 있다. 공무원은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준공허가를 해준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은 모두 “몰랐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피해갔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단 1명. 리조트 측에 공문서를 건넨 말단 공무원 1명만 견책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문경고’로 감경됐다. 불문경고는 신분상 불이익이 없어 사실상 징계를 면한 것과 다름없다.

결과적으로 불법, 부실한 체육관이 경주시청 관리하에 인허가를 받았지만 정작 경주시청 공무원들은 모두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해간 것이다.

“인허가 문제 시청과 사전 협의중” 공무원은 정말 몰랐을까.

그러나 뉴스타파가 입수한 경찰 내사문건을 보면 과연 경주시청이 리조트측의 불법을 정말로 몰랐을 지 의심되는 대목이 나온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건설에 참여한 코오롱 건설에서 ‘2009년 4월 ‘마우나리조트 체육시설 공사 회의내용’을 압수했다. 이 회의내용에는 “체육관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시청과 사전 협의 진행중’이라고 적혀있다.



코오롱 측이 서류를 위변조한 건 2009년 5월, 코오롱측은 이미 한 달 전부터 경주시청과 체육관 인허가와 관련한 논의를 했던 얘기다. 취재진은 경주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진짜로 위변조 사실을 몰랐는지 물었다. 담당 공무원은 “그때 당시의 일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렇게 책임을 피해간 경주시청은 참사 이후 한달간 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한 이후 현재는 사고와 관련해 손을 놓고 있다. 당시 사고로 중상을 입고 1년 째 병상에 누워있는 장연우(부산외대, 미얀마어과 1)씨 어머니 이정연 씨는 “ 피해자 가족들은 아직도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정부는 사고나고 한 달 정도만 반짝 관심을 기울이더니 지금은 연락 한 번 해오는 곳이 없다”고 토로했다.

관련기사 2>

## 마우나 참사 최고 책임자는 ‘하청업체’?

지난해 2월 200여 명의 대학생이 죽거나 다친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참사와 관련해 가장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은 사람은 하청업체 대표였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다. 붕괴된 체육관 건축을 지휘한 코오롱건설 관계자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리조트 대표 등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붕괴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체육관 공사 시작부터 리조트의 운영, 안전 관리에까지 원청 코오롱 측의 불법과 부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 1.“검증할 시간이 전혀 없었음”

코오롱은 체육관 공사를 서둘렀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마우나리조트 참사 경찰 내사 문건에서는 코오롱이 공사를 얼마나 서둘렀는지 보여주는 대목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 2009년 4월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관련 업무진행 사항’

“촉박한 시일로 인해 PEB는 기존 견적가 활용, 설계작업에 투입”

\*PEB공법 : 조립식 철골 구조 시스템

체육관 착공에 들어가기 전인 2009년 4월, 코오롱건설 박 모 차장은 공사기간이 촉박해 PEB공법, 즉 조립식 건축물로 설계하겠다고 보고했다.

#### 2009년 4월 ‘마우나리조트 체육시설 공사 회의내용’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시청과 사전 협의 진행중’-허가전 선착공 가능성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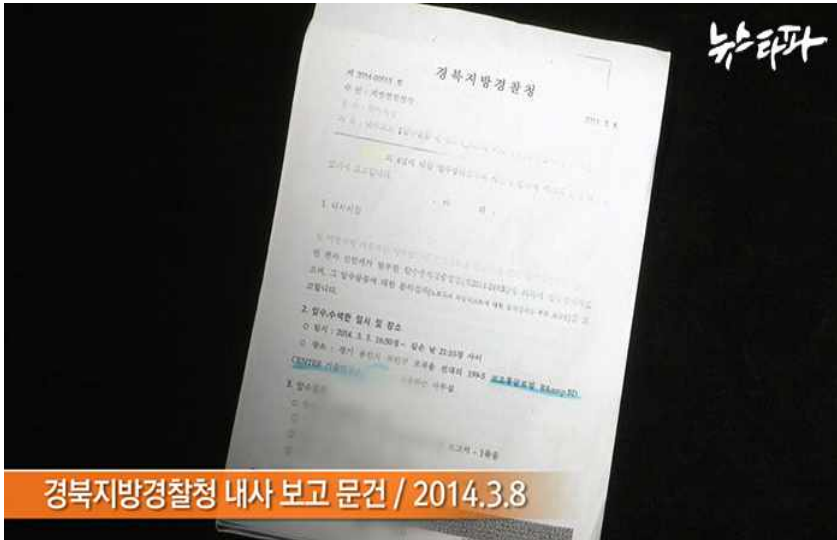
경주시와 사전에 체육관 허가를 협의한다면서도 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착공하는 문제까지 논의했다. 실제로 코오롱건설 측은 이 회의 내용대로 건축 허가를 받기 전 체육관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 2009년 5월 ‘마우나리조트 출장보고서’

“긴급한 업무진행으로 인한 검증절차 누락, 최종 설계도면 및 내역 접수당일 바로 현설을 실시. 도면 내용이나 내역에 대해 검증할 시간이 전혀 없었음.”

\*현설:공사현장으로 입찰업체 불러 하는 현장설명회

이후에는 공사가 긴급해 검증절차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나온다.



## 2.코오롱이 체육관 건축을 서두른 이유는?

마우나리조트의 체육관이 최종적으로 준공 허가를 받은 건 2009년 9월이다. 그런데 철골 하청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공사완료 시점이 그보다 두 달 앞선 7월 20일로 돼 있다.

경찰 내사 기록을 보면, 리조트 측은 준공도 되기 이전인 2009년 7월, 2000명 이상의 선수들이 참여하는 대통령기 전국태권도대회 합숙훈련을 유치한 정황이 나온다. 경찰은 리조트 측이 “태권도대회 훈련 유치를 위해 위력에 이를 정도로 하청업체를 독촉하며 공사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쉽게 말하면 단체손님 유치를 위해 공사를 서둘렀다는 겁니다. 체육관 철골 공사를 담당했던 하청업체 간부는 “코오롱 측이 처음부터 ‘급하다, 언제까지 해야 된다, 최저금액으로 안 무너질 만큼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심판진 70여명, 감독 및 코치 등 스텝, 보호자, 응원단 등을 포함하면 약 5,0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대회였고, 무엇보다 현수막에 기재된 학교들은 모두 당시 대회에 참가한 단체와 일치한다는 진술입니다.

- 이로 볼 때 2009. 9. 1.자 준공사진에 촬영된 현수막에 기재된 단체는 모두 2009. 7. 20. 태권도 대회에 참가한 선수단으로 그들이 대회 기간 동안 리조트에 투숙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리조트 측에서는 태권도 대회 참가 선수단을 유치하기 위해 체육관 신축 기획 때부터 완공 일을 7. 20.에 맞추어 공기를 단축하려 하였고, 그 사이 건축허가 과정 등에 시일이 소요되자 시공사 측에

이에 대해 코오롱은 행사를 개최할 계획은 있었지만 실제로 준공 이전에 체육관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 3.체육관에 대학생 천 명이 들어갈 수 있었나

마우나리조트 측은 준공 이후에는 용도에 맞지 않게 건물을 불법 사용했다. 소방법상 262명만 들어가야 하는 체육관을 지어 놓고 500명, 1000명씩 수용하는 문화, 집회시설로 사용했다.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 집회시설은 체육시설보다 안전기준이 엄격하다. 경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리조트 측은 부산외대 행사를 대행한 이벤트회사에 최대 2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실제로 붕괴 사고 당일 천 명에 이르는 대학생들이 체육관에 모여 공연을 관람했다. 이 체육관이 집회시설로 사용될지는 건물을 지은 하청 업체조차도 몰랐다고 말했다. 하청업체 간부는 “코오롱 측이 여기는 체육관이라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비만 안 새면 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 4. 지붕 제설 지시는 왜 없었나

마우나 참사 일주일 전, 경주에서 가까운 울산에서는 공장 건물 2곳이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해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시점부터 리조트 직원들은 사장에게 제설작업과 관련해 수시로 문자로 보고했다. 사장은 이에 대해 특별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디다.

리조트 측은 사고 전날에는 코오롱 직원 280명을 지원받아 골프장과 도로의 제설

작업을 하면서도 학생들이 대규모로 수용될 예정인 체육관 지붕은 치우지 않았다. 체육관 지붕 위에는 계속 눈이 쌓였고, 결국 천정은 무너졌다.

## 5. 누가 책임졌나

체육관 공사는 졸속으로 진행됐고, 지어진 체육관 운영과 관리도 불법과 부실 투성이었다. 하지만 공사를 지휘했던 코오롱 건설 관계자와 리조트 운영을 책임지는 리조트 대표는 사고와 관련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붕괴 원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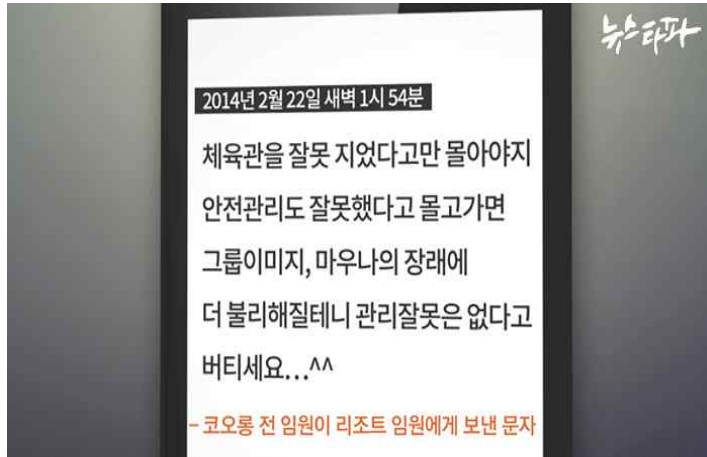
가장 높은 처벌인 금고 3년 3개월을 선고 받은 사람은 하청업체 대표였다.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처벌 받은 13명 가운데 10명은 하청업체와 건축사 등이고, 대표를 제외한 리조트 임직원은 3명이다.

코오롱 측은 또 피해자 가족들과 보상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법원에서 감형을 받았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결과, 코오롱은 지불한 보상금 가운데 20억 원을 하청업체에 가압류하고, 하청업체 직원과 건축사 등 개인 10명에게도 100만원씩 구상권을 청구했다. (사건 초기 코오롱 측이 사망자 가족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60억 원이다.) 이에 대해 코오롱 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 6. “책임지지 않으면 사고는 재발된다”

지난해 2월 사고 직후 이용렬 코오롱 회장은 현장에 내려가 직접 사과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보상도 순조롭게 이뤄졌다.

뉴스타파는 코오롱그룹의 전 임원이 기소된 직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입수했다. 관리 책임은 없다고 버티고 하청업체에 책임을 미루라는 내용이다.



마우나리조트 사고에서 중상을 입고 아직도 병원에 있는 장연우 양의 어머니 이정연 씨는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다.

“작년에도 (리조트) 사고 나고 세월호 사건부터 시작해서 테크노벨리 계속 사고 났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계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진정성 있게 뉘우치고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게끔 하지 않으면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단 보장이 없잖아요.”

지난해 5월 9명이 숨지고 118명이 부상을 당한 고양터미널 화재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원청인 CJ에는 책임을 묻지 않고 하청업체 관계자에게만 실형을 선고했다.

## 노동자가 보는 기업살인법의 필요성

이상원 /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건설업 산재다발 문제 기업살인법 제정이 필요

2014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의하면 건설업 업무상 사고사망자 수는 감소했으나 업무상 사고 재해자 수는 증가하였음. 각 산업종사 노동자 수(제조업 노동자가 400만명, 건설업 노동자가 180만명으로 추산)를 고려하면 건설업의 산업재해가 매우 심각한 실정임. 또한 건설업 노동자 비율이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에서 7%에 불과한 상황에서 업무상 사고 재해자 비율이 27.6% 업무상 사고 사망자 비율이 43.8%를 차지하는 점에서 건설노동자는 사실상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에서 일하는 있는 실정임.

	건설업	제조업	전체
사고 재해자 수(명)	22,935	25,579	83,231
비율(%)	27.6	30.7	
전년 대비	0.19	-2.47	-1.15
사고 사망자 수(명)	434	260	992
비율(%)	43.8	26.2	
전년 대비	-15.89	-8.45	-8.99

이처럼 건설노동자들이 하루 2명씩 죽고 있는 것은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발주처/원청사의 무리한 공기단축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임. 또한 건설업체들은 건설현장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활동에서 노동자의 참여를 봉쇄하고 노예처럼 지시와 통제만 하고 있기 때문임. 그렇지만 건설현장의 산재다발 문제는 무엇보다 정부가 산재사망사고 책임자인 원청사업주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있기 때문임.

## 원청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남발

-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사망 사고 40명 건설노동자 사망.. 사업주 벌금 2,000만원 노동자 1명 사망당 50만원 풀임.
- 2011년 이마트 4명 사망 사고 이마트 벌금 100만원. 최근 산재처리 관련 노동부와 이마트 유착관계 밝혀짐.
- 최근 3년간 (2010.1.1.- 2012.7.3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송치사건 전체 8,737건중 중대재해는 2,290건 (26.2%)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23조, 24조 위반 노동자 사망시에는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이하 벌금.
- 그러나, 중대재해 2,290건중 벌금형 57.2%, 혐의 없음 13.8%, 기소유예 11.1%, 공소권 없음 59건, 각하, 선고유예 1.8%.
- 징역은 62건으로 2.7%로 매우 낮은 수치. 실형은 거의 없음.

일 자	사고물질	지역 및 회사	인명피해
2012. 9. 27	불화수소	구미, 휴브글러블	사망5명, 부상18명
2013. 1. 15	불화수소	청주, (주)지디	부상1명
2013. 1. 27	불화수소	화성, 삼성전자	사망1명, 부상4명
2013. 2. 6	염화수소	청주, 00호텔	부상2명
2013. 3. 14	가스폭팔	여수, 대림산업 폭팔사고	사망6명, 부상11명
2013. 3. 22	염소가스	청주, SK하이닉스	부상4명
2013. 4. 5	염화수소	안산, 00전자부품회사	부상2명, 대피20명
2013. 4. 15	염소가스	울산, 삼성정밀화학	부상6명
2013. 5. 2	불화수소	화성, 삼성전자	부상3명
2013. 5. 10	아르곤가스	당진, 현대제철 아르곤질식	사망5명
2013. 5. 18	불화수소	시흥, 트럭전복	70여명 긴급대피
2013. 11. 26	고로가스	당진, 현대제철	사망1명, 부상8명
2013. 12. 2	고로가스	당진, 현대제철 고로가스질식	사망1명
2014. 1. 31	원유, 납사	여수, GS칼텍스 기름유출	부상1명, 진료340여명
2014. 2. 11	암모니아	남양주, 빙그레 가스누출	사망1명, 부상2명
2014. 3. 27	아산화탄소	수원, 삼성전자 가스누출	사망1명
2014. 4. 4	원유	울산, 에쓰오일 탱크누출	
2014. 7. 31	암모니아	여수, 해양조선소 가스누출	사망1명, 진료21명
2014. 8. 22	염소산나트륨	인천, 도금공장 유출	진료22명
2014. 9. 13	염산	여수, 탱크로리 전도누출	사망1명, 진료6명
2014. 12. 10	염소가스	대구, 영남금속	부상50명
2015. 1. 12	질소	파주, LG디스플레이	사망2명, 부상4명
2015. 3. 17	산화에틸렌	여수, 아이씨케미칼	부상3명

전체 송치 사건	중대 재해 사건	중대재해사건 처분결과							
		계	벌금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징역	공소 권 없음	기타 (각하, 선고유예 등)	처분 종
8,737	2,290	2,290	1,311	317	255	62	59	41	245
비율	26.2%	26.2%	57.2%	13.8%	11.1%	2.7%	2.6%	1.8%	10.7%

- 2010년부터 발생한 3인이상 사상한 중대재해 19건의 경우에도 구속은 단 2건 (집행유예) 이고, 나머지는 100만원 - 5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나 혐의 없음으로 처리.
- 원청인 대기업인 경우에는 최소한의 처벌도 피해감. GS 건설은 각하 처리, 롯데건설과 현대산업개발 '혐의 없음' 처리

원청명	하청업체	재해인원 (명)	재해원인	피의자	사법처리현황
GS건설(주)		사망2	무너짐, 내려앉음 (붕괴, 도괴)	성명불상	각하
트레인코리아 (주) *이마트내사고	오륜이엔 지	사망 4	유해물질 접촉.중독 .질식 (사고성)	본부장 사업주 법인	벌금100만원 기소유예 벌금100만원
삼화건설(주)		사망4 부상4	붕괴	현장소장 법인	벌금50만원
롯데건설(주)	(주)두리건 설	사망1 부상6	무너짐, 내려앉음 (붕괴, 도괴)	현장소장 (하청) 하청업체 (법인) 현장소장 (원청) 원청업체 (법인) 원청업체	벌금1,000만원 벌금1,000만원 혐의없음 혐의없음 혐의없음

				(법인) 현장소장 (하청) 하청업체 (법인) 현장소장 (원청) 원청업체 (법인)	협의없음
현대산업개발(주)	강남건설(주)	사망3	추락	하청업체 (대표) 하청업체 (대표) 현장소장 (원청) 원청업체 (법인)	집행유예 벌금300만원 벌금1,000만원 벌금500만원
성벽종합건설	아진유리	사망4	추락	현장소장 (하청) 법인(하청) 현장소장 (원청) 법인(원청) 법인(원청)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기소유예
대교종합건설(주)	금강토건 주식회사	사망1 부상3	붕괴	현장대리인 (하청) 하청업체 (법인) 현장소장 (원청) 원청업체 (법인)	불구속구공판 구약식 불구속구공판 구약식

□ 여수 대림산업 폭발 산재사망사고 경과

- 2013년 3월 14일(목) 20시 51분경 여수 국가산단 대림산업공장 사일로에 맨홀 설치작업 중 저장탑 내부의 잔류가스를 없애기 위한 가스 청소(퍼지작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 조합원 4명과 전남동부

경남서부지부 조합원 2명 등 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 검찰 대림공장장 김씨와 유한기술 현장소장 김씨 등 5명의 구속 기소자에 대해 금고 2년 6월 구형, 대림직원 등 6명 불구속 기소자에 대해 금고 1년 6월을 구형

- 2013년 9월 30일 광주지법 1심 대림산업 폭발사고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5명 중 대림산업 공장장 김모, 대림 하청업체 유한기술 현장소장 김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음. 김모 씨 등 나머지 3명의 대림측 직원들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음. 또한 불구속 기소된 6명 중 정모 씨 등 대림 직원 5명에게는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1명인 유한기술 안전과장 김모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음. 또한 재판부는 대림산업과 유한기술 법인에 대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음. **재판부가 대림산업 폭발사고 책임자들을 사건발생 6개월여 만에 모두 석방한 사유로 오랫동안 석유화학 발전에 봉사한 점을 참작했다**고 하였음.

- 2014년 2월 19일 광주지법 항소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고 당시 대림산업 여수공장장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음.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실무자 3명 가운데 2명에게는 금고 1년을, 나머지 1명에게는 금고 8월을 선고하였으며, 이들은 법정형에 징역형이 없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만 기소돼 금고형을 선고받았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씨 등 4명은 항소심 재판 뒤 모두 법정구속되었음. 재판부는 하도급업체인 유한기술의 현장소장(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안전관리자(벌금 1천만원), 대림산업과 유한기술 법인(각각 벌금 3천만원)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음.

-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근 10년간 국내 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한 사고 중 피해가 가장 큰 사고였다'며 '피해자와 유족이 안고 갈 고통과 충격은 금전적인 보상으로 완전히 치유될 수 없다'고 밝혔음. 재판부는 또 '사일로 안쪽 벽에 붙어 있던 인화성 물질인 플러프를 물청소 등으로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화기.비계작업을 동시에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안전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음. 더욱이 2012년 6월에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재판부는 질책했음.

## 기업살인법 제정하여 산재사망책임자 원청사업주 구속이 필요

2008년 영국의 한 건설노동자가 웅덩이 현장에 들어갔다가 사망하였음. 이 산재사망에 대해 영국은 안전수칙 위반으로 기업에 6억9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였음.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현장에서 건설노동자 40명이 화재사고로 폐죽음을 당했음. 범위반 사실이 적발 되었으나, 한국은 사업주에게 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였음. 건설노동자 1명 산재사망에 한국은 5십만원, 영국은 6억 9천만원을 벌금을 부과하였음. 그 결과 한국은 업무상 사고 사망 만인율 9.6인데 반면 영국은 0.7 한국은 영국보다 14배의 노동자가 사고성 재해로 죽어나가고 있음.

지난 5년간 현대건설 등 100대 건설기업의 건설현장에서 약 1천명의 건설노동자가 죽어나가는 동안 원청사업주가 구속된 적이 한 번도 없음. 이게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현실임.

## 참사 유족이 보는 기업처벌의 필요성

윤석기 /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

## 참고 자료

세월호 참사 1주기  
-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10년

한국의 역대 대형사고 이후 책임자  
처벌

외국의 기업살인법안  
- 호주, 캐나다, 영국



세월호 참사 1주기 -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10년

<지난 10년 가장 위험한 50대 기업 발표> 2015. 4. 13 발표자료

주최 :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산재사망대책마련공동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 / 매일노동뉴스 / 민주노총 / 한국노총)

- 우리는 왜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였나
-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한국에서 산재사망을 포함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재난사고의 심각성과 솜방망이 처벌이 제기 됨
-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10주년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지난 10년간 산재사망과 재난사고'를 구분하여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한 기업을 선정
- 2015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은 “10년간 산재사망 50대기업” “지난 10년간 최악의 산재사망, 재난사고 기업” “2015년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을 각각 선정 발표함.
- 반복적 산재사망, 재난사고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강화 입법을 촉구함.

1. 지난 10년간 산재사망 50대기업 선정

- 대상 년도 : 2005년- 2014년
- 근거자료 : 노동부 산재보험 통계, 중대재해 보고 자료, 공무원연금, 해양경찰청 자료
- 산재보험 통계는 산재승인일 기준. 하청 산재는 원청으로 합산

2. 2015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 노동부 중대재해 발생보고 전년도 통계를 기초로 하청 산재를 원청으로 합산하여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발표, 산재사망의 구조적 문제를 밝히기 위해 특별상 선정 발표. 2011년부터는 건설업과 제조업을 구분 선정하였음

지난 10년 50대 살인기업

순위	기업	사망자 (명)	순위	기업	사망자(명)
1	현대건설	110	27	한화건설	27
2	대우건설	102	28	삼성중공업	27
3	GS 건설	101	29	금호산업건설	26
4	우정사업본부	75	29	삼성엔지니어링	28
5	현대중공업	74	31	한신공영	25
6	삼성물산(주)건설부문	69	32	LG전자	25
7	대림산업	62	33	기아자동차	23
8	롯데건설	61	33	한전KPS	23
9	포스코건설/건설일괄	59	35	코오롱글로벌	22
10	사조산업(오룡호)	53	36	삼성전자	21
11	SK 건설	53	36	극동건설	21
12	원진레이온	50	38	KCC 건설	21
13	한국철도공사	47	39	계룡건설산업	20
14	현대산업개발	45	40	벽산건설	20
15	현대자동차	45	41	제일E&S	20
16	두산건설	44	42	태영건설	20
17	대우조선해양	39	43	쌍용건설	19
18	동부건설	38	43	한라건설	19
19	유성엔지니어링	37	45	KT	18
20	현대제철	37	45	한국타이어	18
21	포스코	36	45	교촌치킨	18
22	경남기업	35	45	LG 화학	18
23	CJ 대한통운	33	49	고려개발	16
24	한진중공업건설부문	32	49	삼부토건	16
25	서희건설	28	49	한라	16
26	두산중공업	28	49	한양	16

<지난 10년 가장 위험한 50대 기업 발표> 2015. 4. 13 발표자료

##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결과

<지난 10년 가장 위험한 50대 기업 발표> 2015. 4. 13 발표자료

### 2006년

사업장 명	사망자수 (명)	발생건수 (건)
GS건설(주)	9	1
현대중공업(주)	4	4
시온글러브	4	1
현대자동차(주)울산공장	3	3
두산중공업(주)	3	3
포스코	3	3
나눔건설(주)	3	1

### 2007년

기업 이름	사망자수	사망재해건수
현 대 건 설	10	8
대 립 산 업 SK 건 설	8	8
삼 성 물 산 GS 건 설	7	7
롯데건설 롯데산업개발 현대중공업	6	6

### 2008년

#### 한국타이어

2006년 5월부터 2007년까지 1년 6개월여의 기간 동안 15명의 한국타이어 노동자가 사망함

이 중 7명의 노동자는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는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이들의 사망은 작업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음

2009년

총사망자수	원청기업명	하청기업명	사망자수
40명	(주)코리아2000-건축 (주)유성엔지니어링-설비	신화이엔지	40
8명	(주)송원오엔디	-	8
6명	현대건설(주)	대보실업(주)	1
		(주)기창건설	1
		삼우기공(주)	1
		태아건설(주)	1
		미노테크	1
		-	1

2010년

순위	기업명	사망 노동자 수
1위	GS 건설	14명
2위	대림산업	9명
3위	경남기업	8명
	서희건설	
	쌍용건설	
	현대산업개발	
제조업부문 1위	대우조선해양	6명

2011년

부문	건설업		제조업	
	기업명	사망 수	기업명	사망 수
1위	대우 건설	13명	대우조선해양	5명
2위	현대 건설(주)	11명	현대제철	5명
3위	GS 건설	9명	삼호조선	4명
4위	포스코 건설	8	동국제강	4명
5위	대림 건설	7명		

2012년

부문	건설업		부문	제조업	
순위	기업명	사망자 수	순위	기업명	사망자 수
1위	현대 건설 (주)	10명	1위	STX조선해양	5명
2위	GS 건설 (주)	7명	1위	TK케미컬	5명
2위	롯데 건설 (주)	7명	3위	트레인코리아(이마트 )	4명
4위	SK 건설 (주)	6명	3위	세진중공업	4명
4위	(주) 대우 건설	6명	5위	현대제철(주)	3명
			5위	임천공업(주)	3명

2013년

부문	건설업		제조업	
순위	기업명	사망자 수	기업명	사망자 수
1위	한라건설	14명	LG화학	8명
2위	GS건설	8명	휴브글로벌	5명
3위	포스코건설	7명	아미코트	4명
4위	태영건설	6명	포스코	3명
4위	대우건설	6명		

2014년

순위	기업명	사망자수	비고
1	현대제철	10	원자료에는 현대그린파워, 현대엠코, 현대건설, 현대중합설계 등이 원청으로 기록되어 있는 4건의 산재사례를 현대제철로 집계함. 이 사례 모두 시공사는 계열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현대제철 당진공장내 구조물 시공 중 발생한 산재사례이기 때문임.
	대우건설	10	
3	대림산업	9	2013.3.14 여수산단 폭발사고로 6명이 사망한 사례 포함
4	천호건설, 중흥건설, 신한건설	7	2013.7.15 서울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공사시 발생한 수몰사고(노량진 수몰 사고)
5	롯데건설	6	
6	현대건설	5	
	서희건설	5	
	포스코건설	5	2013.12.16 포항공장 산소 및 질소 탱크 질식으로 2명이 사망한 사례 포함
	한신공영	5	
	SK건설	5	2013.12.19 부산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시설붕괴사고로 4명이 사망한 사례 포함

2015

1) 건설업

1	현대건설	10명	12월26일 신 고리원전 3호기 질소가스 질식사 사건 등
2	대우건설	9명	
3	롯데건설	5명	
4	한전KPS. 두산건설. GS건설	4명	

2) 제조업

1	현대중공업	8명	3/26일 선일엔지니어링 (주)현대 중공업사내하청 사고 등
2	포스코	4명	
	한국철도공사	4명	
3	각 2명 현대제철. 현대삼호중공업(주), (주)SFC, YD 텍스타일주식회사. 웅진부천 산림조합, 사조산업(주), 두산건설(주)창원1공장, 대우조선해양(주), 대선조선(주)다대공장, 대명산전, 고려엔지니어링주식회사, SPP(주), (주) 미래테크, (주)디엔에프		

<지난 10년 가장 위험한 50대 기업 발표> 2015. 4. 13 발표자료

[자료 2-1] 한국의 역대 대형사고 이후 책임자 처벌

한국에서 대형사고 이후 책임자 처벌은 대부분 업무상 과실치사죄<sup>28)</sup>를 적용하여 이루어졌다. 세월호 선장 등에 적용이 검토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보다 그 형량이 훨씬 높다.<sup>29)</sup>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삼풍백화점 당시 검토되었으나 적용되지 않았고, 유일하게 1970년 남영호 때 적용되었으나 무죄판결 되었다.

1. 서해 훼리호 침몰 (1993년 10월 10일, 292명 사망)

서해 훼리호는 과적·과승한 채로 악천후에 출항했다 돌풍을 만나 운항을 포기하고 회항하려는 순간 복원력을 잃고 침몰하였다. 선박부실보다는 과적·과승 및 악천후가 침몰의 핵심 원인으로 파악된다. 221명이 정원이었던 배에 362명의 승객을 태우게 된 원인은 위도-부안을 운항하는 선박이 승객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인데, 사고 몇 달 전 운항 횟수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묵살되었다. 영세한 선박회사였기 때문에 국가 보조금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것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책임이 일부 인정되었으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주체는 명확하지 않았다. 군산해운항만청 계장과 ㈜서해훼리 상무가 선박검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책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 성수대교 붕괴 (1994년 10월 21일, 32명 사망)

성수대교의 붕괴 원인으로는 내부 결함과 점검 부실이 꼽힌다.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였던 동아건설이, 점검 부실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가 져야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서울시는 사고 직전 교량 이음새가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아무런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아건설에서는 현장소장, 서울시에서는 동부건설사업소장이 기소되어 중간 책임자까지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들은 각각

28) 형법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9) 형법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금고 2년, 금고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외에 서울시 공사감독관 등 공무원과 동아건설 간부 14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3. 삼풍백화점 붕괴 (1995년 6월 29일, 502명 사망)

삼풍백화점 붕괴의 원인은 총체적 부실시공이었다. 또한 경영진은 붕괴 조짐을 이미 알고있었음에도 백화점 영업 중단을 하지 않고 자신들만 붕괴 직전에 빠져나왔다. 기소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형량이 너무 낮다는 점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도 검토되었다. 그러나 경영진이 건물 전체가 붕괴될 것을 사전에 예상했거나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 때문에 결국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되었다. 오너인 고(故) 이준 전 회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되어 1심에서는 징역 10년 6월, 2심에서 징역 7년 6월, 차남인 이한상(61) 전 사장은 7년 징역형이 확정되어 복역, 이후 만기출소하였다. 이외에도 보상재원 마련을 위해 이준 회장 일가의 재산 500여 억 원을 모두 압류하였고 삼풍 그룹은 해체된다.

#### 삼풍백화점 이준 회장 처벌 사례

##### □ 기소과정

(이종상, <살인죄에 있어서 미필적 고의 - 삼풍백화점 붕괴사건과 관련하여> 참고)

1995. 6. 29.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발생

1995. 7. 2 삼풍백화점 회장 이준, 사장 이한상, 시설관리이사 이형길, 붕괴 당일 백화점의 요청에 의하여 백화점을 점검한 건축구조전문가 이학수 등 4명 구속

1995. 7. 25. 서울지방법원에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됨.

- 기소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경우 형량이 지나치게 낮고, 붕괴 위험을 알고서도 백화점 영업 강행 결과 고객들이 다수 사망했음에도 경영진들이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언론을 중심으로 피고인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한 호응을 얻음.

- 이에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 미필적 고의의 개념에 대해 한국에서 통용되는 학설은 '용인설'로,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

음을 물론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을 때 성립된다고 봄.

- 따라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첫째, 객관적인 붕괴위험의 존재, 둘째, 붕괴위험에 대한 인식, 셋째, 붕괴결과에 대한 인용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했음.

(1) 객관적인 붕괴위험의 존재 - 실제 존재하였음.

(2) 붕괴위험에 대한 인식 - (부합하는 증거) □균열현장을 각기 수차례 확인하였거나 상세히 보고받음. □균열상황의 진행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음. □냉방기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4-5층 일부 직원 및 고객을 대피시킴. □이준 회장은 건축분야의 오랜 경험이 있는 자이고 이학수는 구조설계사로서 무량판구조의 취약성과 건물의 부실시공에 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붕괴과정에서 연쇄붕괴로 이어질 위험을 알고 있었을 것인 점. (배치되는 증거) □이학수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물었으나 당장 붕괴가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고객을 대피시키지 않았다 주장 □회장, 사장, 시설이사 비록 붕괴조짐이 없는 곳이기는 하지만 붕괴 때까지 백화점 안에 남아있었고, 붕괴 후 현장 이탈하지 않아 현장에서 검거됨. □4-5층 균열부분 주위만을 일부 대피시킨 것으로 보아 건물 전체의 붕괴를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3) 붕괴결과에 대한 용인 - (부합하는 증거) □사장 이한상은 평소 기둥을 잘라서라도 매장을 늘리자고 하는 등 매출이익에 집착. □이학수는 구조전문가로서 무량판공법의 취약점(전단파괴로 인한 전면붕괴)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는 점. □백화점의 특성상 붕괴위험으로 고객을 대피시킨다는 것은 장차 치명적인 매출격감을 가져오리라는 사정 등. (배치되는 증거) □붕괴조짐이 있었던 곳은 아니지만 백화점이 붕괴될 때까지 백화점 안에 이준, 이한상, 이영길이 남아 있었던 사정. □백화점 건물 자체 및 상품의 손실, 인명 살상으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청구 등 붕괴로 인한 손해가 당일 영업이익보다 훨씬 더 크리라는 사정 등

- 검토끝에 검찰은 살인죄 기소는 어렵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 검토회의 중에도 상당수 검사들이 여론의 질책을 감수할 필요가 없으므로 과감히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하고 법리적인 판단은 법원에 맡기자는 의견 피력. 하지만 검찰이 여론에 휘말려 공소유지가 불가능한 기소를 한다는 것은 그 본연의 자세를 잃는 것이라는 것이 당시 검사회의 결론.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이 금고 5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뇌물공여, 회상공금 횡령부분 등 다른 범죄사실을 발견하여 추가 기소함으로써 해결.

□ 재판과정

- 검찰은 ▲업무상 횡령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뇌물공여의 4가지 혐의로 기소. 구형량 20년.

- 서울중앙지법(1심) : 4가지 혐의 모두 인정, 재판부 징역 10년 6개월 선고  
'부실 공사 풍조를 불식하기 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풍사고는 안전수칙을 무시한 설계와 시공, 관련 공무원들의 부정 등, 모든 요인이 결합돼 빚어낸 참사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이처럼 이윤만을 추구해 수많은 희생자를 내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관련자 전원에게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95년 12월 27일)

- 서울고법(2심) : 횡령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징역 7년 6개월로 감형 (업무상 과실치사죄 최고형인 5년, 뇌물공여죄 적용으로 경합법 가중(1/2 가중)으로 2년 6개월)

- 대법원 : 2심 결과 유지

#### 4.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1999년 6월30일, 23명 사망)

씨랜드 청소년수련원은 컨테이너를 2층으로 쌓아서 만들어 화재에 취약하고, 소방 시설도 전혀 갖춰지지 않은 시설이었다. 화성군은 수련원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공무원을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면서까지 불법적으로 허가를 내주어 규탄을 받았다. 이에 따라 화성군 공무원들이 씨랜드 건물 설계변경과 용도변경 과정에서 불법 사실을 묵인한 직권남용과 업무상 중과실 치사상, 건축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4명은 무죄, 2명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씨랜드 대표/건물주는 내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컨테이너만으로 수련원 시설을 신축하고 비상벨과 소화기 등 소방설비 점검을 소홀히 한 건축법 및 소방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5년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 소망유치원 원장 및 교사 등 4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되어 이중 유치원장이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5. 대구 지하철 화재 (2003년 2월 18일, 192명 사망)

대구 지하철 화재는 처음 불이 난 1079호의 승객 피해자는 1명으로 매우 적었으나 화재 발생 후 맞은편에 진입한 1080호의 뒷호차에서 대부분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처벌은 대부분 기관사 및 관제사에 몰렸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되었고, 출입문을 닫은 채 출발을 시도하는 바람에 많은 사상자가 난 1080호 기관사는 금고 5년, 1079호 기관사와 가장 먼저 화재 사실을 연락받은 관제사는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금고 4년, 나머지 관제사들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3년에서 1년 6월이 선고되었다. 기관사의 관제사의 대처부실에는 매뉴

얼의 부실과 1인 승무 등 구조적 원인이 있었음에도, 또 지하철의 방재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대구지하철공사에 책임을 물었어야 했지만, 대구지하철공사 전 사장인 윤진태, 김옥영 시설부장은 사고 책임이 아니라 증거인멸 혐의 (사고현장 물청소를 지시한 점)로 기소되었다. 김옥영 시설부장은 1심에서 무죄선고를, 윤진태 전 사장은 1심 3년 → 2심 1년6월 → 대법원 및 대구고법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6. 삼성-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2007년 12월 7일, 원유 1만2547kl 유출)**

삼성 예인선단은 악천후에도 무리하게 출항하였고 대신해양청의 몇 차례에 걸친 피항경고를 무시하다 크레인을 연결한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크레인이 유조선인 허베이 스피리트호에 충돌하였다. 한국 역사상 최대의 기름유출사고였다. 해양환경관리법은 과실로 선박이나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을 유출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삼성 예인선단 선장(하청업체 (주)보람 소속)은 징역 2년3월을,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확정하였다. 악천후에도 자신들은 출항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는 보람 직원들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검찰은 원청인 삼성에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 **7.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2013년 7월 18일, 5명 사망)**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한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이 구멍조끼를 벗고 바다로 들어가라는 교관의 지시를 따르다 5명의 학생이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였다. 공주사대부고는 안면도유스호스텔과 해병대캠프를 계약했으나 안면도유스호스텔은 여행사인 코오롱트래블에 위탁, 코오롱트래블은 해병대리더십에 재위탁하는 구조였다. 결과적으로 모든 책임은 해병대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한 하청업체가 졌다. 해병대캠프 대표는 금고 1년 6월이 선고되었다. 교관 3명에 대해서는 1심에서 금고 1년 4월~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교관 중 2명은 형량이 늘어나 2년~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유스호스텔 대표와 코오롱트래블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 중 유스호스텔 대표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6월을 선고받았다. 사고 직후 태안군청과 해경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도마에 올랐지만, 경찰은 시간과 인원부족을 이유로 수사선상에서 제외하였다.

[자료 2-2] 2014년 발생한 대형참사와 책임자 처벌 현황

1.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2014년 2월 17일, 10명 사망, 128명 부상)

<2014년 9월 5일 1심 결과>

: 재판부는 “이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의 각 단계에서 각자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유죄를 선고하였다.

	직책	죄명	1심 선고
마우나오션리조트	사업 본부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설작업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	금고 2년 4월
	총 지배인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설작업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시설팀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제설작업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	금고 1년 6월
설계감리	공사설계 감리자	업무상 과실치사상 (설계·감리 부실)	금고 2년 6월
건축구조 기 술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 대여 등)	금고 2년 6월
시공(원청) S종합건설	대표이사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건설기술경력증 대여받음,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허 위 작성 등)	(무죄)
	현장소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하도급업체 부실자 재 사용 방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건설업 등록증 대여받음)	징역 2년 4월
시공 (하청) A개발	A개발 대표	업무상 과실치사상 (지붕에 패널 부적 정 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무등 록 건설업)	징역 1년 6월
시공 (하청) E강재	회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무등록자에게 재하도급)	금고 3년, 징역 3월
	전무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실 자재 구매 지시)	금고 2년
	영업부	업무상 과실치사상	금고

	상무	(무리한 공기로 계약 수주, 부실시공 방치)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자재부 과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부실 자재 구매 공급)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생산부 차장	업무상 과실치사상 (품질관리절차 미이행)	금고 1년 6월
C강재 재하 도급 업자	시공업자	업무상 과실치사상(고강도 무수출 모르타르 미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무등록 시공)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 세월호 침몰 (2014년 4월 16일, 295명 사망, 9명 실종)

11월 5일 세모그룹 고 유병언 일가에 대한 1심 판결

이름	직책	죄명	1심 선고
유대균	유병언의 장남. 청해진해운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최대 주주	횡령 및 배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약 35억원 등 계열사들로부터 약 68억원 횡령)	징역 3년
유병일	유병언의 친형	업무상 횡령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약 1억3500만원 수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1월 20일 청해진해운 임원 6명, (구속기소 5명, 불구속기소 1명) 세월호  
원래선장, 하역업체인 우련통운 임원 2명, 해운조합 2명  
(운항관리실장, 운항관리원)에 대한 1심 판결

	이름	직책	죄명	1심 선고
청 해 진 해 운	김한식	대표이사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물, 선박안전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징역 10년, 벌금 200만원
	김영봉	상무이사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물, 선박안전법 위반	금고 5년, 벌금 200만원
	안기현	해무팀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물, 선박안전법 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징역 6년, 벌금 200만원
	남호만	물류팀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물, 선박안전법 위반	금고 4년, 벌금 200만원
	김정수	물류팀차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물, 선박안전법 위반	금고 3년, 벌금 200만원
	박희석	해무팀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물, 선박안전법 위반	금고 2년 6 월, 벌금 200만원

	신보식	세 월 호 원래선장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2년 (집 행유예 3년)
우련 통운	문기한	본부장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업무상과실치 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2년
	이준수	현장팀장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업무상과실치 사, 업무상과실치상	금고 2년
해운 조합	김주성	운항관리 실장	무죄	
	전정윤	운항관리 원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업무상과실치 사, 업무상과실치상	징역 3년

- 1심에서 변호인들은 선장·승무원 사건과 이 사건 사이 인과관계의 중단 및 (사망은 선장, 승무원의 유기치사 책임이지 임원들은 직접 책임 없다.) 또한 침몰사고에 따른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인이 아니라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는데, 대부분 임원들이 화물과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독려했으며, 하역회사인 우련통운의 경우도 화물적재계획도 등을 제대로 요구하지 않았고, 규정에 맞지 않은 고박방법을 시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점을 인정한 것이다.
-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김한식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유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죄까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업무상 횡령은 유병언의 친형인 유병일에게 고문료 및 교통비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을 지급하고, 유병언의 장남 유대균에 대한 상표사용료 등으로 1억5천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가중처벌), 업무상배임은 아이원아이홀딩스(유대균, 유혁기가 최대주주)에 경영자문 수수료, Naeclear(유혁기가 운영하는 미국법인)에 컨설팅 비용 지급, 유병언 사진 구입,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유병언 사진작품 국내 총판회사) 출자금 지급(가중처벌) 등으로 인한 것이다. (참고로 해무팀장 안기현의 경우 5000여 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횡령하였다.) 재판부는 ‘청해진 해운의 설립 및 운용’ 부분에서 ‘결국 청해진해운은 유병언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지적했지만 유병언이 사망한 상황에서 실소유주 일가의 불법경영 책임 중 상당부분을 대표이사 김한식에게도 물었다. 이렇게 책임을 묻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 최대형인 금고 5년형 이상을 구형·선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론을 고려해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유병언의 장남 유대균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또한 법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대표하는 자연인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도 명시하였는데, 이는 한국 법률상 법인처벌의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박스 참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선박안전법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인 김영봉의 주장

선박안전법 제86조 제1호, 제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행위자는 선박소유자이므로, 세월호의 소유자가 아닌 피고인은 선박안전법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나. 판단

선박안전법 … 규정에 의하면 선박의 복원성을 유지하며 항해에 사용하여야 하는 주체는 선박의 소유자인바, … 청해진해운이 세월호의 선박소유자로서 … 복원성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세월호를 항해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복원성을 유지하며 선박을 항해에 사용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어… 법인이 선박안전법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선박안전법위반죄의 주체가 되는바, 이 사건에서는 청해진해운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김한식이 선박안전법위반죄의 주체가 된다. … 김영봉 역시 …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김영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참고로 선장 및 선원 판결 시, '청해진해운' 자체도 피고가 되어 벌금을 선고받았다. 사고로 인한 기름유출이 해양환경법위반이기 때문에 양벌규정으로 인해 벌금을 선고받은 것인데 액수는 1,000만원이다.

### 3. 장성요양병원 화재 (2014년 5월 28일, 21명 사망, 7명 부상)

11월 21일 1심 선고 결과

직책	죄명	1심 선고
이사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역 5년 4개월, 벌금 100만원
행정원장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2년 6개월, 보석 기각
관리과장	업무상과실치사상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행정부원장	증거은닉교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간호사	증거은닉	벌금 200만원
간호사	증거은닉	벌금 200만원

- 이사장과 광주광역시 공무원 등의 뇌물공여수수에 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참고로 방화범 김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이번 화재의 가장 큰 책임은 이사장에게 있는데 책임을 방화범 김씨에게만 모두 돌렸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유가족 관계자는 “김씨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이사장은 부실한 안전관리로 피해를 키운 사람”이라며 “병원 책임자에게 강한 형벌이 선고되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허가를 내준 박씨도 단순한 차용금이 아닌 뇌물이 오간 것인데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판결이었다”고 덧붙였다.’ (광주드림, 2014년 11월 21일)

### 4. 오룡호 침몰 (2014년 12월 1일, 27명 사망, 26명 실종)

- 현재 수사 중인 상태이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 수사전담반은 ‘기상악화 상태에서 무리한 조업 강행’과 ‘비상 조난 과정의 대응 미숙’이 원인일 것이라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사고 원인을 선장에게만 집중시키고 사조산업과의 연관성은 끊어내고자 하는 태도라 볼 수 있다.
- 필수승무선원을 태우지 않은 점이 인정되더라도 사조산업 책임자는 선박직원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원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것이 최대일 것으로 예상된다.
- 사조산업은 오룡호 침몰 사고 이후에도 어선 31척에 자격 미달 해기사를 태우고, 선장이 타지 않은 어선도 3척이나 있어 정부지원금을 회수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2015년 4월 13일)

외국의 기업살인법안 - 호주, 캐나다, 영국

1. 호주 준주 “산업 살인법”

국가	호주 (준주) <span style="float: right;">*준주: 수도 캔버라가 있는 주</span>
제정년도	2003년
법안명칭	산업 살인법/ Crimes (Industrial Manslaughter) Amendment Act 2003./ 형법 1900 수정
대상	산업재해
피해대상	-종사자 (worker) / -하청 노동자 - 재택근무자/ -견습, 수습생/ -자원봉사자
처벌대상	①기업 (원청, 하청) ②정부 상급관리자 -장관, 정부기관 최고경영자 (CEO) -정부 또는 기관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거나, 결정에 참여한 최고경영자 등 ③ 기업 - 감독, 업무책임자 - 기업의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거나, 결정에 참여하는 자 - 기업의 재정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가진 자 - 기업의 지배인, 자산관리자, 청산인 등
적용규정	1) 고용주의 노동자가 - 고용주 혹은 고용주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거나 고용된 과정에서 사망 하거나, 부상을 입은 후에 사망하고 - 고용주의 행위가 노동자의 사망을 야기하거나 - 고용주가 노동자, 다른 고용주의 노동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야기하는 부주의, 또는 과실 2) 고용주와 상급관리자의 부작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을 막거나 피할 의무를 수행하는데 부작위</li> <li>- 고용주의 행위, 소유물 또는 통제에 있는 것들 또는 고용주의 책임하에 있는 것들</li> </ul>
처벌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벌금 : 개인- 25만달러 / 기업 - 125만달러</li> <li>- 징역“ 25년 형</li> <li>* 두 가지 처벌을 병과 할 수 있음</li> <li>* 처벌의 기업 비용 최고한도 : 500만 달러 (약 60억)</li> </ul>
기타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죄 판결시 법원은 처벌에 대신, 혹은 부과하여 명령 가능</li> <li>- 법원의 조치 공개 : 위법행위, 사고 결과, 처벌과 명령 (신문, 방송광고, 기업연간보고서 공지, 기업주주 공지 배부</li> <li>- 법원 명령 실패 시, 산업안전위원의 신청으로 기업의 조치 이행, 기업의 실패 공표 명령</li> </ul>
사망 만인률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3년 2.30 --&gt; 2004년 2.00 --&gt; 2009년 1.90 으로 감소</li> </ul>

## 2. 캐나다 “단체의 형사 책임법”

국가	캐나다
제정년도	2003년
법안명칭	단체의 형사책임 법 An Act to amend the Criminal Code (criminal liability of organizations)
제정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2년 웨스트레이 광산에서 26명의 광산노동자 사망.</li> <li>- 사고 후 주 정부는 공개조사 선언. 광산의 내부 시스템, 안전보건 법 무시. 기업의 광부 협박과 해고 위협, 정부의 허술한 감독 등 종합적 문제</li> <li>- 캐나다 노총과 철강노조의 “ NO MORE WESTRAY” 투쟁 전개</li> </ul>
원칙조항	- 217. 1 : 일을 하거나 업무 수행 방법 지시에 책임이나 권한 있는 모든 자는 그 사람들 또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일이나 업무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할 법적 의무 부여
대상	산업재해, 일반 재해
피해대상	종사자 (worker)/ 일반시민

처벌대상	- 공공단체, 법인, 협회, 회사 (company, firm) , 동업, 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 사단
적용규정	<p>① 부주의 입증 기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 대표자중 1인이 위법행위 당사자, 대표자중 2명이상 작위 또는 부작위 행위와 관련</li> <li>- 책임있는 상급관리자가 위법행위 당사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li> </ul> <p>② 잘못을 입증 기소 (적어도 일부분 단체의 이익을 위한 의도, 상급관리자중 1명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한 범위 내에서 행위 하는 상급관리자가 위법행위 당사자</li> <li>- 위법행위를 구체화 하는 행위를 하거나, 부작위를 하기 위해 지시하거나</li> <li>- 단체의 대표자가 위법행위 당사자가 되거나, 되고자 하는 것을 인식하고도 방지하는 합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li> </ul>
처벌내용	<p>① 개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상 : 최대 10년의 징역 / - 사망 : 무기징역</li> <li>- 무한벌금과 최대 15할의 피해자 과징금</li> </ul> <p>② 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과기록 / - 보호관찰 / - 무한벌금과 최대 15할의 피해자 과징금</li> </ul>
기타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법행위로 고통 받은 자들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배상</li> <li>- 단체의 추가적인 위법행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 기준, 절차 마련</li> <li>- 정책, 기준, 절차 대표자와 논의, 이행을 법원에 보고, 준수할 상급관리자 지정</li> <li>- 일반인에게 공표 : 위법행위, 법원 판결, 재발 장치를 위한 정책. 기준, 절차</li> </ul>
사망만인률 변화	- 2003년 6.10--> 2004년 5.80으로 감소

### 3. 영국 기업살인법

국가	영국
제정년도	2007년
법안명칭	기업 살인법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Manslaughter / 스코트랜드: Homicide
제정배경	-1987년 엔터프라이즈 여객선 침몰 승객 150명, 선원 38명 사망: 법원 과실치사 위반 없음 - 1997년 철도사고 자동경보시스템 문제 7명 사망, 151명 부상: 법원 과실치사 위반없음 - 2001년 철도사고 이상 확인된 열차선로 탈선 4명 사망, 70여명 부상 : 법원 기업 과실치사. 임원 과실치사 모두 위반 없음 - 영국노총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기업 살인법 제정운동
원칙조항	- 제1조3항 한 개인의 행동 초점 보다 상위 경영진의 조직 관리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대상	모든 사고 대상
피해대상	사람 (person 노동자, 시민 구분 없음)
처벌대상	기업, 정부 (정부부처의 서비스), 경찰(수용자, 구금자등), 동업회사, 노동조합, 사업주 단체 개인은 기업살인법 대상 아님. 기업살인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각각 판결 가능
적용규정	- 사람의 사망을 유발 - 사망자에 대해 해당 조직체의 관련 관리의무에 중대한 위반(기대수준에 못미치는 경우) - 고위 경영진 (의사결정, 실질적 관리, 구성)에 의해 조직체가 관리 구성되는 방식으로 사망을 유발하고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처벌내용	- 벌금의 상한선 없음 - 의회지침 상 기업의 1년 총 매출액 5%- 10%범위/ 악의적인 경우는 10% 이상 * 양형 고려요소 - 사망 1명 이상이거나 부상 동반 - 감독관, 노조, 노동자, 일반사람의 경고나 조언에 주의하지 않은 경우 - 안전문제 비용 삭감 - 안전관련

	<p>허가를 고의적으로 안 받거나 미 준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부상 (개인적 환경, 흡사당하기 쉬운 사람 포함)</li> <li>- 기업 주식 소유자의 재정 손실, 기업의 벌금으로 인한 가격 상승, 민사상 보상에 대한 책임은 처벌 양형에 관련 없음</li> <li>- 악성 사고에서는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오더라도 수용가능함</li> </ul>
기타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반 구제 명령 : 재발방지 대책 집행 기한을 정하고, 이행증거 제출 요구, 구제명령 불이행 시 기소, 벌금</li> <li>- 유죄 판결 공개 명령: 유죄 판결 사실, 위법행위 사항, 벌금, 구제명령 조건 등에 대한 공개 명령. 불 이행시 기소 벌금</li> </ul>
사망만인률 변화	- 2007년 0.70 --> 2008년 0.60 --> 2009년 0.40으로 감소

**\* 영국 기업 살인법 적용 사례**

년도	기업명	사고내용	처벌
2011	이튼 앤 코츠월드 홀딩	해자가 붕괴되어 시험광구 샘플 채취하던 노동자 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850,000 파운드 벌금</li> <li>- 기업 연 매출액의 250%</li> </ul>
2012	R v JMW Farms	돼지 사육농장 노동자 리프트에서 떨어진 금속 휴지통에 맞아 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7,500 파운드</li> <li>- 기업 연매출액의 18%</li> </ul>
2012	리용 스틸	<p>물이 새어 틈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지붕에 올라간 노동자 추락사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살인법, 산업안전보건법, 고공안전규정 위반을 각각 기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80,000 파운드</li> <li>- 산안법 위반 건은 계류중</li> </ul>

2012	R v PS & JE Ward	끌고 있던 수압트레일러 전선을 건드려 감전으로 원예 노동자 사망	- 진행 중
2013	R v Murray and Sons	노동자가 동물사료 배합기 빨려 들어가 사망	- 100,000 파운드 벌금
2013	R v Princes Sporting Club Limited	고무보트를 타고 있던 소녀가 호수로 떨어져 사망 (야광헬멧 미착용, 산업안전담당자의 사고 이전 경고 무시)	- 135,579. 69 파운드 (회사의 전체 자산 총액) - 유죄사실 공개명령
2014	모바일 스위퍼즈		- 183,000 파운드 벌금 (회사 재산이 12,000 파운드였음) - 2개 지방신문에 공표명령 - 이사 자격정지 5년

**호주수도준주(The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형법(기업살인) 수정법 2003**

A2003-55

목차

- 
1. 법안 이름
  2. 도입
  3. 수정안
  4. 제7A장, 각주 1
  5. 개정 2A절
  8. 용어
- 
- 

이 법은 1900 형법에 대한 수정임

---

ACT의 입법부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1. 법안 이름

이 법은 형법(기업살인) 수정법 2003으로 한다

## 2. 도입

이 법은 2004. 3. 1.에 시행한다

## 3. 수정전 법

이 법은 1900 형법의 수정이다.

## 4. 제7A장, 각주 1

추가

- 49C조(기업살인-고용주)
- 49D조(기업살인-상급관리자의 위법행위)

## 5. 개정 2A장

추가

## 2A장

## 기업 살인

### 49A 2A장의 정의

이 장에서는

(당사자인) 사람의 **대리인(agent)**은 다음을 의미한다-

(a) 당사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당사자(독립적인 계약자이거나 또는 그 반대)에게 고용된 사람(상대방)으로, 당사자가 관여하고 있는 일에 관하여

(i) 통제하거나; 또는

(ii)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의 합의를 제외하고 통제할 수 있었거나; 또는

(b) 당사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다른 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대리인(독립적인 계약자이거나 또는 그 반대)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당사자, 다른 대리인과 관련하여 다른 대리인에 관한 일에 관하여

(i) 통제하거나; 또는

(ii) 대리인들 사이의 합의를 제외하고 통제할 수 있었었던 자.

**사인(causes death)** - 만약 그것이 사망에 상당히 기여하였다면 사람의 행위가 사망의 원인이 된다.

**산업안전의원(commisiner for OH&S)** 1989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 안전보건 위원을 의미한다.

**행위(conduct)** 형법전 13편에 따른다.

**사망(death)** 형법전에 따른다.

**고용인(employee)** 용역계약에 따라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고용주(employer), 근로자의-** 만약 다음과 같은 근로자가 있다면 고용주

이다

- (a) 특정인의 근로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한 특정인; 또는
- (b) 대리인의 근로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특정인의 대리인

**정부(government)** 법제법(Legislation Act) 제121(6)에 따른다.

**정부기관(government entity)**-기관의 기능이 만약 다음과 같다면 정부기관이다

- (a) 기관의 활동 기능이 정부(정부의 상급관리자를 포함한다)의 통제를 받기 쉽거나; 또는
- (b) 그렇지 않으면 기능을 수행하는데 정부의 대리인인 기관

**도급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용역에 관한 계약에 의해 고용된 자를 의미한다

**관리자(officer)**, 기업의- 기업법 9조에 따른다

각주 이 조의 시행에서, 기업법 제9조의 관리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업의 **관리자**는 다음을 의미한다:

- (a) 기업의 감독자 또는 업무책임자; 또는
- (b) 사람:
  - (i) 기업의 영업의 전체 또는 상당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거나 하는데 참여하는 자
  - (ii) 기업의 재정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가진 자; 또는
  - (iii) 기업의 감독자들의 지시나 요청들에 따라서 행위하는 것이 익숙한 자(개인의 전문적인 능력 또는 그들의 감독자나 기업의 영업관계에 따라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조언을 주는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 (c) 수령인, 또는 기업의 자산의 관리자 또는 수령인; 또는
- (d) 기업의 지배인; 또는
- (e) 기업에 의해 실행되는 회사방침의 행위의 관리자

- (f) 기업의 청산인; 또는
- (g) 기업과 다른 자들 사이에 정해진 협의 또는 방침을 관리하는 신탁인 또는 다른 자

**재택근무자(outworker)** 물건이나 자재를 제조하거나 처리하는, 또는 다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역계약에 따라 사람(본인)에 의해 고용된 개인

- (a) 재택근무자의 자택에서; 또는
- (b) 본인의 관리나 통제하에 있지 않은 다른 건물에서

**용역제공(provide services)**은 사람이나 또는 사람에 관하여 사람을 위하여 또는 사람과 관련하여 일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상급 관리자(senior officer)**는, 고용주의, 다음을 의미한다.

- (a) 정부 또는 정부기관과 관련된 기관-다음중 하나-에서의 고용주
  - (i) 정부 또는 정부기관과 관련된 장관
  - (ii) 정부 또는 정부기관에서 최고경영자(CEO, 표현에 관계없이)에 해당하는 자
  - (iii) 정부 또는 정부기관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정부기관의 기능의 모든 혹은 상당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거나 참여한 최고경영자(CEO, 표현에 관계없이)에 해당하는 자
- (b) 다른 기업의 고용주를 위한(정부가관이 아닌 기업을 포함하는)-기업의 관리자; 또는
- (c) 다른기관의 고용주를 위한-다음중 하나
  - (i) 기관과 관련하여 정부 또는 정부기관의 기능의 모든 혹은 상당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거나 참여한 최고경영자(CEO, 표현에 관계없이)에 해당하는 자
  - (ii) 기관이 기업이라면 기관의 관리자로 여겨지는 자

**(a) (ii) 에 대한 예시**

1994년 공공부분관리법 28장(수행) 또는 30장(임시직무수행)에 따라 고용된 자는 CEO로 수행하는 것

(a) (iii) 에 대한 예시

1994년 공공부분관리법 54A장에 따라 만들어진 관리

중대한 손해(serious harm) 형법전에 따른다.

자원봉사자(volunteer)는 다음의 자를 의미한다.

(a) 용역을 제공하는-

(i) 다른 자의 거래 또는 경영과 관련된, 혹은 그것을 위하여

(ii) 종교적, 교육적, 기부 또는 자선 목적 혹은 그렇지 않다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또는 그것을 위한 기관을 위하여

(b)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합리적인 실비를 넘는 것)

근로자(worker)는 다음을 의미한다

(a) 고용인

(b) 도급계약자

(c) 채택근무자

(d) 견습생 혹은 수습; 또는

(e) 자원봉사자

#### 49B 고용주와 상급관리자의 부작위

(1) 이 장에서 고용주의 부작위는 행위로서 만약 그것이 고용주의 근로자의 생명, 안전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을 막거나 피할 의무를 수행하는데 부작위이며 만약 그 위험이 다음에서 발생한 때를 말한다.

(a) 고용주의 행위; 또는

(b) 고용주의 소유물 또는 통제에 있는 것들; 또는

(c) 고용주의 책임하에 있는 것들

(2) 이 장에서 고용주의 상급관리자의 부작위는 행위로서 만약 그것이 고용주의 근로자의 생명, 안전 또는 건강에 대한 위험을 막거나 피할 의

무를 수행하는데 부작위이며 만약 그 위험이 다음에서 발생한 때를 말한다,

- (a) 고용주의 행위; 또는
- (b) 고용주의 소유물 또는 통제에 있는 것들; 또는
- (c) 고용주의 책임하에 있는 것들

(3) 이 조에서, 사람과 다른 자 사이의 합의를 제외하고 만약 어떤 상황이 특정인의 통제하에 있었다면, 합의는 고려되지 아니하며 그 상황은 특정인의 통제하에 있다고 여겨진다.

#### 49C 기업살인-고용주의 위법행위

고용주는 만약 다음과 같다면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 (a) 고용주의 근로자가-
  - (i) 고용주 혹은 고용주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거나 고용된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또는
  - (ii) 고용주 혹은 고용주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거나 고용된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후에 사망하고; 그리고
- (b) 고용주의 행위가 근로자의 사망을 야기하거나; 그리고
- (c) 고용주가
  - (i) 그러한 행위로서, 근로자나 혹은 다른 고용주의 근로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야기하는 부주위; 또는
  - (ii) 그러한 행위로서, 근로자나 혹은 다른 고용주의 근로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야기하는 과실.

처벌의 최대치: 2,000 벌금(penalty unit<sup>30</sup>),한화 약 2억 5천만원(개인)  
내지 약12억 7천만원(기업) 혹은 20년이하 금고 또는 병과

---

30) 이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금(penalty unit)은 개인의 경우 110호주달러, 기업의 경우 550호주달러이다(법제법(Legislation Act), 2001, s133)

#### 49D 기업살인-상급관리자의 위법행위

고용주의 상급관리자는 만약 다음과 같다면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a) 고용주의 근로자가-

(i) 고용주 혹은 고용주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거나 고용된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또는

(ii) 고용주 혹은 고용주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거나 고용된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후에 사망하고; 그리고

(b) 고용주의 행위가 근로자의 사망을 야기하거나; 그리고

(c) 고용주가

(i) 그러한 행위로서, 근로자나 혹은 다른 고용주의 근로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야기하는 부주위; 또는

(ii) 그러한 행위로서, 근로자나 혹은 다른 고용주의 근로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야기하는 과실.

처벌의 최대치: 2,000 벌금(penalty unit, 한화 약 2억 5천만원(개인) 내지 약12억 7천만원(기업) 혹은 20년 금고 또는 병과

#### 49E 법원은 기업에 특정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이 조항은 법원에서 기업이 49C를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적용된다.

(2) 다른 처벌을 대신하여 혹은 그에 부가하여 법원은 기업에 부과할 수 있고, 법원은 다음의 각 호 하나 또는 그 이상을 명령할 수 있다.

(a) 법원에 의해 결정된 조치를 공개한다-

(i) 위법행위; 그리고

(ii) 위법행위로 발생된 행위와 관련되거나 야기된 사망 혹은 중대한 부상 혹은 다른 결과

(iii) 위반행위 때문에 부과된 처벌, 또는 다른 명령들;

(b) 법원에 의해 결정된 (a)에서 언급된 사안에 대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확정된 사람들에게 알릴 조치를 취하며;

(c) 인정된 행위를 하거나 비록 계획이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결정된 계획을 세우거나 수행한다.

**(a)에 대한 예시**

텔레비전이나 일간지에의 광고

**(b)에 대한 예시**

연간보고서에 공지를 내거나 기업의 주주들에게 공지를 배부하거나

**(c)에 대한 예시**

지역서비스를 운영하거나 개발

*(각주생략)*

(3) 명령을 함에 있어서, 법원은 행위들이 행하져야할 기간, 상황이 행해지거나 계획이 설립되거나 수행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으며, 명령의 수행이나 효과있는 명령으로 만들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다른 요청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4) 명령이나 각각의 위반행위와 관련되어 (2) 각 호에 의한 명령을 따르기 위한 기업의 총 비용은 5,000,000호주달러(약 57억 8천만원)를 넘어서는 안된다(위반행위에 대한 어떠한 벌금도 포함하여).

(5) 만약 법원이 (2) 각호에 따라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명령의 종류를 정하는데 있어 반드시 실현가능성, 기업의 재정환경 그리고 부과될 명령의 준수에 다른 부담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6) 법원은 기업의 재정상황을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2) 각호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것을 방해받아서 안된다.

(7) 만약 기업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2) (a) 또는 (b) 각화에 의한 명령을 따르는데 실패한다면, 법원은 산업안전위원의 신청에 의해, 위원에 권한을 부여하는 신청에 의해 다음의 것을 할 수 있다.

(a) 여전히 실현가능하고 행해지도록 남아있는 어떤 행위들을 수행

하는데 필요하거나 편리한 것들을 행하도록; 그리고  
(b) 기업이 명령을 따르는 것을 실패하였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

(8) 만약 법원이 (7) 각호에 따른 명령을 한다면, 위원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9) (7) 각호는 이 항에 의한 명령을 따르는데 실패한 기업에 대하여 법원절차의 무시를 시작하거나 계속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10) (7) 각호에 따른 명령을 따르는데 합리적 비용은 명령이 발해진 기업의 준주(Territory)에 대한 채무로 한다.

# 2003년 캐나다 형법 제21장

수정 형법(단체의 형사책임)

---

C-45 법안

2003, 11월 7일 승인

---

## 요 약

이 법은 형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a) 기업을 포함하는 단체에게 그들의 대표자의 행위에 대한 형법적 책임을 묻는 원칙을 세우고,
- (b) 일반인과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를 업무를 지시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고,
- (c) 단체에 대하여 선고할 때 법원이 고려해야할 요소들을 설정하고; 그리고
- (d) 법원이 법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선택적인 금지 조건들을 제공한다.

## 제21장

수정 형법(단체의 형사책임)

[2003, 11월 7일 승인]

캐나다 상원과 하원의 조언과 동의를 받아 여왕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형법

1. (1) 형법 제2조에서 “모든 자”, “사람”, “소유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모든 자”, “사람”, “소유자”, 그리고 유사한 표현, 여왕과 단체를 포함한다

(2) 이 법의 제2조은 다음의 알파벳 순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한다.

“단체”는

(a) 공공단체, 법인, 협회, 회사(company), 회사(firm), 동업, 노동조합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b) 사단으로

(i) 공동의 목적을 위해 형성되고

(ii) 운영 기구를 가지고 있으며,

(iii) 일반인에게 사단으로서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자”는, 단체에 관해서, 단체의 감독자, 파트너, 고용인, 구성원,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를 의미한다.

“상급관리자”는 단체의 정책 설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또는 단체의 활동에서 중요한 측면을 관리하는데 책임이 있거나,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감독자, 최고경영자(CEO) 그리고 최고재무관리자(CFO)를 포함하는 대표자를 의미한다.

2. 이 법은 제2조 뒤에 다음을 더하는 것으로 수정한다.

22.1 부주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기소가 필요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단체는 다음의 경우에 그 위법행위의 당사자가 된다. 위법행위가,

(a) 그들의 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해지고

(i) 대표자중 1인이 그 위법행위의 당사자이거나, 또는

(ii) 대표자 중 2명 이상의 작위 또는 부작위 행위와 관련이 있고, 그러한 경우, 만약 그것이 오직 한명의 대표자의 행위였고 그 대표자가 위법행위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리고

(b) 위법행위와 관련있는 단체의 활동 면에서 책임있는 상급관리자-혹은 총괄하여, 상급관리자,-가 단체의 대표자가 위법행위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관리기준에서 현저하게 벗어나 경우

**22. 2** 잘못-부주의 이외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기소가 필요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단체는 다음의 경우에 그 위법행위의 당사자가 된다. 만약 적어도 일부분 단체의 이익을 위한 의도를 가지고, 상급관리자중 1인이

- (a) 그들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위하는 상급관리자는 위법행위의 당사자가 되며;
- (b) 위법행위의 당사자에게 요구되는 주관적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범위 내에서 행위하고, 위법행위를 구체화하는 행위를 하거나 부작위를 하기위해 단체의 다른 대표자의 일을 지시하거나; 또는
- (c) 단체의 대표자가 위법행위의 당사자가 되거나 또는 되려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이 위법행위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법은 제217절에 뒤에 다음을 더하는 것으로 수정한다.**

**217. 1** 다른 사람이 일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을 지시하는데에 책임지거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는 그 사람들 또는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일이나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신체적 위해를 방지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법적의무를 진다.

**4. 이 법의 328(e) 문단은 다음으로 대체된다.**

- (e) 단체로부터 단체의 대표자에 의해

5.~8. (생략)

**9. 이 법의 556조는 다음으로 대체된다.**

- 556. (1)** 기소된 단체는 변호사 또는 대리인이 출석해야 한다.

(2) 기소된 단체가 소환장에 따라 나타나지 않고 단체에 대한 소환장 도달이 입증된 경우, 지방법원 판사 또는 누나부트(Nunavut<sup>31</sup>)에서는 누나부트 법원의 판사는

- (a) 만약 혐의가 판사가 절대적 관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기소된 단체의 결석에도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 (b) 만약 혐의가 판사가 절대적 관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소된 단체의 결석에 대하여 제18절에 따라 예비조사를 하여야 한다.

(3) 만약 기소된 단체가 출석하였으나 532(2) 또는 536.1(2)에 따른 선거를 치러야하여야 하는 때에 선거를 하지 않은 경우, 지방법원 판사 또는 누나부트 법원의 판사는 제18절에 따라 예비조사를 하여야 한다.

## 10. (생략)

**11. 이 법의 제620조 앞의 제목과 제620조 내지 제623조는 다음으로 대체된다.**

### 단 체

**620.** 고소장이 제출된 모든 단체는 변호사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변론하여야 한다.

**621.** (1) 법원 서기 또는 검사는, 단체에 대한 고소장이 제출된 곳에서, 고소장에 대한 통지를 단체에게 제공되도록 할 수 있다.

(2) 고소장에 대한 통지는 세부항목으로 (1) 고소장의 핵심과 취지를 나타내고 그리고 통지된 날짜나 혹은 548(2.1)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변론을 시작하고 법원에 의해 기소된 것에 대하여 무죄 변론을 할 것이고, 고소장에 대한 재판이 단체가 나타나거나 변론하더라도 고소장에 대한 재판은 진행된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

31) 캐나다 북부의 에스키모족 자치구

**622.** 만약 단체가 제621조에 언급된 통지에 따른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재판장은, 통지가 도달했다는 입증 하에, 법원 서기에게 단체를 대표하여 무죄 변론을 시작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그 변론은 만약 단체가 그의 변호사나 대리인이 출석하여 그러한 변론을 한 것과 동일한 효력과 효과를 가진다.

**623.** 단체가 출석하여 고소장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제622조에 따라 법원의 명령에 의해 무죄변론이 시작된 경우, 법원은 고소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며 단체는 제735조가 적용되어 판결받는다.

12. (생략)

**13. 이 법의 제703.2조는 다음으로 대체된다.**

**703.2** 어떠한 소환장, 통지 또는 단체에 요구되거나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절차, 그리고 다른 방법의 송달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송달은 인도에 의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 (a)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장, 기관장, 지방행정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최고 관리자, 또는 비서, 회계담당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서기; 그리고
- (b) 다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매니저, 비서, 또는 단체 또는 지점 중 하나의 다른 상급관리자

**14. 이 법은 제718.2조 뒤에 다음을 더하는 것으로 수정한다.**

## 단 체

**718.21** 단체에 판결을 내린 법원은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 (a) 위법행위의 결과로 기업에 현실화된 이익
- (b) 위법행위를 행하는데 관련된 계획의 정도와 위법행위의 기간 및 복잡성
- (c) 단체가 배상이나 벌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 자산을 은닉하거나 변경하려는 시도를 하였는지 여부
- (d) 단체의 경제적 생존과 직원들의 고용의 계속성에 판결이 미칠 수 있는 영향
  - (e)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과 검찰의 공공단체의 비용;
  - (f) 위법행위의 기초를 형성하는 행위에 대해 단체나 그의 대표자중 1인에 대하여 규범력 있는 형벌이 부과되었는지 여부
  - (g) 단체-또는 위법행위 발생에 관련된 대표자 누구든- 유사한 위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유사한 행위로 규범력있는 단체에 의하여 처벌받았는지 여부;
  - (h) 단체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위법행위 발생에 대해 벌칙 부과
  - (i) 위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법인이 해야하는 배상 또는 법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 (j) 이후의 위법행위 발생의 가능성을 줄이는데에 단체가 취하는 어떠한 조치

15.~17. (생략)

**18. (1) 이 법의 제732.1(1)조 “선택적 조건들”의 정의는 다음으로 대체된다.**

“선택적 조건들”은 (3)항 또는 (3.1)항에 언급된 조건들을 의미한다.

**(2) 이 법의 제732.1조는 (3)항 뒤에 다음을 더하는 것으로 수정한다.**

(3.1) 법원은, 단체에 대하여 행해진 추가적인 조건으로서의 보호관찰로, 위법행위자에게 다음의 하나 이상을 지시할 수 있다.

- (a) 위법행위의 결과로 고통받은 자들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것;
- (b) 단체가 추가적인 위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정책, 기준 그리고 절차를 마련하는 것;
- (c) 이러한 정책, 기준 그리고 절차를 그 대표자와 논의할 것
- (d) 이러한 정책, 기준 그리고 절차의 이행을 법원에 보고할 것;
- (e) 이러한 정책, 기준 그리고 절차의 준수에 책임있는 상급관리자

를 지정할 것;

(f) 법원에 의하여 구체화된 방법으로, 다음의 정보들이 일반인에게 제공할 것, 즉,

(i) 단체가 유죄판결 받은 위법행위

(ii)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

(iii) 추가적인 위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단체가 진행하는 -(b)에 의하여 마련된 정책, 기준 그리고 절차를 포함하여- 절차들

(g) 단체가 추가적인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위법행위에 의한 피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법원이 바람직하다고 고려한 다른 여러 합리적인 조건들의 준수

(3.2) (3.1)(b)문단 에 따른 명령을 하기 전에, 법원은 동 문단에서 언급된 정책, 기준 그리고 절차의 개발과 준수를 감시하기 위하여 더 적절한 다른 규범력있는 기관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19.~22. (생략)

# 영국 기업살인법

## 2007 CHAPTER 19

잉글랜드 및 웨일스 또는 북아일랜드에서는 기업 과실치사라고 하고 스코틀랜드에서는 기업 살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위법 행위를 정의하고 그러한 위법 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법

[2007년 7월 26일]

본 의회에 소집된 성직 상원 의원과 성직 이외의 상원 의원 및 하원 의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존엄한 여왕 폐하에 의해 그리고 그 권위에 의해 다음이 법률로 제정된다.

###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 살인

#### 제1조 위법 행위

- (1) 조직체의 활동이 관리되거나 구성되는 방식이 다음과 같을 경우, 본 조가 적용되는 조직체는 유죄이다.
  - (a) 사람의 사망을 유발하며
  - (b) 사망자에 대해 해당 조직체가 지는 관련 관리 의무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 (2) 본 조가 적용되는 조직체는 다음과 같다.
  - (a) 기업
  - (b) 별표 1에 나열된 부처 또는 기타 기관
  - (c) 경찰
  - (d) 고용주인 동업회사, 또는 노동조합 또는 고용주 협회
- (3) 고위 경영진에 의해 조직체의 활동이 관리되거나 구성되는 방식이 제(1)항에 언급된 위반의 본질적인 요소인 경우에만, 조직체는 본 조에 의거하여 유죄이다.
- (4) 본 법의 목적상,
  - (a) “관련 관리 의무”는 제2조에서 주어지고 제3조~제7조에서 해석된 의미를 가진다.
  - (b) 조직체의 관리 의무 위반은 해당 의무의 위반에 달한다고 주장되는 행위가 그 상황에서 조직체에 마땅히 기대할 수 있는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 “중대한” 위반이다.
  - (c) 조직체와 관련하여 “고위 경영진”이란 아래 사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 (i) 조직체 활동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이 관리되거나 구성되는 방식에 대한 의사 결정
    - (ii) 그러한 활동의 전체 또는 상당 부분의 실제적 관리 또는 구성
- (5) 본 조의 적용을 받는 위법 행위는 다음과 같이 불린다.

- (a) 기업 과실치사 - 잉글랜드 및 웨일스 또는 북아일랜드 법의 적용을 받는 위법 행위의 경우
- (b) 기업 살인 - 스코틀랜드 법의 적용을 받는 위법 행위의 경우
- (6) 기업 살인의 죄가 있는 조직체는 기소에 의한 유죄판결 시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 (7) 기업 살인 위법 행위는 최고 법원에서만 기소될 수 있다.

### 관련 관리 의무

#### 제2조 “관련 관리 의무”의 의미

- (1) 조직체와 관련하여 “관련 관리 의무”는 과실법에 따라 조직체가 지게 되는 다음 의무를 의미한다.
  - (a) 조직체의 피고용인 또는 조직체를 위해 일하거나 서비스를 수행하는 다른 개인에 대해 지는 의무
  - (b) 시설의 점유자로서 지는 의무
  - (c) 다음과 관련하여 지는 의무
    - (i) 조직체에 의한 재화 또는 서비스 공급(보상 여부 불문)
    - (ii) 조직체에 의한 건설 또는 보수 작업 수행
    - (iii) 조직체에 의한 기타 상업적 활동 수행
    - (iv) 조직체에 의한 공장, 차량 또는 기타 물건 사용 또는 유지
  - (d) 제(2)항에 해당되는 개인이라는 이유로 조직체가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에 대해 지는 의무
- (2) 본 항에 해당되는 개인은 다음과 같다.
  - (a) 구금 기관 또는 법원 또는 경찰서의 감금 구역에 감금된 자
  - (b) 추방자 대기소 또는 단기 수용 시설에 감금된 자
  - (c) 교도소 호송 조치 또는 이민 호송 조치 이행 과정에서 차량으로 이송 중이거나 시설에 수용 중인 자
  - (d) 자신이 배치된 보호 수용소에서 살고 있는 자
  - (e) 구금 환자인 자
- (3) 제(1)항은 제3조~제7조의 적용을 받는다.
- (4) 제(1)항에서 과실법에 따라 지게 되는 의무에 대한 언급은 과실법에 따라 지게 될 의무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나 해당 법에 따른 책임을 대신하여 책임을 부과하는 법정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 (5) 본 법의 목적상, 특정 조직체가 특정 개인에 대한 관리 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법률 문제이다. 판사는 그러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실인정 판결을 수행해야 한다.
- (6) 본 법의 목적상 다음은 무시된다.

(a) 불법 행위에 공동으로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 대해 관리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는 효력을 갖는 관습법의 규칙

(b) 해당자가 피해 위험을 수용한다는 이유로 개인에 대해 관리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는 효력을 갖는 그러한 규칙

(7) 본 조에서

“건설 또는 보수 작업”이란 다음 설명 중 어느 것에든 해당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a) 다음의 건설, 설치, 변경, 확장, 개조, 수리, 보수, 장식, 청소, 파괴 또는 해체

(i) 건물 또는 구조물

(ii) 그 외에 토지의 일부를 형성하거나 형성할 예정인 것

(iii) 공장, 차량 또는 기타

(b) 제(7)항(a)호에 해당하는 작업의 필수적 부분을 형성하거나 그러한 작업 준비를 위한 또는 그러한 작업을 완성하기 위한 작업

“구금 기관”이란 교도소, 소년범 수용 시설, 보안 교육 센터, 소년범 수용소, 소년범 센터, 청소년 사범 센터 또는 소년범 구치소를 의미한다.

“구금 환자”란 다음을 의미한다.

(a) 다음에 따라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개인

(i) 1983년 정신보건법(c. 20)(“1983년 법”) 제2부 또는 제3부

(ii) 1986년 정신보건(북아일랜드)명령(S.I. 1986/595(N.I. 4)) (“1986년 명령”) 제2부 또는 제3부

(b) (제(a)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구금되어 있다는 이유 외에) 다음에 따라 법적 구금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개인

(i) 1983년 법 제137조

(ii) 1986년 명령 제131조

(iii) 2005년 2003년 정신보건(관리 및 치료)(스코틀랜드)법 (후속 규정)명령(S.I. 2005/2078) 제11조

(c) 2003년 정신보건(관리 및 치료)(스코틀랜드)법(asp 13) 또는 1995년 형사소송법(스코틀랜드)(c. 46) 제6부에 따라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그 외 다른 방법으로 감금되어 있는 개인 또는 1995년 해당 법 제200조에 따라 병원에 구금되어 있는 개인

“이민 호송 조치”란 1999년 이민 및 망명법(c. 33) 제156조에 따라 실시된 조치를 의미한다.

“과실법”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잉글랜드 및 웨일스와 관련하여 1957년 점유자 책임법(c. 31), 1972년 결합시설법(c. 35) 및 1984년 점유자 책임법(c. 3)

(b) 스코틀랜드와 관련하여 1960년 점유자 책임(스코틀랜드)법(c. 30)

(c) 북아일랜드와 관련하여, 1957년 점유자 책임법(c. 25), 1975년 결합시설(북아일랜드)명령

(S.I. 1975/1039(N.I. 9)), 1987년 점유자 책임(북아일랜드)명령(S.I. 1987/1280(N.I. 15)) 및 2001년 결합시설(시설주 책임)(북아일랜드)법(c. 10)  
 “교도소 호송 조치”란 1991년 형사사법법(c. 53) 제80조에 따라 또는 1994년 형사사법 및 공공질서법 제102조 또는 제118조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를 의미한다.  
 “추방자 대기소” 및 “단기 수용 시설”은 1999년 이민 및 망명법 제147조에서 주어진 의미를 갖는다.  
 “보호 수용소”란 연령 18세 미만인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며, 구금 기관을 구성하거나 그 일부를 형성하지 않는 수용소를 의미한다.

### 제3조 공공 정책 결정, 독점적 공공 직무 및 법정 조사

- (1) 공공 정책 사안(특히 공공 자원 할당 또는 경쟁 관계에 있는 공익 비교 검토 포함)에 관한 결정과 관련하여 공공 기관이 지는 관리 의무는 “관련 관리 의무”가 아니다.
- (2) 독점적 공공 직무 행사 과정에서 행해지는 일과 관련하여 지는 관리 의무는 제2조(1)항 제(a)호, 제(b)호 또는 제(d)호에 해당되지 않는 한 “관련 관리 의무”가 아니다.
- (3) 법정 직무 행사 과정에서 시행되는 조사와 관련하여 공공 기관이 지는 관리 의무는 제2조(1)항 제(a)호 또는 제(b)호에 해당되지 않는 한 “관련 관리 의무”가 아니다.
- (4) 본 조에서  
 “독점적 공공 직무”란 정부의 특권에 해당되거나,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이 권한을 부여받아서만 행사할 수 있는 직무를 의미한다.
  - (a) 그러한 특권 행사에 의해
  - (b) 법정 규정에 의해 또는 그에 따라
 “법정 직무”란 법정 규정에 의해 또는 그에 따라 부여된 직무를 의미한다.

### 제4조 군사 활동

- (1) 다음과 관련하여 국방부가 지는 관리 의무는 “관련 관리 의무”가 아니다.
  - (a) 제(2)항에 해당되는 작업
  - (b) 그러한 작업을 준비하거나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행되는 활동
  - (c) 그러한 작업과 관련하여 군대의 효율성을 향상 또는 유지하기 위해서 수행될, 또는 해당 방식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간주되는 위험한 종류의 훈련 또는 위험한 방법으로 수행되는 훈련
- (2) 본 항에 해당되는 작업은 그 과정에서 군대 구성원이 공격을 받거나 공격 또는 폭력적 저항 위협에 직면하는 작업으로, 평화 유지 작업 및 테러, 국내 불안 또는 심각한 공공 무질서를 다루기 위한 작업을 포함한다.
- (3) 특수 부대 구성원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과 관련하여 국방부가 지는 관리 의무는 “관련 관리 의

무”가 아니다.

(4) 본 조에서 “특수 부대”란 그 역량 유지가 특수 부대 지휘관(Director of Special Forces)의 책임이거나 당분간 해당 지휘관의 작업 명령을 따라야 하는 군부대를 의미한다.

### 제5조 치안 유지 및 법 집행

(1) 다음과 관련하여 공공 기관이 지는 관리 의무는 “관련 관리 의무”가 아니다.

(a) 제(2)항에 해당되는 작업

(b) 그러한 작업을 준비하거나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행되는 활동

(d) 그러한 작업과 관련하여 공공 기관 임직원의 효율성을 향상 또는 유지하기 위해서 수행될, 또는 해당 방식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간주되는 위험한 종류의 훈련 또는 위험한 방법으로 수행되는 훈련

(2)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경우, 본 항에 해당되는 작업이 된다.

(a) 테러, 국내 불안 또는 심각한 무질서를 다루기 위한 작업이며

(b) 치안 유지 또는 법 집행 활동 수행을 동반하고

(c) 작업 과정에서 문제의 공공 기관 임직원이 공격을 받거나 공격 또는 폭력적 저항 위협에 직면함

(3) 기타 치안 유지 또는 법 집행 활동과 관련하여 공공 기관이 지는 관리 의무는 제2조(1)항 제(a)호, 제(b)호 또는 제(d)호에 해당되지 않는 한 “관련 관리 의무”가 아니다.

(4) 본 조에서 “치안 유지 또는 법 집행 활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a) 다음과 같은 직무 행사 과정에서 수행되는 활동

(i) 경찰 직무

(ii) 경찰 이외 공공 기관에 의해 행사될 수 있는 동일한 또는 유사한 성질의 직무

(b) 공공 기관에 의해 고용된 치안관의 직무 행사 과정에서 수행되는 활동

(c) 2005년 중대조직범죄 및 경찰법(c. 15) 제2부 제4장(목격자와 그 외 다른 사람의 보호)에 따라 행사될 수 있는 직무 행사 과정에서 수행되는 활동

(d) 이민법에 포함되거나 이민법에 따라 마련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수행되는 활동

### 제6조 긴급 상황

(1)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제(2)항에 해당되는 조직체가 지는 관리 의무는 제2조(1)항 제(a)호 또는 (b)호에 해당되지 않는 한 “관련 관리 의무”가 아니다

(2) 본 항에 해당되는 조직체는 다음과 같다.

(a)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소방 및 구조 기관

(b) 스코틀랜드의 소방 및 구조 기관 또는 합동 소방구조대

(c) 북아일랜드 소방구조대

- (d) 다음과 같이 긴급 상황에 대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조직체
    - (i) 제(a)호, 제(b)호 또는 제(c)호에 해당되는 조직체에서 실시하는 조치 수행 과정 중에, 또는
    - (ii) (그러한 조치 수행 과정 중이 아닌 경우) 상업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 (e) 관련 NHS 기관
  - (f) 아래 조치 수행 과정 중에 구급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체
    - (i) 관련 NHS 기관에 의해 또는 해당 기관의 요청으로 마련된 조치
    - (ii) 국무장관 또는 웨일스 정부 장관에 의해 마련된 조치
  - (g) 제(f)호에서 언급된 종류의 조치 수행 과정에서 장기, 혈액, 장비 또는 인력 수송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체
  - (h) 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체
  - (i) 군대
- (3) 제(1)항의 목적상, 조직체가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포함하지 않는다.
- (a) 의료 치료가 수행되는 방식
  - (b) 제(4)항에 해당되는 결정이 내려지는 방식
- (4) 본 항에 해당되는 결정은 의료 치료 제공 순서에 관한 결정을 제외한, 의료 치료 수행에 관한 결정이다.
- (5) 긴급 상황 시 바다에서의 구조 작업 수행 또는 수행 시도와 관련하여 지는 관리 의무는 제2조(1)항 제(a)호 또는 제(b)호에 해당되지 않는 한 “관련 관리 의무”가 아니다.
- (6) 다음과 같이 취해진 행동과 관련하여 지는 관리 의무는 제2조(1)항 제(a)호 또는 제(b)호에 해당되지 않는 한 “관련 관리 의무”가 아니다.
- (a) 1995년 상선법(c. 21) 별표 3A(안전 지침)에 따른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또는
  - (b) 해당 별표 제4호(지침 대체 행동)에 의거하여
- (7) 본 조에서 “긴급 상황”이란 아래와 같은 현재 또는 임박한 상황을 의미한다.
- (a) 심각한 피해 또는 그러한 피해 악화를 유발하고 있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또는
  - (b) 사람의 사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의료 치료”는 의료적 또는 유사한 성질의 치료 또는 절차를 포함한다.
- “관련 NHS 기관”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 (a) 잉글랜드의 전략보건당국, 일차의료 트러스트, NHS 트러스트, 특별보건당국 또는 NHS 재단 트러스트
  - (b) 웨일스의 지역보건위원회, NHS 트러스트 또는 특별보건당국
  - (c) 스코틀랜드의 보건국 또는 특별보건당국, 또는 스코틀랜드 보건 서비스를 위한 공통 서비

스 기관

(d) 북아일랜드의 보건 및 사회복지 트러스트 또는 보건 및 사회복지 위원회  
“심각한 피해”란 다음을 의미한다.

- (a) 사람에 대한 심각한 부상 또는 심각한 질환(정신질환 포함)
- (b) 환경(식물 및 동물의 생명과 건강 포함)에 대한 심각한 피해
- (c) 건물 또는 다른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

(8) 본 조에서 긴급 상황에 대한 언급은 긴급 상황이라고 믿어지는 상황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 제7조 아동 보호 및 보호관찰 직무

(1) 본 조가 적용되는 관리 의무는 제2조(1)항 제(a)호, 제(b)호 또는 제(d)호에 해당되지 않는 한 “관련 관리 의무”가 아니다.

(2) 본 조는 다음에 의해 또는 그에 따라 부여된 직무 행사와 관련하여 지역 기관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이 지는 관리 의무에 적용된다.

- (a) 1989년 아동법(c. 41) 제4부 및 제5부
- (b) 1995년 아동(스코틀랜드)법(c. 36) 제2부
- (c) 1995년 아동(북아일랜드)명령(S.I. 1995/755(N.I. 2)) 제5부 및 제6부

(3) 본 조는 또한 다음에 의해 또는 그에 따라 부여된 직무 행사와 관련하여 지역 보호관찰국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이 지는 관리 의무에도 적용된다.

- (a) 2000년 형사사법 및 법원법(c. 43) 제1부 제1장
- (b) 1968년 사회복지(스코틀랜드)법(c. 49) 제27조
- (c) 1982년 보호관찰위원회(북아일랜드)명령(S.I. 1982/713(N.I. 10)) 제4조

중대한 위반

### 제8조 배심원단 고려 요인

(1) 본 조는 다음 경우에 적용된다.

- (a) 조직체가 개인에 대한 관련 관리 의무를 진 것으로 확정되고
- (b) 해당 의무의 심각한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배심원단이 내려야 하는 경우

(2) 배심원단은 조직체가 위반 혐의와 관련된 보건 및 안전 법규의 준수를 불이행했다는 증거가 명백한지 여부와, 그러한 경우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a) 그러한 불이행의 심각성 정도
- (b) 그러한 불이행이 내포하는 사망 위험 정도

(3) 배심원단은 또한

- (a) 증거가 조직체 내에 제(2)항에 언급된 그러한 불이행을 조장했거나 용인했을 가능성이 있

는 태도, 정책, 체계 또는 용인된 관행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도를 고려할 수 있다.

(b) 해당 위반 혐의와 관련된 보건 및 안전 지침을 고려할 수 있다.

(4) 본 조는 배심원단이 관련있다고 판단하는 다른 사항을 고려하지 못하게 막지 않는다.

(5) 본 조에서 “보건 및 안전 지침”이란 보건 및 안전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보건 및 안전 법규 정 시행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국에 의해 (법정 규정에 의거하여 또는 그 외 방법으로) 마련 또는 발행된 규약, 지침, 설명서 또는 이와 유사한 간행물을 의미한다.

#### 구제 명령 및 공개 명령

#### 제9조 위반 등의 구제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

(1) 조직체에 기업 과실치사 또는 기업 살인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은 조직체에 아래 사항을 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명령(“구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a) 제1조(1)항에 언급된 위반(“관련 위반”)

(b) 법원이 보기에 관련 위반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사망의 원인인 문제

(c) 법원이 보기에 관련 위반이 암시하는, 조직체 정책, 체계 또는 관행에서의 보건 및 안전 문제와 관련한 결함

(2) 구제 명령은 제안된 명령의 조건을 명시한 검찰 신청 시에만 내려질 수 있다.

그러한 명령은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검찰 또는 조직체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진 진술 및 그에 의해 제시된 증거를 참작하여 법원이 적합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으로(제안된 조건이든 다른 조건이든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검찰은 구제 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관련 위반의 특성을 참작하여 검찰이 적합하다고 간주하는 집행 당국과 상의해야 한다.

(4) 구제 명령은

(a) 제(1)항에 언급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기한을 지정해야 한다.

(b) 제(3)항에 따라 상의가 이루어진 집행 당국에 그러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증거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공할 것을 조직체에 요구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은 해당 기간 또는 연장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루어진 신청에 대한 법원 명령에 의해 연장되거나 추가 연장될 수 있다.

(5) 구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조직체는 위법 행위의 죄가 있으며 기소에 의한 유죄판결 시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 제10조 유죄판결 등의 공개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

(1) 조직체에 기업 과실치사 또는 기업 살인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은 지정된 방식으로 아래 사항을 공개하도록 조직체에 요구하는 명령(공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a) 조직체가 위법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 (b) 위법 행위의 구체적인 사항
  - (c) 부과된 벌금 액수
  - (d) 구제 명령의 조건
- (2) 법원은 제안하는 공개 명령의 조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 (a) 법원이 적합하다고 간주하는 집행 당국(있는 경우)의 의견을 확인해야 한다.
  - (b) 검찰 또는 조직체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진 진술을 고려하여야 한다.
- (3) 공개 명령은
- (a) 제(1)항에 언급된 요건이 준수되어야 하는 기한을 지정해야 한다.
  - (b) 제(2)항에 따라 의견이 확인된 집행 당국에 그러한 요건이 준수되었다는 증거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공할 것을 조직체에 요구할 수 있다.
- (4) 공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조직체는 위법 행위의 죄가 있으며 기소에 의한 유죄판결 시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 특정 범주 조직체에 대한 적용

#### 제11조 정부 기관에 대한 적용

- (1) 정부 공무원 또는 대행자인 조직체는 그러한 이유로 본 법에 따른 기소를 면하지 않는다.
- (2) 본 법의 목적상
- (a) 별표 1에 나열된 부처 또는 기타 기관, 또는
  - (b) 정부 공무원 또는 대행자인 기업
- 은 해당자가 정부 공무원 또는 대행자가 아닌 기업인 경우에 지게 되는 모든 관리 의무를 지는 것으로 취급된다.
- (3) 제2조의 목적상,
- (a) 아래에 해당되는 개인은 해당 부처 또는 기관에 의해 고용된 것으로 취급된다.
    - (i) 별표 1에 나열된 부처 또는 기타 기관을 위해 정부에 의해 또는 정부 밑에 고용된 자
    - (ii) 그 직원이 별표 1에 나열된 기관을 구성하는 자에 의해 고용된 자
  - (b) 다음을 위해 점유된 시설은 해당 부처 또는 기관에 의해 점유된 것으로 취급된다.
    - (i) 별표 1에 나열된 부처 또는 기타 기관
    - (ii) 그 직원이 별표 1에 나열된 기관을 구성하는 자
- (4) 제2조~제7조의 목적상, 별표 1에 나열된 부처 또는 기타 기관에 의해 의도적으로 행해진 일은, 정부에 의해 또는 특정 직위 보유자에 의해 법에 따라 행해진 경우라도, 해당 부처 또는 기타 기관에 의해 직접 행해진 것으로 취급된다.
- (5) 제(3)항(a)호(i)목, 제(3)항(b)호(i)목 및 제(4)항은 별표 1에 나열된 부처 또는 기타 기관과 관

련하여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북아일랜드 정부 부처와 관련하여 적용된다.

### 제12조 군대에 대한 적용

- (1) 본 법에서 “군대”란 영국 법에 따라 소집된 정부 육해공군을 의미한다.
- (2) 제2조의 목적상, 군대 구성원인 개인은 국방부에 의해 고용된 것으로 취급된다.
- (3) 본 법에서 군대 구성원에 대한 언급은 다음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 (a) 복무 중이거나 훈련 또는 의무 이행 중인 예비군(1996년 예비군법(c. 14) 제1조(2)항에서 주어진 의미 내) 구성원
  - (b) 정부 소유 함선(1957년 해군기강법(c.53) 제132조(1)항에서 주어진 의미 내)에서 복무하는 개인

### 제13조 경찰에 대한 적용

- (1) 본 법에서 “경찰”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 (a) 다음의 의미 내에서의 경찰
    - (i) 1996년 경찰법(c. 16)
    - (ii) 1967년 경찰(스코틀랜드)법(c. 77)
  - (b) 북아일랜드 경찰
  - (c) 북아일랜드 경찰 예비대
  - (d) 영국 교통경찰
  - (e) 민간 원자력 치안대
  - (f) 국방부 경찰
- (2) 본 법의 목적상, 경찰은 해당자가 법인체인 경우에 지게 되는 모든 관리 의무를 지는 것으로 취급된다.
- (3) 제2조의 목적상,
  - (a) 경찰 구성원은 해당 경찰에 의해 고용된 것으로 취급된다.
  - (b) 잉글랜드 및 웨일스의 경찰 영역을 위해 임명된 특수 치안관은 해당 영역의 경찰권에 의해 유지되는 경찰에 의해 고용된 것으로 취급된다.
  - (c) 제(1)항 제(d)호 또는 제(f)호에 언급된 경찰을 위해 임명된 특수 치안관은 해당 경찰에 의해 고용된 것으로 취급된다.
  - (d) 제(1)항 제(a)호 또는 제(d)호에 언급된 경찰 구성원이 될 목적으로 훈련을 받고 있는 경찰 생도는 해당 경찰에 의해 고용된 것으로 취급된다.
  - (d) 2000년 경찰(북아일랜드)법(c. 32) 제39조에 따라 임명된 경찰 훈련생 또는 동 법 제42조에 따라 임명된 경찰 생도는 북아일랜드 경찰에 의해 고용된 것으로 취급된다.
  - (e) 상기 법 제40조에 따라 임명된 경찰 예비 훈련생은 북아일랜드 경찰 예비대에 의해 고용

된 것으로 취급된다.

(f) 중대조직범죄기관 또는 국가경찰개선청에 직원의 일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파견된 경찰 구성원은 해당 기관에 의해 고용된 것으로 취급된다.

(4) 제(3)항에서 경찰 구성원에 대한 언급은 제(1)항(a)호(ii)목에서 언급된 경찰의 경우, 해당 경찰의 치안관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5) 제2조의 목적상, 경찰을 위해 점유된 시설은 해당 경찰에 의해 점유된 것으로 취급된다.

(6) 제2조~제7조의 목적상, 해당 경찰이 법인체였다면 그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간주되었을 모든 일은 해당 경찰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간주된다.

(7) 다음의 경우에,

(a) 제(3)항에 의해서 개인이 제2조의 목적상 경찰에 의해 고용된 것으로 취급되며

(b) 다른 법정 규정(있는 경우)에 의해서 개인이 다른 조직체에 의해 고용된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

그 개인은 그러한 목적상 해당 경찰 및 다른 조직체 둘 다에 의해 고용된 것으로 취급된다.

#### 제14조 동업회사에 대한 적용

(1) 본 법의 목적상, 동업회사는 해당자가 법인체인 경우에 지게 되는 모든 관리 의무를 지는 것으로 취급된다.

(2) 동업회사에 의해 범해졌다고 주장되는 본 법에 따른 위법 행위에 대한 소송절차는 해당 동업회사의 이름으로(동업회사 구성원의 이름이 아니라) 제기된다.

(3) 본 법에 따른 위법 행위의 유죄판결에 대해 동업회사에 부과된 벌금은 동업회사의 자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4) 본 조는 해당자를 관장하는 법에 따른 법인(法人)인 동업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기타 규정

#### 제15조 절차, 증거 및 선고

(1) 형사소송에 대한 법정 규정(있는 경우)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과 관련하여 적용되듯이, 본 법에 의거한 소송과 관련하여, 규정된 개정 또는 변경의 적용을 받아, 다음에 대해 적용된다.

(a) 별표 1에 나열된 부처 또는 기타 기관

(b) 경찰

(c) 동업회사

(d) 노동조합

(e) 기업이 아닌 고용주 협회

(2) 본 조에서

“규정된”이란 국무장관이 제정한 명령에 의해 규정됨을 의미한다.

“형사소송절차에 대한 규정”은 다음을 포함한다.

(a) 형사소송에서의 또는 그와 관련한 절차에 대한 규정

(b) 그러한 소송에서의 증거에 대한 규정

(c) 위법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선고 또는 그 외 방법의 처리에 대한 규정

“법정”이란 법 또는 북아일랜드 법률, 또는 이에 의거하여 제정된 법률 문서에 포함됨을 의미한다.

(3) 본 조에서 소송에 대한 언급은 잉글랜드 및 웨일스 또는 북아일랜드의 소송을 말한다.

(4) 본 조에 따른 명령은 부인 의결 절차를 조건으로 한다.

## 제16조 직무 이전

(1) 본 조는 다음 경우에 적용된다.

(a) 관련 공공 조직체에 의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람의 사망이 발생했거나 발생했다고 주장되고

(b) 이후 해당 직무가 이전되어 그 결과 해당 직무는 계속 수행되나 해당 조직체에 의해 수행되지는 않는 경우

(2) 본 조에서 “관련 공공 조직체”란 다음을 의미한다.

(a) 별표 1에 나열된 부처 또는 기타 기관

(b) 정부 공무원 또는 대행자인 기업

(c) 경찰

(3) 사람의 사망과 관련하여 본 법에 따른 위법 행위에 대한 이전 후 관련 공공 조직체를 대상으로 제기되는 소송은 다음을 대상으로 개시되어야 한다.

(a) 제(1)항에 언급된 직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는 관련 공공 조직체(있는 경우)

(b) 현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러한 조직체가 없는 경우, 마지막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 관련 공공 조직체

본 항에는 제(4)항이 적용된다.

(4) 국무장관에 의해 제정된 명령이 특정 직무 이전과 관련하여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 제(3)항에 언급된 소송은 다음을 대상으로 개시되거나 계속될(이미 개시된 경우) 수 있다.

(a) 제(1)항에 언급된 조직체

(b) 해당 명령에서 지정할 수 있는 관련 공공 조직체(제(1)항에 언급된 조직체 또는 제(3)항 제(a)호 또는 제(b)호에 언급된 조직체 제외)

(5) 사람의 사망과 관련하여 본 법에 따른 위법 행위에 대한 소송이 관련 공공 조직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동안 이전이 발생할 경우, 소송은 다음을 대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a) 이전의 결과로 제(1)항에 언급된 직무를 수행하는 관련 공공 조직체(있는 경우)

(b) 이전의 결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조직체가 없는 경우, 이전과 동일한 조직체

본 항에는 제(6)항이 적용된다.

(6) 국무장관에 의해 제정된 명령이 특정 직무 이전과 관련하여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 제(5)항에 언급된 소송은 다음을 대상으로 계속될 수 있다.

(a) 제(1)항에 언급된 조직체

(b) 해당 명령에서 지정할 수 있는 관련 공공 조직체(제(1)항에 언급된 조직체 또는 제(5)항 제(a)호 또는 제(b)호에 언급된 조직체 제외)

(7) 제(4)항 또는 (6)항 하의 명령은 부인 의결 절차를 조건으로 한다.

### **제17조 소송에 필요한 검찰 총장 동의**

기업 과실치사 위법 행위에 대한 소송은

(a) 잉글랜드 및 웨일스에서 검찰 총장의 동의 없이 개시될 수 없다.

(b) 북아일랜드에서 북아일랜드 검찰 총장의 동의 없이 개시될 수 없다.

### **제18조 개인 책임 없음**

(1) 개인은 기업 과실치사 위법 행위의 방조, 교사, 조연 또는 알선의 죄가 있을 수 없다.

(2) 개인은 기업 살인 위법 행위의 방조, 교사, 조연, 알선 또는 가담의 죄가 있을 수 없다.

### **제19조 본 법과 보건 및 안전 법규에 의거한 유죄판결**

(1) 동일한 소송에서

(a) 특정한 일련의 상황에서 발생한 기업 과실치사 또는 기업 살인 혐의에 대한 기소와

(b) 동일한 피고인에 대해 그러한 상황 일부 또는 전체에서 발생한 보건 및 안전 위법 행위 혐의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배심원단은, 재판의 정당성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 각 혐의에 대한 평결을 내리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2) 특정한 일련의 상황에서 발생한 기업 과실치사 또는 기업 살인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조직체는, 재판의 정당성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상황 일부 또는 전체에서 발생한 보건 및 안전 위법 행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3) 본 조에서 “보건 및 안전 위법 행위”란 보건 및 안전 법규에 따른 위법 행위를 의미한다.

### **제20조 관습법에서의 과실치사에 대한 기업 책임 폐지**

중과실에 의한 과실치사의 관습법 위법 행위는 그 적용에서 기업 및 제1조가 적용되는 기타 조직체에

대해 적용이 폐지된다.

## 일반 규정 및 후보 규정

### 제21조 제1조를 다른 조직체로 확장할 수 있는 권한

- (1) 국무장관은 명령을 통해 제1조를 개정하여 해당 조가 적용되는 조직체의 범주를 확장하도록 할 수 있다.
- (2) 본 조에 따른 명령은 제(1)항에 의해서 이루어진 개정에 따른 부차적, 후보적 또는 필연적 개정의 경우 본 법을 개정할 수 있다.
- (3) 본 조에 따른 명령은 승인 의결 절차를 조건으로 한다.

### 제22조 별표 1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

- (1) 국무장관은 명령을 통해 별표 1을 개정할 수 있다.
- (2) 본 조에 따른 명령을 포함하는 행정 명령은 별표 1에 대해 이루어지는 개정이 제(3)항 내의 개정으로 한정되지 않는 한, 승인 의결 절차를 조건으로 한다.  
그러한 경우, 행정 명령은 부인 의결 절차를 조건으로 한다.
- (3) 다음의 경우, 개정은 본 항 내에 속한다.
  - (a) 별표 1에 나열된 부처 또는 기타 기관의 이름이 변경되어 이에 대한 개정이 필연적이다.
  - (b) 별표 1에 부처 또는 기타 기관을 추가하는 개정의 경우, 제1조가 적용되는 하나 이상의 조직체가 이전에 행사할 수 있었던 직무를 해당 부처 또는 기타 기관에 이전하여 개정이 필연적이다.
  - (c) 별표 1에서 부처 또는 기타 기관을 제거하는 개정의 경우, 개정이 다음으로 인해 필연적이다.
    - (i) 해당 부처 또는 기타 기관의 폐지
    - (ii) 해당 부처 또는 기타 기관의 모든 직무가 제1조가 적용되는 하나 이상의 조직체로 이전

### 제23조 제2조(2)항을 확장할 수 있는 권한

- (1) 국무장관은 명령을 통해 제2조(2)항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의 범주(아직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 (a) 법정 규정에 의해서 특정 시설에 남아 있거나 상주해야 하는 개인
  - (b) 그 외의 경우 자신의 자유를 제한 받는 개인
- (2) 본 조에 따른 명령은 제(1)항에 의해서 이루어진 개정에 따른 부차적, 후보적 또는 필연적 개

정의 경우 본 법을 개정할 수 있다.

(3) 본 조에 따른 명령은 승인 의결 절차를 조건으로 한다.

#### 제24조 명령

(1) 본 법에 따라 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국무장관의 권한은 행정 명령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

(2) 본 법에 따른 명령이 “부인 의결 절차”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 명령을 포함하는 행정 명령은 두 의회 중 어느 하나의 의결에 의해 폐지될 수 있다.

(3) 본 법에 따른 명령이 “승인 의결 절차”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 명령은 초안이 상정되고 각 의회의 의결을 통해 승인되지 않은 한 제정될 수 없다.

(4) 본 법에 따른 명령은

(a) 여러 다른 목적을 위해 여러 다른 규정을 정할 수 있다.

(b) 경과 규정 또는 유보 규정을 정할 수 있다.

#### 제25조 해석

본 법에서

“군대”란 제12조(1)항에서 주어진 의미를 갖는다.

“기업”에는, 단독회사는 포함되지 않지만 법인 조직인 경우에는 모든 법인이 포함된다.

“피고용인”이란 고용 또는 도제 계약(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상관없이, 명시적인 경우 구두로든 서면 상으로든 상관없이)하에 일하는 개인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서 관련된 표현이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제2조의 목적상 적용되는) 제11조(3)항(a)호, 제12조(2)항 및 제13조(3)항을 참조한다.

“고용주 협회”는 1992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통합)법(c. 52) 제122조 또는 1992년 노사관계(북아일랜드)명령(S.I. 1992/807(N.I. 5)) 제4조에서 주어진 의미를 갖는다.

“집행 당국”이란 모든 보건 및 안전 법규의 집행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국을 의미한다.

“보건 및 안전 법규”란 1974년 작업장 보건안전법(c. 37) 또는 1978년 작업장 보건안전(북아일랜드)명령(S.I. 1978/1039(N.I. 9))에 포함된 특정 조항을 포함하여 보건 및 안전 문제를 다루는 법정 규정을 의미한다.

“구성원”은 군대와 관련하여 제12조(3)항에 의거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동업회사”란

(a) 1890년 동업회사법(c. 39) 내 동업회사,

(b) 1907년 합자회사법(c. 24)에 따라 등록된 합자회사,

또는 영국 외부의 국가 또는 영토의 법에 따라 형성된 비슷한 성질의 회사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경찰”은 제13조(1)항에서 주어진 의미를 갖는다.

“시설”은 토지, 건물 및 이동식 구조물을 포함한다.

“공공 기관”은 1998년 인권법(c. 42) 제6조에서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동 조 제(3)항(a)호 및 제(4)항

은 무시).

“공개 명령”이란 제10조(1)항에 따른 명령을 의미한다.

“구제 명령”이란 제9조(1)항에 따른 명령을 의미한다.

“법정 규정”이란 제1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 스코틀랜드 의회 법 또는 북아일랜드 법률 또는 이에 의거하여 제정된 법률 문서에 포함된 규정을 의미한다.

“노동조합”은 1992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통합)법(c. 52) 제1조 또는 1992년 노사관계(북아일랜드) 명령(S.I. 1992/807(N.I. 5)) 제3조에서 주어진 의미를 갖는다.

## 제26조 부수적 개정

별표 2(부수적 개정)가 효력을 미친다.

## 제27조 개시 및 유보

- (1) 본 법의 상기 조항들은 국무장관이 명령을 통해 정한 규정에 의거하여 발효된다.
- (2) 제2조(1)항(d)호를 발효시키는 명령은 승인 의결 절차를 조건으로 한다.
- (3) 제1조는 동 조 개시 이전에 이행되거나 누락된 것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 (4) 제20조는 동 조 개시 이전에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행해진 위법 행위에 대해 또는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 조사, 법적 소송 또는 처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5) 제(4)항의 목적상, 위법 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또는 사건이 제20조 개시 이전에 발생한 경우, 위법 행위는 제20조 개시 이전에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행해진 것이다.

## 제28조 범위 및 적용 지역

- (1) 제(2)조를 조건으로 하여, 본 법은 잉글랜드 및 웨일스,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에 적용된다.
- (2) 본 법에 의해 이루어진 개정은 그 관련 조항의 적용 범위와 동일한 영국 내 지역에 적용된다.
- (3) 제1조는 영국 또는 다음 장소에서 사망에 이르는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된다.
  - (a) 영국에 인접한 영해의 바다쪽 경계 내
  - (b) 1995년 상선법 제2부에 따라 등록된 선박
  - (c) 1982년 민간항공법(c. 16) 제92조에 정의된 대로 영국의 통제를 받는 항공기
  - (d) 1968년 호버크라프트법(c. 59)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의해서 호버크라프트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해당 조의 의미 내에서 영국의 통제를 받는 호버크라프트
  - (e) 1998년 석유법(c. 17) 제10조(1)항에 따른 위원회 명령이 적용되는 모든 장소(연안 활동과 관련한 형사관할권)
- (4) 제(3)항 제(b)호~제(d)호의 목적상 선박, 항공기 또는 호버크라프트에서 입은 피해는 다음과 같은 개인이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 (a) 선박, 항공기 또는 호버크라프트의 난파 또는 이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에 대해 발생한 다른 어떤 사고의 결과로 해당 선박, 항공기 또는 호버크라프트에 더 이상 타고 있지 않으며
- (b)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제29조 약칭

본 법은 2007년 기업살인법으로 인용될 수 있다.

## 별표

### 별표 1

(제1조)

#### 정부 부처 등의 목록

자산 회수청(Assets Recovery Agency)  
법무장관실(Attorney General's Office)  
내각부(Cabinet Office)  
중앙 정보국(Central Office of Information)  
형사부 및 지방 검찰관청(Crown Office and Procurator Fiscal Service)  
검찰청(Crown Prosecution Service)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부(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사법부(Department for Constitutional Affairs)(스코틀랜드 및 웨일스 사무소 포함)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교육 및 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국제 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수출신용보증부(Export Credits Guarantee Department)  
외무성(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산림 위원회(Forestry Commission)  
스코틀랜드 주민등록청(General Register Office for Scotland)  
정부보험계리청(Government Actuary's Department)  
왕실 토지등기소(Her Majesty's Land Registry)  
영국 국세청(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영국 재무성(Her Majesty's Treasury)  
내무부(Home Office)  
국방부(Ministry of Defence)  
국립 문서보관서(National Archives)  
스코틀랜드 국립 문서보관서(National Archives of Scotland)  
국가감사기관(National Audit Office)

국가저축투자청(National Savings and Investments)  
국가행정학교(National School of Government)  
북아일랜드 감사청(Northern Ireland Audit Office)  
북아일랜드 법원청(Northern Ireland Court Service)  
북아일랜드 사무국(Northern Ireland Office)  
국가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부수상실(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웨일스 왕립 교육 및 연수 수석 인증부서(Office of Her Majesty's Chief Inspector of Education and Training in Wales)  
병참 조사부(Ordnance Survey)  
추밀원(Privy Council Office)  
북아일랜드 검찰청(Public Prosecution Service for Northern Ireland)  
스코틀랜드 등기소 집행 기관(Registers of Scotland Executive Agency)  
국관세 집행실(Revenue and Customs Prosecutions Office)  
영국 조폐국(Royal Mint)  
스코틀랜드 행정부(Scottish Executive)  
중대비리조사청(Serious Fraud Office)  
송무청(Treasury Solicitor's Department)  
영국 무역투자청(UK Trade and Investment)  
웨일스 의회정부(Welsh Assembly Government)

## 별표 2

(제26조)

### 부수적 개정

1988년 검시관법(c. 13)

- 1 (1) 1988년 검시관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2) 다음 조항에서 “과실치사” 뒤에 “기업 과실치사”를 삽입한다.
    - (a) 제11조(6)항(검시관의 조사에서 죄가 발견되지 않음)(2회)
    - (b) 제16조제(1)항(a)호(i)목(형사소송의 경우 조사 연기)
    - (c) 제17조 제(1)항(a)호 및 제(2)항(a)호(형사소송 결과를 통지받는 검시관)
  - (3) 제35조(1)항(해석)에서 “대런던”의 정의 뒤에 다음을 삽입한다.

“기업 과실치사 위법 행위와 관련하여 “개인”은 조직체를 포함한다.”

2003년 형사사법법(c. 44)

- 2 2003년 형사사법법 별표 4(제62조의 목적상 적격한 위법 행위)에서 제4호 뒤에 다음을 삽입한다.

“기업 과실치사  
4A 2007년 기업살인법 제1조에 의거한 위법 행위”
- 3 (1) 해당 법 별표 5(제10부의 목적상 적격한 위법 행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2) 제4호 뒤에 다음을 삽입한다.

“기업 과실치사  
4A 2007년 기업살인법 제1조에 의거한 위법 행위”
  - (3) 제33호 뒤에 다음을 삽입한다.

“기업 과실치사  
33A 2007년 기업살인법 제1조에 의거한 위법 행위”

2004년 형사사법(북아일랜드)명령(S.I. 2004/1500(N.I. 9))

- 4 2004년 형사사법(북아일랜드)명령 별표 2(제21조의 목적상 적격한 위법 행위)에서 제4호 뒤에 다음을 삽입한다.

“기업 과실치사  
4A 2007년 기업살인법 제1조에 의거한 위법 행위”



#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 2007 CHAPTER 19

An Act to create a new offence that, in England and Wales or Northern Ireland, is to be called corporate manslaughter and, in Scotland, is to be called corporate homicide; and to make provision in connection with that offence.  
[26th July 2007]

**B**E IT ENACTED by the Queen's most Excellent Majesty, by and with the advice and consent of the Lords Spiritual and Temporal, and Commons, in this present Parliament assembled, and by the authority of the same, as follows:—

###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 **1 The offence**

- (1) An organisation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 is guilty of an offence if the way in which its activities are managed or organised—
  - (a) causes a person's death, and
  - (b) amounts to a gross breach of a relevant duty of care owed by the organisation to the deceased.
- (2) The organisations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 are—
  - (a) a corporation;
  - (b) a department or other body listed in Schedule 1;
  - (c) a police force;
  - (d) a partnership, or a trade union or employers' association, that is an employer.
- (3) An organisation is guilty of an offence under this section only if the way in which its activities are managed or organised by its senior management is a substantial element in the breach referred to in subsection (1).

- (4)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 (a) “relevant duty of care” has the meaning given by section 2, read with sections 3 to 7;
  - (b) a breach of a duty of care by an organisation is a “gross” breach if the conduct alleged to amount to a breach of that duty falls far below what can reasonably be expected of the organisation in the circumstances;
  - (c) “senior management”, in relation to an organisation, means the persons who play significant roles in—
    - (i) the making of decisions about how the whole or a substantial part of its activities are to be managed or organised, or
    - (ii) the actual managing or organising of the whole or a substantial part of those activities.
- (5) The offence under this section is called—
- (a) corporate manslaughter, in so far as it is an offence under the law of England and Wales or Northern Ireland;
  - (b) corporate homicide, in so far as it is an offence under the law of Scotland.
- (6) An organisation that is guilty of corporate manslaughter or corporate homicide is liable on conviction on indictment to a fine.
- (7) The offence of corporate homicide is indictable only in the High Court of Justiciary.

*Relevant duty of care*

**2 Meaning of “relevant duty of care”**

- (1) A “relevant duty of care”, in relation to an organisation, means any of the following duties owed by it under the law of negligence—
- (a) a duty owed to its employees or to other persons working for the organisation or performing services for it;
  - (b) a duty owed as occupier of premises;
  - (c) a duty owed in connection with—
    - (i) the supply by the organisation of goods or services (whether for consideration or not),
    - (ii) the carrying on by the organisation of any construction or maintenance operations,
    - (iii) the carrying on by the organisation of any other activity on a commercial basis, or
    - (iv) the use or keeping by the organisation of any plant, vehicle or other thing;
  - (d) a duty owed to a person who, by reason of being a person within subsection (2), is someone for whose safety the organisation is responsible.
- (2) A person is within this subsection if—
- (a) he is detained at a custodial institution or in a custody area at a court or police station;
  - (b) he is detained at a removal centre or short-term holding facility;

- (c) he is being transported in a vehicle, or being held in any premises, in pursuance of prison escort arrangements or immigration escort arrangements;
  - (d) he is living in secure accommodation in which he has been placed;
  - (e) he is a detained patient.
- (3) Subsection (1) is subject to sections 3 to 7.
- (4) A reference in subsection (1) to a duty owed under the law of negligence includes a reference to a duty that would be owed under the law of negligence but for any statutory provision under which liability is imposed in place of liability under that law.
- (5)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whether a particular organisation owes a duty of care to a particular individual is a question of law.  
The judge must make any findings of fact necessary to decide that question.
- (6)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there is to be disregarded –
  - (a) any rule of the common law that has the effect of preventing a duty of care from being owed by one person to another by reason of the fact that they are jointly engaged in unlawful conduct;
  - (b) any such rule that has the effect of preventing a duty of care from being owed to a person by reason of his acceptance of a risk of harm.
- (7) In this section –
  - “construction or maintenance operations” means operations of any of the following descriptions –
    - (a) construction, installation, alteration, extension, improvement, repair, maintenance, decoration, cleaning, demolition or dismantling of –
      - (i) any building or structure,
      - (ii) anything else that forms, or is to form, part of the land, or
      - (iii) any plant, vehicle or other thing;
    - (b) operations that form an integral part of, or are preparatory to, or are for rendering complete, any operations within paragraph (a);
  - “custodial institution” means a prison, a young offender institution, a secure training centre, a young offenders institution, a young offenders centre, a juvenile justice centre or a remand centre;
  - “detained patient” means –
    - (a) a person who is detained in any premises under –
      - (i) Part 2 or 3 of the Mental Health Act 1983 (c. 20) (“the 1983 Act”), or
      - (ii) Part 2 or 3 of the Mental Health (Northern Ireland) Order 1986 (S.I. 1986/595 (N.I. 4)) (“the 1986 Order”);
    - (b) a person who (otherwise than by reason of being detained as mentioned in paragraph (a)) is deemed to be in legal custody by –
      - (i) section 137 of the 1983 Act,
      - (ii) Article 131 of the 1986 Order, or

- (iii) article 11 of the Mental Health (Care and Treatment) (Scotland) Act 2003 (Consequential Provisions) Order 2005 (S.I. 2005/2078);
  - (c) a person who is detained in any premises, or is otherwise in custody, under the Mental Health (Care and Treatment) (Scotland) Act 2003 (asp 13) or Part 6 of the Criminal Procedure (Scotland) Act 1995 (c. 46) or who is detained in a hospital under section 200 of that Act of 1995;
- “immigration escort arrangements” means arrangements made under section 156 of the Immigration and Asylum Act 1999 (c. 33);
- “the law of negligence” includes—
- (a) in relation to England and Wales, the Occupiers’ Liability Act 1957 (c. 31), the Defective Premises Act 1972 (c. 35) and the Occupiers’ Liability Act 1984 (c. 3);
  - (b) in relation to Scotland, the Occupiers’ Liability (Scotland) Act 1960 (c. 30);
  - (c) in relation to Northern Ireland, the Occupiers’ Liability Act (Northern Ireland) 1957 (c. 25), the Defective Premises (Northern Ireland) Order 1975 (S.I. 1975/1039 (N.I. 9)), the Occupiers’ Liability (Northern Ireland) Order 1987 (S.I. 1987/1280 (N.I. 15)) and the Defective Premises (Landlord’s Liability) Act (Northern Ireland) 2001 (c. 10);
- “prison escort arrangements” means arrangements made under section 80 of the Criminal Justice Act 1991 (c. 53) or under section 102 or 118 of the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1994 (c. 33);
- “removal centre” and “short-term holding facility” have the meaning given by section 147 of the Immigration and Asylum Act 1999;
- “secure accommodation” means accommodation, not consisting of or forming part of a custodial institution, provided for the purpose of restricting the liberty of persons under the age of 18.

### **3 Public policy decisions, exclusively public functions and statutory inspections**

- (1) Any duty of care owed by a public authority in respect of a decision as to matters of public policy (including in particular the allocation of public resources or the weighing of competing public interests) is not a “relevant duty of care”.
- (2) Any duty of care owed in respect of things done in the exercise of an exclusively public function is not a “relevant duty of care” unless it falls within section 2(1)(a), (b) or (d).
- (3) Any duty of care owed by a public authority in respect of inspections carried out in the exercise of a statutory function is not a “relevant duty of care” unless it falls within section 2(1)(a) or (b).
- (4) In this section—
  - “exclusively public function” means a function that falls within the prerogative of the Crown or is, by its nature, exercisable only with authority conferred—
    - (a) by the exercise of that prerogative, or
    - (b) by or under a statutory provision;

“statutory function” means a function conferred by or under a statutory provision.

#### **4 Military activities**

- (1) Any duty of care owed by the Ministry of Defence in respect of—
  - (a) operations within subsection (2),
  - (b) activities carried on in preparation for, or directly in support of, such operations, or
  - (c) training of a hazardous nature, or training carried out in a hazardous way, which it is considered needs to be carried out, or carried out in that way, in order to improve or maintain the effectiveness of the armed forces with respect to such operations,is not a “relevant duty of care”.
- (2) The operations within this subsection are operations, including peacekeeping operations and operations for dealing with terrorism, civil unrest or serious public disorder, in the course of which members of the armed forces come under attack or face the threat of attack or violent resistance.
- (3) Any duty of care owed by the Ministry of Defence in respect of activities carried on by members of the special forces is not a “relevant duty of care”.
- (4) In this section “the special forces” means those units of the armed forces the maintenance of whose capabilities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Director of Special Forces or which are for the time being subject to the operational command of that Director.

#### **5 Policing and law enforcement**

- (1) Any duty of care owed by a public authority in respect of—
  - (a) operations within subsection (2),
  - (b) activities carried on in preparation for, or directly in support of, such operations, or
  - (c) training of a hazardous nature, or training carried out in a hazardous way, which it is considered needs to be carried out, or carried out in that way, in order to improve or maintain the effectiveness of officers or employees of the public authority with respect to such operations,is not a “relevant duty of care”.
- (2) Operations are within this subsection if—
  - (a) they are operations for dealing with terrorism, civil unrest or serious disorder,
  - (b) they involve the carrying on of policing or law-enforcement activities, and
  - (c) officers or employees of the public authority in question come under attack, or face the threat of attack or violent resistance, in the course of the operations.
- (3) Any duty of care owed by a public authority in respect of other policing or law-enforcement activities is not a “relevant duty of care” unless it falls within section 2(1)(a), (b) or (d).
- (4) In this section “policing or law-enforcement activities” includes—
  - (a) activities carried on in the exercise of functions that are—

- (i) functions of police forces, or
- (ii) functions of the same or a similar nature exercisable by public authorities other than police forces;
- (b) activities carried on in the exercise of functions of constables employed by a public authority;
- (c) activities carried on in the exercise of functions exercisable under Chapter 4 of Part 2 of the Serious Organised Crime and Police Act 2005 (c. 15) (protection of witnesses and other persons);
- (d) activities carried on to enforce any provision contained in or made under the Immigration Acts.

## 6 Emergencies

- (1) Any duty of care owed by an organisation within subsection (2) in respect of the way in which it responds to emergency circumstances is not a “relevant duty of care” unless it falls within section 2(1)(a) or (b).
- (2) The organisations within this subsection are –
  - (a) a fire and rescue authority in England and Wales;
  - (b) a fire and rescue authority or joint fire and rescue board in Scotland;
  - (c) the Northern Ireland Fire and Rescue Service Board;
  - (d) any other organisation providing a service of responding to emergency circumstances either –
    - (i) in pursuance of arrangements made with an organisation within paragraph (a), (b) or (c), or
    - (ii) (if not in pursuance of such arrangements) otherwise than on a commercial basis;
  - (e) a relevant NHS body;
  - (f) an organisation providing ambulance services in pursuance of arrangements –
    - (i) made by, or at the request of, a relevant NHS body, or
    - (ii) made with the Secretary of State or with the Welsh Ministers;
  - (g) an organisation providing services for the transport of organs, blood, equipment or personnel in pursuance of arrangements of the kind mentioned in paragraph (f);
  - (h) an organisation providing a rescue service;
  - (i) the armed forces.
- (3)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1), the way in which an organisation responds to emergency circumstances does not include the way in which –
  - (a) medical treatment is carried out, or
  - (b) decisions within subsection (4) are made.
- (4) The decisions within this subsection are decisions as to the carrying out of medical treatment, other than decisions as to the order in which persons are to be given such treatment.
- (5) Any duty of care owed in respect of the carrying out, or attempted carrying out, of a rescue operation at sea in emergency circumstances is not a “relevant duty of care” unless it falls within section 2(1)(a) or (b).
- (6) Any duty of care owed in respect of action taken –

- (a) in order to comply with a direction under Schedule 3A to the Merchant Shipping Act 1995 (c. 21) (safety directions), or
  - (b) by virtue of paragraph 4 of that Schedule (action in lieu of direction),
- is not a “relevant duty of care” unless it falls within section 2(1)(a) or (b).
- (7) In this section –
- “emergency circumstances” means circumstances that are present or imminent and –
    - (a) are causing, or are likely to cause, serious harm or a worsening of such harm, or
    - (b) are likely to cause the death of a person;
  - “medical treatment” includes any treatment or procedure of a medical or similar nature;
  - “relevant NHS body” means –
    - (a) a Strategic Health Authority, Primary Care Trust, NHS trust, Special Health Authority or NHS foundation trust in England;
    - (b) a Local Health Board, NHS trust or Special Health Authority in Wales;
    - (c) a Health Board or Special Health Board in Scotland, or the Common Services Agency for the Scottish Health Service;
    - (d) a Health and Social Services trust or Health and Social Services Board in Northern Ireland;
  - “serious harm” means –
    - (a) serious injury to or the serious illness (including mental illness) of a person;
    - (b) serious harm to the environment (including the life and health of plants and animals);
    - (c) serious harm to any building or other property.
- (8) A reference in this section to emergency circumstances includes a reference to circumstances that are believed to be emergency circumstances.

## 7 Child-protection and probation functions

- (1) A duty of care to which this section applies is not a “relevant duty of care” unless it falls within section 2(1)(a), (b) or (d).
- (2) This section applies to any duty of care that a local authority or other public authority owes in respect of the exercise by it of functions conferred by or under –
- (a) Parts 4 and 5 of the Children Act 1989 (c. 41),
  - (b) Part 2 of the Children (Scotland) Act 1995 (c. 36), or
  - (c) Parts 5 and 6 of the Children (Northern Ireland) Order 1995 (S.I. 1995/755 (N.I. 2)).
- (3) This section also applies to any duty of care that a local probation board or other public authority owes in respect of the exercise by it of functions conferred by or under –
- (a) Chapter 1 of Part 1 of the Criminal Justice and Court Services Act 2000 (c. 43),
  - (b) section 27 of the Social Work (Scotland) Act 1968 (c. 49), or
  - (c) Article 4 of the Probation Board (Northern Ireland) Order 1982 (S.I. 1982/713 (N.I. 10)).

*Gross breach***8 Factors for jury**

- (1) This section applies where—
  - (a) it is established that an organisation owed a relevant duty of care to a person, and
  - (b) it falls to the jury to decide whether there was a gross breach of that duty.
- (2) The jury must consider whether the evidence shows that the organisation failed to comply with any health and safety legislation that relates to the alleged breach, and if so—
  - (a) how serious that failure was;
  - (b) how much of a risk of death it posed.
- (3) The jury may also—
  - (a) consider the extent to which the evidence shows that there were attitudes, policies, systems or accepted practices within the organisation that were likely to have encouraged any such failure as is mentioned in subsection (2), or to have produced tolerance of it;
  - (b) have regard to any health and safety guidance that relates to the alleged breach.
- (4) This section does not prevent the jury from having regard to any other matters they consider relevant.
- (5) In this section “health and safety guidance” means any code, guidance, manual or similar publication that is concerned with health and safety matters and is made or issued (under a statutory provision or otherwise) by an authority responsible for the enforcement of any health and safety legislation.

*Remedial orders and publicity orders***9 Power to order breach etc to be remedied**

- (1) A court before which an organisation is convicted of corporate manslaughter or corporate homicide may make an order (a “remedial order”) requiring the organisation to take specified steps to remedy—
  - (a) the breach mentioned in section 1(1) (“the relevant breach”);
  - (b) any matter that appears to the court to have resulted from the relevant breach and to have been a cause of the death;
  - (c) any deficiency, as regards health and safety matters, in the organisation’s policies, systems or practices of which the relevant breach appears to the court to be an indication.
- (2) A remedial order may be made only on an application by the prosecution specifying the terms of the proposed order.  
Any such order must be on such terms (whether those proposed or others) as the court considers appropriate having regard to any representations made, and any evidence adduced, in relation to that matter by the prosecution or on behalf of the organisation.

- (3) Before making an application for a remedial order the prosecution must consult such enforcement authority or authorities as it considers appropriate having regard to the nature of the relevant breach.
- (4) A remedial order –
  - (a) must specify a period within which the steps referred to in subsection (1) are to be taken;
  - (b) may require the organisation to supply to an enforcement authority consulted under subsection (3), within a specified period, evidence that those steps have been taken.

A period specified under this subsection may be extended or further extended by order of the court on an application made before the end of that period or extended period.
- (5) An organisation that fails to comply with a remedial order is guilty of an offence, and liable on conviction on indictment to a fine.

## 10 Power to order conviction etc to be publicised

- (1) A court before which an organisation is convicted of corporate manslaughter or corporate homicide may make an order (a “publicity order”) requiring the organisation to publicise in a specified manner –
  - (a) the fact that it has been convicted of the offence;
  - (b) specified particulars of the offence;
  - (c) the amount of any fine imposed;
  - (d) the terms of any remedial order made.
- (2) In deciding on the terms of a publicity order that it is proposing to make, the court must –
  - (a) ascertain the views of such enforcement authority or authorities (if any) as it considers appropriate, and
  - (b) have regard to any representations made by the prosecution or on behalf of the organisation.
- (3) A publicity order –
  - (a) must specify a period within which the requirements referred to in subsection (1) are to be complied with;
  - (b) may require the organisation to supply to any enforcement authority whose views have been ascertained under subsection (2), within a specified period, evidence that those requirements have been complied with.
- (4) An organisation that fails to comply with a publicity order is guilty of an offence, and liable on conviction on indictment to a fine.

### *Application to particular categories of organisation*

## 11 Application to Crown bodies

- (1) An organisation that is a servant or agent of the Crown is not immune from prosecution under this Act for that reason.
- (2)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
  - (a) a department or other body listed in Schedule 1, or

- (b) a corporation that is a servant or agent of the Crown, is to be treated as owing whatever duties of care it would owe if it were a corporation that was not a servant or agent of the Crown.
- (3) For the purposes of section 2—
- (a) a person who is—
- (i) employed by or under the Crown for the purposes of a department or other body listed in Schedule 1, or
- (ii) employed by a person whose staff constitute a body listed in that Schedule,
- is to be treated as employed by that department or body;
- (b) any premises occupied for the purposes of—
- (i) a department or other body listed in Schedule 1, or
- (ii) a person whose staff constitute a body listed in that Schedule,
- are to be treated as occupied by that department or body.
- (4) For the purposes of sections 2 to 7 anything done purportedly by a department or other body listed in Schedule 1, although in law by the Crown or by the holder of a particular office, is to be treated as done by the department or other body itself.
- (5) Subsections (3)(a)(i), (3)(b)(i) and (4) apply in relation to a Northern Ireland department as they apply in relation to a department or other body listed in Schedule 1.

## **12 Application to armed forces**

- (1) In this Act “the armed forces” means any of the naval, military or air forces of the Crown raised under the law of the United Kingdom.
- (2) For the purposes of section 2 a person who is a member of the armed forces is to be treated as employed by the Ministry of Defence.
- (3) A reference in this Act to members of the armed forces includes a reference to—
- (a) members of the reserve forces (within the meaning given by section 1(2) of the Reserve Forces Act 1996 (c. 14)) when in service or undertaking training or duties;
- (b) persons serving on Her Majesty’s vessels (within the meaning given by section 132(1) of the Naval Discipline Act 1957 (c. 53)).

## **13 Application to police forces**

- (1) In this Act “police force” means—
- (a) a police force within the meaning of—
- (i) the Police Act 1996 (c. 16), or
- (ii) the Police (Scotland) Act 1967 (c. 77);
- (b) the Police Service of Northern Ireland;
- (c) the Police Service of Northern Ireland Reserve;
- (d) the British Transport Police Force;
- (e) the Civil Nuclear Constabulary;
- (f) the Ministry of Defence Police.
- (2)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a police force is to be treated as owing whatever duties of care it would owe if it were a body corporate.

- (3) For the purposes of section 2—
  - (a) a member of a police force is to be treated as employed by that force;
  - (b) a special constable appointed for a police area in England and Wales is to be treated as employed by the police force maintained by the police authority for that area;
  - (c) a special constable appointed for a police force mentioned in paragraph (d) or (f) of subsection (1) is to be treated as employed by that force;
  - (d) a police cadet undergoing training with a view to becoming a member of a police force mentioned in paragraph (a) or (d) of subsection (1) is to be treated as employed by that force;
  - (e) a police trainee appointed under section 39 of the Police (Northern Ireland) Act 2000 (c. 32) or a police cadet appointed under section 42 of that Act is to be treated as employed by the Police Service of Northern Ireland;
  - (f) a police reserve trainee appointed under section 40 of that Act is to be treated as employed by the Police Service of Northern Ireland Reserve;
  - (g) a member of a police force seconded to the Serious Organised Crime Agency or the National Policing Improvement Agency to serve as a member of its staff is to be treated as employed by that Agency.
- (4) A reference in subsection (3) to a member of a police force is to be read, in the case of a force mentioned in paragraph (a)(ii) of subsection (1), as a reference to a constable of that force.
- (5) For the purposes of section 2 any premises occupied for the purposes of a police force are to be treated as occupied by that force.
- (6) For the purposes of sections 2 to 7 anything that would be regarded as done by a police force if the force were a body corporate is to be so regarded.
- (7) Where—
  - (a) by virtue of subsection (3) a person is treated for the purposes of section 2 as employed by a police force, and
  - (b) by virtue of any other statutory provision (whenever made) he is, or is treated as, employed by another organisation,the person is to be treated for those purposes as employed by both the force and the other organisation.

#### **14 Application to partnerships**

- (1)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a partnership is to be treated as owing whatever duties of care it would owe if it were a body corporate.
- (2) Proceedings for an offence under this Act alleged to have been committed by a partnership are to be brought in the name of the partnership (and not in that of any of its members).
- (3) A fine imposed on a partnership on its conviction of an offence under this Act is to be paid out of the funds of the partnership.
- (4) This section does not apply to a partnership that is a legal person under the law by which it is governed.

*Miscellaneous***15 Procedure, evidence and sentencing**

- (1) Any statutory provision (whenever made) about criminal proceedings applies, subject to any prescribed adaptations or modifications, in relation to proceedings under this Act against—
- (a) a department or other body listed in Schedule 1,
  - (b) a police force,
  - (c) a partnership,
  - (d) a trade union, or
  - (e) an employers' association that is not a corporation,
- as it applies in relation to proceedings against a corporation.
- (2) In this section—
- “prescribed” means prescribed by an order made by the Secretary of State;
- “provision about criminal proceedings” includes—
- (a) provision about procedure in or in connection with criminal proceedings;
  - (b) provision about evidence in such proceedings;
  - (c) provision about sentencing, or otherwise dealing with, persons convicted of offences;
- “statutory” means contained in, or in an instrument made under, any Act or any Northern Ireland legislation.
- (3) A reference in this section to proceedings is to proceedings in England and Wales or Northern Ireland.
- (4) An order under this section is subject to negative resolution procedure.

**16 Transfer of functions**

- (1) This section applies where—
- (a) a person's death has occurred, or is alleged to have occurred, in connection with the carrying out of functions by a relevant public organisation, and
  - (b) subsequently there is a transfer of those functions, with the result that they are still carried out but no longer by that organisation.
- (2) In this section “relevant public organisation” means—
- (a) a department or other body listed in Schedule 1;
  - (b) a corporation that is a servant or agent of the Crown;
  - (c) a police force.
- (3) Any proceedings instituted against a relevant public organisation after the transfer for an offence under this Act in respect of the person's death are to be instituted against—
- (a) the relevant public organisation, if any, by which the functions mentioned in subsection (1) are currently carried out;
  - (b) if no such organisation currently carries out the functions, the relevant public organisation by which the functions were last carried out.

This is subject to subsection (4).

- (4) If an order made by the Secretary of State so provides in relation to a particular transfer of functions, the proceedings referred to in subsection (3) may be instituted, or (if they have already been instituted) may be continued, against—
- (a) the organisation mentioned in subsection (1), or
  - (b) such relevant public organisation (other than the one mentioned in subsection (1) or the one mentioned in subsection (3)(a) or (b)) as may be specified in the order.
- (5) If the transfer occurs while proceedings for an offence under this Act in respect of the person's death are in progress against a relevant public organisation, the proceedings are to be continued against—
- (a) the relevant public organisation, if any, by which the functions mentioned in subsection (1) are carried out as a result of the transfer;
  - (b) if as a result of the transfer no such organisation carries out the functions, the same organisation as before.
- This is subject to subsection (6).
- (6) If an order made by the Secretary of State so provides in relation to a particular transfer of functions, the proceedings referred to in subsection (5) may be continued against—
- (a) the organisation mentioned in subsection (1), or
  - (b) such relevant public organisation (other than the one mentioned in subsection (1) or the one mentioned in subsection (5)(a) or (b)) as may be specified in the order.
- (7) An order under subsection (4) or (6) is subject to negative resolution procedure.

## **17 DPP's consent required for proceedings**

Proceedings for an offence of corporate manslaughter—

- (a) may not be instituted in England and Wales without the consent of the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 (b) may not be instituted in Northern Ireland without the consent of the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for Northern Ireland.

## **18 No individual liability**

- (1) An individual cannot be guilty of aiding, abetting, counselling or procuring the commission of an offence of corporate manslaughter.
- (2) An individual cannot be guilty of aiding, abetting, counselling or procuring, or being art and part in, the commission of an offence of corporate homicide.

## **19 Convictions under this Act and under health and safety legislation**

- (1) Where in the same proceedings there is—
  - (a) a charge of corporate manslaughter or corporate homicide arising out of a particular set of circumstances, and
  - (b) a charge against the same defendant of a health and safety offence arising out of some or all of those circumstances,the jury may, if the interests of justice so require, be invited to return a verdict on each charge.

- (a) is required by virtue of a statutory provision to remain or reside on particular premises, or
  - (b) is otherwise subject to a restriction of his liberty.
- (2) An order under this section may make any amendment to this Act that is incidental or supplemental to, or consequential on, an amendment made by virtue of subsection (1).
- (3) An order under this section is subject to affirmative resolution procedure.

## 24 Orders

- (1) A power of the Secretary of State to make an order under this Act is exercisable by statutory instrument.
- (2) Where an order under this Act is subject to “negative resolution procedure” the statutory instrument containing the order is subject to annulment in pursuance of a resolution of either House of Parliament.
- (3) Where an order under this Act is subject to “affirmative resolution procedure” the order may not be made unless a draft has been laid before, and approved by a resolution of, each House of Parliament.
- (4) An order under this Act—
- (a) may make different provision for different purposes;
  - (b) may make transitional or saving provision.

## 25 Interpretation

In this Act—

“armed forces” has the meaning given by section 12(1);

“corporation” does not include a corporation sole but includes any body corporate wherever incorporated;

“employee” means an individual who works under a contract of employment or apprenticeship (whether express or implied and, if express, whether oral or in writing), and related expressions are to be construed accordingly; see also sections 11(3)(a), 12(2) and 13(3) (which apply for the purposes of section 2);

“employers’ association” has the meaning given by section 122 of the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Consolidation) Act 1992 (c. 52) or Article 4 of the Industrial Relations (Northern Ireland) Order 1992 (S.I. 1992/807 (N.I. 5));

“enforcement authority” means an authority responsible for the enforcement of any health and safety legislation;

“health and safety legislation” means any statutory provision dealing with health and safety matters, including in particular provision contained in 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c. 37) or 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Northern Ireland) Order 1978 (S.I. 1978/1039 (N.I. 9));

“member”, in relation to the armed forces, is to be read in accordance with section 12(3);

“partnership” means—

- (a) a partnership within the Partnership Act 1890 (c. 39), or

- (1) The Secretary of State may by order amend section 2(2) to make it include any category of person (not already included) who—



- (b) a limited partnership registered under the Limited Partnerships Act 1907 (c. 24),
- or a firm or entity of a similar character formed under the law of a country or territory outside the United Kingdom;
- “police force” has the meaning given by section 13(1);
- “premises” includes land, buildings and moveable structures;
- “public authority” has the same meaning as in section 6 of the Human Rights Act 1998 (c. 42) (disregarding subsections (3)(a) and (4) of that section);
- “publicity order” means an order under section 10(1);
- “remedial order” means an order under section 9(1);
- “statutory provision”, except in section 15, means provision contained in, or in an instrument made under, any Act, any Act of the Scottish Parliament or any Northern Ireland legislation;
- “trade union” has the meaning given by section 1 of the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Consolidation) Act 1992 (c. 52) or Article 3 of the Industrial Relations (Northern Ireland) Order 1992 (S.I. 1992/807 (N.I. 5)).

## **26 Minor and consequential amendments**

Schedule 2 (minor and consequential amendments) has effect.

## **27 Commencement and savings**

- (1)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ct come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provision made by order by the Secretary of State.
- (2) An order bringing into force paragraph (d) of section 2(1) is subject to affirmative resolution procedure.
- (3) Section 1 does not apply in relation to anything done or omitted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at section.
- (4) Section 20 does not affect any liability, investigation, legal proceeding or penalty for or in respect of an offence committed wholly or partly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at section.
- (5)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4) an offence is committed wholly or partly before the commencement of section 20 if any of the conduct or events alleged to constitute the offence occurred before that commencement.

## **28 Extent and territorial application**

- (1) Subject to subsection (2), this Act extends to England and Wales, Scotland and Northern Ireland.
- (2) An amendment made by this Act extends to the same part or parts of the United Kingdom as the provision to which it relates.
- (3) Section 1 applies if the harm resulting in death is sustained in the United Kingdom or –
  - (a) within the seaward limits of the territorial sea adjacent to the United Kingdom;

- (b) on a ship registered under Part 2 of the Merchant Shipping Act 1995 (c. 21);
  - (c) on a British-controlled aircraft as defined in section 92 of the Civil Aviation Act 1982 (c. 16);
  - (d) on a British-controlled hovercraft within the meaning of that section as applied in relation to hovercraft by virtue of provision made under the Hovercraft Act 1968 (c. 59);
  - (e) in any place to which an Order in Council under section 10(1) of the Petroleum Act 1998 (c. 17) applies (criminal jurisdiction in relation to offshore activities).
- (4)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3)(b) to (d) harm sustained on a ship, aircraft or hovercraft includes harm sustained by a person who—
- (a) is then no longer on board the ship, aircraft or hovercraft in consequence of the wrecking of it or of some other mishap affecting it or occurring on it, and
  - (b) sustains the harm in consequence of that event.

**29 Short title**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 SCHEDULES

### SCHEDULE 1

Section 1

#### LIST OF GOVERNMENT DEPARTMENTS ETC

Assets Recovery Agency  
Attorney General's Office  
Cabinet Office  
Central Office of Information  
Crown Office and Procurator Fiscal Service  
Crown Prosecution Service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Department for Constitutional Affairs (including the Scotland Office and the Wales Office)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epartment for Transport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epartment of Health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Export Credits Guarantee Department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Forestry Commission  
General Register Office for Scotland  
Government Actuary's Department  
Her Majesty's Land Registry  
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  
Her Majesty's Treasury  
Home Office  
Ministry of Defence  
National Archives  
National Archives of Scotland  
National Audit Office  
National Savings and Investments  
National School of Government  
Northern Ireland Audit Office  
Northern Ireland Court Service  
Northern Ireland Offic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 After paragraph 4 there is inserted –

*“Corporate manslaughter*

4A An offence under section 1 of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3) After paragraph 33 there is inserted –

*“Corporate manslaughter*

33A An offence under section 1 of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Criminal Justice (Northern Ireland) Order 2004 (S.I. 2004/1500 (N.I. 9))*

4 In Schedule 2 to the Criminal Justice (Northern Ireland) Order 2004 (qualifying offences for purposes of Article 21), after paragraph 4 there is inserted –

*“Corporate manslaughter*

4A An offence under section 1 of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

© Crown copyright 2007

Printed in the UK by The Stationery Office Limited  
under the authority and superintendence of Carol Tullo, Controller of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and Queen’s Printer of Acts of Parliament

8/2007 376186 19585

# 빈 색지

